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조선후기 경상도 향리의 향직 계승과 지향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정 성 학

조선후기 경상도 향리의 향직 계승과 지향

지도교수 김 건 태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정 성 학

정성학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조선은 신분의 상하 이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였다고 한다. 조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일본인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는 “조선에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경쟁하는 데 몰두한다. 이 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일이 곧잘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일이 많고 뇌물도 행해져 아침에는 출세하고 저녁에는 망하니 조용할 날이 없다”고 묘사했다. 조선후기 향리 역시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 현창 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도모한 계층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향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정받는 양반이 되는 것에는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 조선후기 향리가 지방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생각하면 자신들의 직임을 버리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양반이 되려고 한 그들의 도전이 다소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향리의 수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향리의 수적 제한은 자연히 향직에서 배제되는 자들을 발생시키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제 향직은 불가피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향리들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혹은 강화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으며, 또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대구와 안동의 향리의 가계를 살펴보았다. 대구는 호적이 19세기 후반까지 남아있으며, 안동은 향리 선생안과 고문서 등이 다수 남아있어 연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향리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지방 관아의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실무를 수행하는 향리의 수도 늘어난 것이다. 대구 호적에도 향리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된다. 지방 향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호적에도 향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호적에는 유학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학은 과거를 준비하는 관료 예비군을 의미했고, 양반이 사용하는

직역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유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양반으로 보기 어려운 자들도 유학으로 기재되었다. 읍치에서 힘이 강했던 향리 역시 유학으로 호적에 등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향리는 지속적으로 향리 직역으로 등장한다. 人吏, 府吏, 鄕吏, 貢生과 같은 다양한 직역으로 등장하던 향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생으로 기재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공생은 고려시대 鄕貢 제도를 통해 선발된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려시대 지방관이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界首官試를 열었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향공이라 불렀다. 이처럼 공생의 어원을 추적하면 과거를 준비하고 관료 예비군의 성격을 가졌으니 유학과 매우 흡사한 존재였다. 이런 까닭에 향리는 유학 대신 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호적의 향리 수가 늘어난 만큼 향리 직임을 수행하는 성관도 다양했다. 대구의 경우 달성 서씨가 상층 향리 직임을 가장 많이 수행했다. 그러나 달성 서씨가 배출한 향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도 확인된다. 특정 성씨가 호장과 이방과 같은 소수의 최상위 직임을 독점하는 대신 다른 직임은 다른 성씨와 나누어 수행했다. 즉 달성 서씨 향리 가계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향리 직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리 가계원은 향리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진다. 조선후기 향리 직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향리들은 부자가 함께 입사하거나 아들 세 명이 동시에 입사하지 않는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만약 향리가 향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굳이 이런 규약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자기 아들을 향리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향리는 자신의 직임을 직계자손에게 계승시켰고 따라서 대부분의 향리는 대를 이어 향리 직임을 수행했다. 향리는 향리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안정적인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향리 직임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상황을 큰 위기로 인식했다. 자연히 향리 직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제한된 향직을 두고 향리 가계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대구의 관아의 향리를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와 영리를 배출한 달성 서씨 학유공파의 가계 분화를 살펴보았다. 대구 관아에서 요직을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의 경우 27%만이 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읍치에 남아 하급 관속으로 관에 의지해 살아가기도 하고, 外村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 대구 감영의 영인리청 향리를 배출한 달성 서씨 학유공파의 경우 73%가 향리가 될 수 있었다. 향직에서 배제되는 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읍치를 떠난 자들도 거의 없었다. 이런 결과는 향리 후손이 향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는 물론이고, 향직에서 배제된 경우라도 가능하면 굳이 읍치를 떠나지 않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대구의 명문 향리 가계에서 태어났지만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 중 일부는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이들이 이거해 간 곳은 읍치와 멀지 않았으며, 특정 성씨가 강성하지 않은 마을이었다. 한 마을에 정착한 향리후손은 서서히 세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마을 내의 다른 성씨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양반의 동성촌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혼인 역시 여전히 읍치의 관속과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나머지도 인근 마을에서 혼처를 찾았다. 결국 향직에서 배제되어 읍치를 떠나 한 마을에 정착했음에도 여전히 양반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그나마 특정 마을에 정착에 성공한 경우였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러 마을을 떠돌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향리들이 왜 향리가 되는 것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다.

읍치를 떠나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안동의 안동 권씨 동정공파는 경상 감영의 영리를 다수 배출한 명문 향리 가문이다. 이런 명문 가문의 구성원 일부도 향직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읍치를 떠나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후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을 추숭하는 사업을 펼쳤다. 이들은 읍치를 떠났고, 더는 향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향리로 여겼다. 이들의

이런 활동은 양반을 지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16세기 이후 士族과 吏族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지방 양반의 명부인 鄕案에는 이족과 혼인 맺은 자들을 배제해 나갔다. 안동의 양반 역시 이들을 여전히 향리로 인식했다. 이들이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가문과의 혼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읍치를 떠난 향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기준에 둔다면, 이들은 실패한 자들이다. 안동의 명문가와 전혀 혼망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이들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후손은 과거 합격과 조상 선양사업을 통해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서 100년 넘게 강한 위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요어 : 향리, 호적, 양반, 신분 상승, 향직, 향직 탈락자
학번 : 2014-30020

목 차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 ····· 1
2. 자료와 연구 방법 ····· 9
3. 본문 구성과 내용 ····· 12

1장 조선후기 향리 수 증가와 핵심 가계 ····· 14
1. 향리 수 증가와 호적 속 향리 기재 양상 ····· 14
2. 주요 향리 가계와 향직 분포 ····· 43

2장 향직 계승양상과 향리 가계의 분화 ····· 52
1. 직계자손 중심의 향직 계승 ····· 52
2. 향리 가계의 분화양상 ····· 66

3장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전과 사회적 지위 ····· 86
1. 향리 후손의 외촌 정착과 마을 내 위상 ····· 86
2. 혼망을 통해 본 사회적 지위 ····· 107

4장 향직 탈락자의 지위 유지 전략 ····· 113
1. 향직 탈락자의 활동 ····· 113
2. 향직 탈락자의 정체성 ····· 134

결론 ····· 141
참고문헌 ····· 146
Abstract ····· 154

표 목 차

서론

<표 0-1> 19세기 대구 읍치 주호의 직역 분류 ····· 10

1장

<표 1-1> 대구 읍치 지역의 향리와 유학 주호 수 ····· 16
<표 1-2> 대구 도이상의 향리 수 ····· 18
<표 1-3> 단성 호적 도이상의 향리 수 ····· 19
<표 1-4> 대구 호적의 향리 관련 직역과 직책 ····· 20
<표 1-5> 단성 호적 향리 수 ····· 21
<표 1-6> 울산 호적 향리 수 ····· 22
<표 1-7> 대구 호적색의 호적 기재 양상 ····· 30
<표 1-8> 단성 호적색의 호적 기재 양상 ····· 31
<표 1-9> 『蔚山府先生案』과 울산 호적에 모두 기재된 향리 ····· 32
<표 1-10> 수성비와 호적에 모두 등장하는 향리 ····· 35
<표 1-11> 용궁현 읍내면 양안 속 공생의 기재 양상 ····· 37
<표 1-12> 공생이 등장하는 人吏案 ····· 38
<표 1-13> 대구 도이상 공생 수 ····· 39
<표 1-14> 대구 부리의 성관 ····· 45
<표 1-15> 대구 감영리 성관 ····· 46
<표 1-16> 대구 호적에 나타난 하급 향리의 수 ····· 47
<표 1-17> 하급 향리의 직역 변화 ····· 48
<표 1-18> 안일호장 성관 ····· 49
<표 1-19> 남원 향리 선생안의 성관 구성 ····· 51

2장

<표 2-1> 碩行의 직역 변화 ····· 67
<표 2-2> 읍치 거주자의 직역 구성 ····· 68
<표 2-3> 곤양 경주 최씨에게 발급된 차첩과 그 내용 ····· 71
<표 2-4> 퇴촌한 향리 후손의 집거지 ····· 73

<표 2-5> 조선후기 달성 서씨 홍문 후손의 유형별 분류 ····· 73
<표 2-6> 1825년 호적에 등장하는 감영리 본관 ····· 75
<표 2-7> 『營人吏官案』과 1976년 대구 호적에 모두 등장하는 향리 77
<표 2-8> 『營人吏官案』과 1867년 대구 호적 향리의 주요 성씨 ····· 77
<표 2-9> 감영리 배출 성관 ····· 79
<표 2-10> 덕융 후손의 직역 ····· 82
<표 2-11> 읍치에 거주한 영리 가계의 직역 구성 ····· 83
<표 2-12> 조선후기 달성 서씨 영리의 유형별 분류 ····· 84

3장

<표 3-1> 창수 조상의 직역 ····· 88
<표 3-2> 창수 형제의 직역과 거주지 ····· 89
<표 3-3> 1756년 조암면 일리 주호의 성관 ····· 92
<표 3-4> 1756년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재된 최씨 ····· 93
<표 3-5> 조암면 일리 주호의 성관과 유학 직역자 ····· 94
<표 3-6> 조암면 일리 거주민의 노비 수와 호당 구수 ····· 96
<표 3-7> 귀갑 조상과 그들의 직역 ····· 96
<표 3-8> 귀갑 정착 이전 복현암리의 주요 성관 ····· 98
<표 3-9> 동중면 복현암리 주호의 성관 ····· 99
<표 3-10> 동중면 복현암리 거주민의 노비 수와 호당 구수 ····· 99
<표 3-11> 1720년 용궁 부내면과 의성 북부면의 토지 소유 양상 ··· 101
<표 3-12> 묘동리 호적 주호 성관 ····· 103
<표 3-13> 우록리 호적의 주호 성관 ····· 104
<표 3-14> 조암면을 떠난 향리 후손 ····· 105
<표 3-15> 복현암리를 떠난 향리 후손 ····· 106
<표 3-16> 창수 후손 배우자 가족의 직역과 거주지 ····· 108
<표 3-17> 귀갑 후손 배우자 집안의 가족과 거주지 ····· 110
<표 3-18> 향리 배우자 집안의 가족과 거주지 ····· 111

4장

<표 4-1> 안동권씨 향리 가계의 영리 배출 양상 ····· 115

<표 4-2> 창질과 영흡의 거주지 ····· 119
<표 4-3> 봉강영당 創建時 有司 ····· 124
<표 4-4> 어서각 낙성례 부조자와 부조액 ····· 125
<표 4-5> 봉강영당 건립 과정 ····· 126
<표 4-6> 泓, 澂 후손 항렬자 비교 ····· 129
<표 4-7> 『안동향손사적통록』 서문·발문의 저자 ····· 131
<표 4-8> 『安東鄕孫事蹟通錄』에 수록된 향리 ····· 135
<표 4-9> 막곡동 거주 안동 권씨 과거 합격자 자손의 혼반 ····· 138

그 림 목 차

1장

<그림 1-1> 향리 가계의 가계도와 직역 ····· 23
<그림 1-2> 고려시대 과거응시 자격 ····· 25
<그림 1-3> 향리의 조직구조 ····· 28
<그림 1-4> 1834년 대구 호적 작성자 ····· 29
<그림 1-5> 대구부 읍치 ····· 44

2장

<그림 2-1> 최봉령 가계도 ····· 59
<그림 2-2> 홍민 후손의 향리 분포 ····· 68
<그림 2-3 >학유공파 계보 ····· 79
<그림 2-4> 덕융 후손 가계도 ····· 81

3장

<그림 3-1> 창수의 가계도 ····· 87
<그림 3-2> 대구부 지도 ····· 91
<그림 3-3> 귀갑의 가계도 ····· 96

4장

<그림 4-1> 안동 권씨 동정공파 가계도 ····· 116
<그림 4-2> 창시 후손의 가계도 ····· 118
<그림 4-3> 안동 지도 ····· 120

서론

1.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

조선시대 신분사는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후기 신분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가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 근거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사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식민사관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조선사회는 근대사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정체성론이었다. 해방 후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회사 분야에서는 신분사 연구가 큰 기여를 했다. 해방 후 신분사 연구자들은 호적의 분석을 통해 유학의 급증, 상천민의 급감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통해 19세기 신분제가 붕괴되어 간다는 주장에 이르렀다.[1] 이를 통해 조선사회도 근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 성과를 얻으며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둘째 이유는 바로 조선 사회가 상하 이동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는 “조선에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경쟁하는 데 몰두한다. 이 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일이 곧잘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일이 많고 뇌물도 행해져 아침에는 출세하고 저녁에는 망하니 조용할 날이 없다.”[2] 라고 조선후기 사회를 서술했다. 이처럼 조선후기 많은 사람

1) 김용섭, 1963,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 『史學硏究』 15, 한국사학회; 정석종, 1974,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 아메노모리 호슈 김시덕 역, 2012,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 태학사, 68쪽.

이 신분 상승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현상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신분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신분제가 해체되어 간다는 초기 신분사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호적의 전산화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신분제 붕괴론의 가장 큰 근거는 호적의 유학층 증가였다.[3] 그런데 호적은 국가가 호구와 관련된 각종 부세를 수취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다. 그렇기에 호적의 직역과 신분(=양반, 중인, 상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호적의 특성이 밝혀지면서 신분제 붕괴론은 크게 흔들렸다.[4] 나아가 신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비양반층이 양반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양반 수의 증가가 실제 현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5]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향리에 대한 신분사 접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향리를 다룬 신분사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향리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려 한 사례 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하급 향리였던 假吏와 下吏가 상층 향리체계에 편입된 현상에 대한 접근이었다. 전자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이훈상이다. 이훈상은 향리 관련 자료를 대거 발굴하여 연구의 초석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상도의 향리 가문을 분석하여 향리가 양반으로 신분상승하고자 한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후기 향리는 양반으로 신분상승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후기 향리는 양반 족보에 편입되고자 했으며, 향직을 버리고 유업에 종사하며, 향리의 위상을 높이려고 서적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향리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설명했다.[6]

후자의 연구는 김필동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는 여러 지역의 향리 선생안을 이용하여 조선후기 假吏층이 향리 집단으로 편입한 사례

---

3) 김용섭, 1963, 앞의 논문; 정석종, 1974, 앞의 논문.

4) 최승희, 1989, 「조선후기 幼學·學生의 신분사적 의미」, 『國史館論叢』 1; 임민혁, 1991, 「朝鮮後期의 幼學」, 『淸溪史學』 8; 송양섭, 2005,「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조선시대사학보』34.

5) 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硏究』, 일조각.

6) 이훈상, 1990, 『朝鮮後期의 鄕吏』, 일조각.

를 소개했다. 그는 조선후기에 소수의 가계에서 독점하던 상층 향리직을 배출하는 성관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조선후기 하층 향리의 신분 상승욕의 결과로 이해하며, 하급 향리 역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보았다.[7] 전우철과 김준형은 호적을 통해 향리의 혈연적 신분 귀속성이 약해져 간다는 김필동의 연구에 힘을 보탰다.[8] 이러한 초기 향리 연구는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향리의 자료를 발굴하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선후기 중인에 해당하던 향리가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애썼다는 관점은 당시 학계의 주류였던 신분제 붕괴론의 논지와 일치해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다. 조선후기 신분제 붕괴론은 주로 호적을 통한 통계에 의해 진행되었고, 향리의 신분 상승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그 통계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제 붕괴론의 한 근거였던 하급 향리의 신분 상승 사례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훈상은 경상도의 여러 군현에서 상층 향리를 독점 배출한 가계가 발견되기 때문에 가리의 편입이 기존 향리 가계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보았다.[9] 권기중 역시 단성 지역의 호적을 이용해 가리층이 상층 향리 가계와 같은 계층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았다.[10] 나주 향리를 연구한 나선하도 새로운 세력인 가리가 상층 향리 집단에 일부 편입되었음에도 기존 향리세력과는 여전히 상하 관계가 명확했으며, 일부 향리 세력이 주요 직책인 公兄을 독점하는 현상이 19세기 후반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11] 이 같은 사례 연구가 축적되면서 상층 향리를 독점 배출한 소수의 가계가 조선후기 내내 향리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가리가 상층 향리직을 역임하는 사례는 일반적 현

---

7) 김필동, 1982, 「조선후기 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상, 하)」, 『한국학보』 28,29; 김준형, 1987, 「조선 후기 울산 지역의 향리층 변동」, 『한국사연구』 56; 1990,「조선후기 향리층의 변동- 언양 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경상사학』 6.

8) 전우철, 1985, 「朝鮮後期 鄕村社會에 있어서의 吏胥階層硏究」, 『震檀學報』 60 ; 김준형, 1987, 「朝鮮後期 蔚山地域의 鄕吏層 變動」, 『韓國史硏究』 56.

9) 이훈상, 1990, 앞의 책.

10)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11) 나선하, 2006, 「조선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구자의 견해가 모아지고 있는 편이다.

반면 대부분의 향리가 양반이 되기 위해 애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향리가 양반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답이 돌아온다. 향리의 양반 지향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한 이훈상도 향리의 신분 상승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았다.[12] 즉 조선후기 신분제의 강고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향리가 조선시대 최상위 신분인 양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에도 동시에 동의를 표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신분제 연구는 양반의 강고한 위세가 조선말까지 유지되었음에도 향리와 같은 비양반층의 신분 상승욕 역시 부정할 수 없다는 다소 애매한 상태에서 멈춘 채 연구의 활력을 크게 잃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수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김인걸은 기존의 조선후기 신분제 연구의 잘못을 지적하며 신분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이 시작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13] 이런 지적과 함께 조선시대 몇몇 연구자는 조선시대 신분제 자체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신분을 전근대사회 법적 제도와 그것에 따라 규정된 형식적 차별, 그리고 혈연관계에 따라 세습되는 귀속성을 강조했다. 즉 신분제 국가는 법으로 각 신분을 구분해 차별 대우하며, 집단(가족)을 매개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조선은 전형적인 신분제 국가가 아니었으며, 양반 역시 순수한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14] 손병규 역시 신분을 국가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해했다. 조선의 신분은 국가적 신분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과 국가적 신분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을 중

---

12) 이훈상, 1990, 앞의 책.

13) 김인걸, 1987,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 『韓國中世史 解體期의 諸問題(下)』, 도서출판 한울, 355쪽.

14)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5) 손병규, 2003,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용」,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세 유럽의 귀족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신분이라 이해하기는 어렵다. 양반은 관료를 세습하거나 법에 차별이 명시되어 않았기 때문에 양반이 되어도 극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절대 가치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각 집단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향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대응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 아래서 행정 실무를 수행했던 자들을 지칭한다. 향리가 수행했던 업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一邑之主라 불렸던 수령은 군현의 실질적인 통치 책임자였지만 한 마을에서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 군현의 실무를 모두 파악하고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향리는 일반적으로 대를 이어 직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고을의 사정에 밝아 지방통치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약용은 수령의 임기가 길어야 3~4년이고 짧으면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들을 여관[逆旅]에 지나가는 손님으로[過客] 묘사했고, 향리는 여관의 主人에 비유했다.[16]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였기에 공권력이 지방에도 비교적 강하게 작동했다. 향리는 공권력의 말단에서 군현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상층 향리는 향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시대 향권 변동에 주목한 연구자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다. 김인걸은 조선후기 국가의 관주도 향촌 통제책으로 인해 양반은 기존에 담당했던 부세운영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 반면, 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향촌에서 향리의 영향력도 커져갔다고 보았다.[17] 고석규는 이런 조선후기의 상황을 '수령-吏鄕지배구조'로 설명하기도 했다.[18] 이처럼 조선후기 향리는 향촌사회에서 부세 수취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16) 『與猶堂全書』, 「鄕吏論」, "今守令久者四三年, 不然者朞年而已. 其在位也, 若逆旅之過客然. 而鄕吏於此, 無恩義相係屬, 故其權恒在於鄕吏, 而其傾陷欺負也輕. 由是言之, 其害毒所及, 又不特古之大夫而止耳. 以過客馭主人, 以不知馭知者, 其有能移其權者乎, 此鄕吏之所以恒操其權也"

17)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18)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향리는 지방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며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회적 위상이 양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향리는 일반적으로 중인에 배치되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일반 양인에 비해 큰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향리 역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양반을 지향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윗자리로 올라가는 일이 자주 있었던 만큼 아랫자리로 떨어지는 일도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상위 신분으로의 신분 상승을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위 신분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 향리 역시 양반이 되고 싶은 열망과 함께 평범한 농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조선후기 향리는 직임을 토대로 상당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향리 후손으로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향리가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원천[향직]을 포기하고 '불가능[양반]'에 대해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향리들이 단순히 양반을 선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향리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최승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최승희는 晉陽과 草溪 향리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분석을 통해 향리의 신분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향리층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했다가도 중인으로 신분하강을 하거나, 혹은 양반으로 신분상승 할 수 있음에도 향리 직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계가 존재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향리층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더라도 향촌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권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보장되는 향리를 오히려 선호했다는 것이다.[19] 그의 연구에도 문제가 있다. 향리가 읍치에서 유학으로 직역을 바꾸었다고 그것을 바로 양반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그의 연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향리가 양반이 되고자 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향리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았기 때문이다.

---

19) 최승희, 「朝鮮後期 鄕吏身分移動與否考」, 『金哲埈博士花甲記念史學論叢』 4: 1985, 「朝鮮後期 鄕吏身分移動與否考2」, 『韓國文化』 4, 1983.

조선시대 향리는 공권력을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으며,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기에 유리한 집단이었다. 동시에 평범한 농민으로 강등 될 가능성도 높은 매우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향리를 추적한다면 조선시대 권력과 신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는 향리 가계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향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중앙의 관직 수가 제한되어 있듯이 각 관청에 소속된 향리의 정원 즉 吏額도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 향리는 수탈의 주범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관료들은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곧 수탈의 증대로 여겼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꾸준히 향리의 수를 제한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후기 중앙에서 이액 고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향리의 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었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향리 후손의 수가 늘어난다면 결국 향리 자손 중 일부는 향리가 될 수 없게 된다. 향리의 직임 곧 향직[20]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향리 후손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향직이 어떤 식으로 계승이 되었으며, 향리 직임을 역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조선후기 향리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 향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양반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도 있었고, 그대로 향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향리는 권력을 강화하고 지배층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 과연 향리로 계속 남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했을지 아니면 양반이라는 상위 신분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지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향리 후손 중 향리가 되지 않은 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을까? 라는 것이다. 향리 후손 중 일부는 분명 향리가 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향리라는 족쇄를 벗어 던질 기회일 수도 있고, 관과의 연결

20) 본고에서는 향직을 향리가 맡은 직임 즉 향리 직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갔으며, 또 그들의 사회적 위상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질문을 통해 조선후기 향리 가계의 향직 계승과 구성원의 대응을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 권력과 신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 방법

조선후기 향리 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다. 본고에서 주로 활용할 자료는 호적대장이다. 조선시대 호적은 3년에 한 번 군현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호적이 가지는 장점은 향리 가계 구성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역, 거주지, 그리고 妻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자료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호적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구, 울산, 단성 등 경상도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 중 대구 호적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21]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에 유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대구는 감영이 위치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향리의 위세가 강하고 수도 많다. 대구 호적에는 대구부 관아에서 근무한 향리뿐만 아니라 감영에 소속된 향리도 다수 등장한다. 또 대구 호적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보존되어 있다. 향리가 거주한 읍치 지역의 호적 역시 보존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다.

호적을 통해 조선후기를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19세기 이후 호적에서 유학으로 대표되는 학업자, 즉 상층 직역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유학층의 비중이 대구 호적의 경우 19세기 초반에는 50%, 후반에는 70~8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22] 그러나 이런 현상은 농촌 지역의 경우이며, 읍치에서는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다.[23] 19세기 이후 대구의 읍치 지역인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이 모두 남아있는 식년은 1825, 1831, 1858년이다. <표 0-1>에 이 시기 주호의 신분을 네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

21) 본고에서 사용한 대구 호적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 연구원이 정리한 『慶尙道大邱府戶籍大帳』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하 대구 호적에 관한 각주는 생략한다.

22) 四方博, 1938,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硏究』 3; 이준구, 1996. 「19세기 유학층 확대와 신분제 변동」, 『國史館論叢』 68.

23) 권기중,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신분변화의 장기 추세와 그 의미 - 『달성서씨족보』와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7.

<표 0-1> 19세기 대구 읍치 주호의 직역 분류 (단위: 명)

신분 / 식년	상층	중층	하층	노비	無기재	합계 (%)
1825	234 (8)	750 (24)	1,626 (53)	201 (7)	261 (8)	3,072 (100)
1831	286 (9)	801 (26)	1,580 (51)	198 (6)	218 (7)	3,083 (100)
1858	280 (9)	946 (32)	1,359 (46)	121 (4)	260 (9)	2,966 (100)

*비고: 신분 분류는 이준구의 분류기준을 따라 작성했다.[24]

19세기 이후에도 읍치 지역에서는 양반의 비중이 심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전체 주호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식년도 없다. 평민과 천민의 비중도 약간 낮아지지만 농촌 지역과 같이 극단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구 읍치 지역에 주로 등장하는 향리에 관한 연구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대구 호적을 식년별로 합쳐 사용했다. 예를 들면 1681년에는 서상면, 수서면, 수남면, 서중면, 달서면, 성서면, 하동면, 하서면, 하남면, 하북면 호적이 남아있다. 향리가 거주하는 읍치인 서상면의 호적만 연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면의 호적을 모아 연구에 활용했다. 나머지 식년들도 같은 작업을 통해 정리했다.

호적과 더불어 본 논문의 핵심 자료는 족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두 가문의 족보를 사용했다. 대구 연구에서는 대구 유력 향리 가문인 달성 서씨 족보를, 안동 연구에서는 안동의 유력 향리 가문인 안동 권씨 족보를 활용했다.[25] 대구의 경우 달성 서씨 향리 가계의 가계도를 먼저 그린 뒤 호적과 비교해 보았다. 앞서 말한 대로 현존하는 대구 호적을 모아 족보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읍치에 거주하던 향리뿐만 아니라 외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리 후손의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읍치에 거주하며 향직을 대대로 수행한 가계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읍

24) 이준구, 1993,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 일조각.
25) 『達城徐氏世譜』, 1998; 안동권씨 한글판 전산대동세보, 2012, 안동권씨종보사.

치를 떠났던 자들도 추적할 수 있었다.

호적과 족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은 대부분 복수의 이름을 사용했다. 양반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종종 改名을 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6] 향리 역시 개명을 통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호적에도 동일한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는 현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四祖, 生年, 妻를 이용해 동일 인물 유무를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구에서 약 200년의 기간 동안 벌어진 향리 가계의 분화와 거주지 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호적이 남아있지 않은 안동의 경우 향리 선생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조선후기 편찬된 향리 선생안과 그들이 편찬한 서적도 이용했다. 조선후기 경상 감영의 향리 명단을 기록해둔 『營吏官案』[27]과 『嶺營掾房先生案』[28], 『營人吏官案』[29]을 통해 향리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가계 구성원 중 어떤 자들이 향직을 수행하였고, 또 그러하지 못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향리 후손이 편찬한 서적인 『椽曹龜鑑』[30]과 『安東鄉孫事蹟通錄』[31]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 보았다

---

26) 정진영, 2000, 「18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族譜〉·〈同案〉類와의 비교」,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27) 『營吏官案』, 『慶北地方鄉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1 『考古歷史學志』 3,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7.

28) 『嶺營掾房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29) 『營人吏官案』,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475.

30) 『掾曹龜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행본).

31) 『安東鄉孫事蹟通錄』, 장서각 청구번호 K2-436.

3. 본문 구성과 내용

1장에서는 조선후기 이액 증가가 호적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향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중앙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호적은 유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유학이 90%를 넘어선다고도 한다. 호적에는 향리가 어떤 직역으로 기재되었는지,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호적을 토대로 대구부의 향리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에는 대구 관아에 근무한 향리뿐만 아니라 경상감영 소속 향리도 호적에 다수 등장한다. 대구의 향리 수는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어떤 성씨가 주요 향직을 독점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구의 향리 사회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향직의 계승과 향리 가계의 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향리는 관의 공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적 차별을 받았던 자들이다. 향리가 자신의 직임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는지, 혹은 물려주지 않고 양반이 되라고 독려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구의 주요 향리 성씨의 가계도를 그려보았다. 모든 향리가 향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계 내의 분화는 필연적이다. 향리 가계 구성원 중에는 향직을 수행한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생겨났다.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자들에 대해 서술해보려 한다.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직임에서 배제된 자 중 일부는 읍치를 떠난다. 일부는 특정 마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후손이 세거하여 점점 비중을 불려 나간다. 이들은 관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 한 자들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들의 정착과 마을 내 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의 혼망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조선시대 혼반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가문과 형성되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양반과 또 읍치에 거주하며 향리를 배출한 가계와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위

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향직에서 배제되어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의 활동과 생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안동의 향리 가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영리를 다수 배출한 가계에서도 상위 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생겨났다. 향직을 수행하지 않는 향리 후손 가운데 일부는 읍치를 벗어나 인근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들은 관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의 근원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어떤 활동을 통해 권세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의 정체성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 응시하고 사우를 건립하며 자신을 양반이라 생각했는지 더 나아가 인근 양반이 그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1장 조선후기 향리 수 증가와 핵심 가계

1. 향리 수 증가와 호적 속 향리 기재 양상

조선후기 많은 지역에서 향리의 수가 증가했다. 이에 중앙에서는 아래의 논의와 같이 향리의 수 즉 吏額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 논의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의 고질적인 폐단은 아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간교하게 속이는 일이 날마다 생겨나는 데 있으므로 그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줄이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그 실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1)]

> 서울 관사의 吏胥는 모두 액수가 있으나 外邑은 이 예를 적용하지 않아 큰 고을의 경우 자그마치 수백 명에 달하고 중간 고을도 적다고 해도 1백여 인이 못 되지 않습니다. 官勢에 기대어 크게 백성에게 해가 되고 있으니 지금 외읍에서도 서울 관사의 경우에 의하여 큰 고을은 70인, 중간 고을은 50인, 작은 고을은 30인으로 제한하고 혹 죄를 범하는 때에는 영원히 吏案에서 삭제하고 軍額에 내려서 충정해야 하겠습니다.[2)]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액 문제는 특정 군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향리의 수가 늘어났고 특히 영남이 더 심했던

---

1)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5일, "而議者或謂卽今痼弊, 在於吏額漸廣, 奸僞日出, 不可不減削其數, 此言亦似有理, 而此等減罷之議, 其來已久, 而亦未見其實效"

2) 『비변사등록』 정조 13년 4월20일, "京司吏胥, 皆有數額, 而外邑, 則不用此例, 大邑多至屢百人, 中邑小不下百餘人, 憑依官勢, 大爲民害, 今 宜使外邑, 亦倣京司, 大邑七十人·中邑五十人·小邑 三十人, 以此爲限, 或犯罪科, 永削吏案, 降定軍役爲."

것 같다.[3] 이런 현상은 대구 호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 호적은 1681년부터 1876년까지 남아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대구의 읍치에 해당하는 동상면과 서상면이 모두 남아있는 10개 식년의 主戶만을 대상에 넣었다.[4] 두 면이 모두 남아있는 식년은 주로 18세기이고 19세기는 단 세 식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추세를 살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호적에는 여러 기관 소속 향리가 등장한다. 대구부 관아와 경상감영 소속 향리뿐만 아니라 中營과 鎭營 소속 향리도 등장한다. 그러나 중영과 진영 향리의 수는 감영과 대구부 소속 향리에 비해 매우 적다. 일례로 1825년에는 鎭營吏 19명, 中營吏 2명만이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대구부 관아와 경상감영 소속 향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구 읍치의 향리와 유학 직역자 수를 나타낸 것이 아래 <표 1-1>이다. 17세기 후반 대구부에 소속된 향리는 2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8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18세기 후반에는 100명을 넘어섰고, 19세기에는 200명을 돌파했다. 감영리의 증가 추세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17세기 후반 22명에 지나지 않던 감영리 수는 18세기 초반 100명을 훌쩍 넘고, 19세기 이후 300명을 돌파했다.

3) 『정조실록』, 정조 14년 2월 22일, "嶺南吏額之數多, 卽諸道所無之弊".
4) 동상면과 서상면이 모두 남아있는 식년은 1684, 1732, 1735, 1747, 1762, 1789, 1795, 1825, 1831, 1858년이다.

<표 1-1> 대구 읍치 지역의 향리와 유학 주호 수 (단위: 명)

주호 / 연도	府鄕吏(A)		監營吏(B)		留學(C)		전체 주호 (D)
	주호	(A/D*100)	주호	(B/D*100)	주호	(C/D*100)	
1684	20	(2)	22	(2)	21	(2)	1,309
1732	89	(4)	122	(5)	75	(3)	2,253
1735	92	(4)	147	(7)	66	(3)	2,053
1747	89	(3)	161	(6)	61	(2)	2,596
1762	104	(4)	178	(7)	110	(4)	2,728
1789	175	(6)	238	(8)	159	(5)	2,961
1795	155	(5)	249	(8)	191	(6)	3,035
1825	140	(5)	312	(10)	234	(8)	3,072
1831	140	(5)	337	(11)	286	(9)	3,083
1858	226	(8)	363	(12)	279	(9)	2,967

관료들은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라 인식했다.[5] 자연스레 향리의 증가는 백성의 수탈 증대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 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향리의 수를 억제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그러나 중앙의 이런 논의가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 같다. 대구 호적에 근거할 때, 향리의 수가 18세기에는 17세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고, 19세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농촌에서는 유학 직역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농촌 지역과 달리 읍치에서는 유학의 비중이 그리 증가하지 않았다.[7] 대구 호적의 경우 유학은 19세기 초반에는 50%, 후반에는 70~80%에 이른다.[8] 그러나 읍치에는 유학의 비중이 10%를 넘는 식년이 하나도 없었

5)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11월 30일, "列邑吏胥, 弄幻文簿, 侵漁百姓, 隨其邑大小, 定其吏額數, 以爲一定之規事也, 外邑吏額, 俱有定數, 昭載國典, 一遵法式, 汰減冗雜, 自是道臣邑倅之責"

6) 장동표, 1985, 「18·19세기 吏額增加의 현상에 관한 硏究」, 『부대사학』 9.

7) 권기중, 2020, 「18~19세기 감영소재지의 인구구성과 향리층의 존재양상 -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8) 四方博, 1938,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硏究』 3 :

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읍치에 거주하는 향리에게 있었다. 18세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학으로 호적에 등장하지만 향리들은 유학이 아닌 향리 직역으로 등장한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향리들이 어떤 직역으로 호적에 등장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을 흔히 鄕吏라 지칭했다. 그러나 당시 지방 관아에 소속된 향리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했다. 향리 외에도 衙前, 胥吏, 吏胥, 府吏, 人吏 등으로 이들을 지칭했다. 실록에는 鄕吏 660회, 人吏 555회, 吏胥 409회, 胥吏 229회, 衙前 174회, 府吏가 115회 등장한다. 이같이 국가에서는 지방의 향직 수행자를 주로 鄕吏, 人吏, 胥吏 등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호적에서 향리들은 어떤 직역으로 등장할까? 양반을 대표하는 직역이 유학이었던 것처럼 향리를 대변하는 직역명이 있었을 것이다. 호적의 합계 부분인 도이상조가 남아있는 대구 호적과 단성 호적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도이상조의 개별 직역 명칭과 그 인원은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것이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호적의 도이상에는 향리 관련 직역명으로 공생이 등장한다. 1750년 人吏가 한번 등장하고 律生과 醫生과 같은 직역명도 18세기 중반에 등장하다 그 이후 사라진다.

이준구, 1981, 「朝鮮後期의 身分構造와 그 變動」, 『東方學志』 26.

<표 1-2> 대구 도이상의 향리 수 (단위: 명)

직역, 직책 / 연도	貢生	人吏	律生	醫生
1705	55			
1711	46		18	14
1720	42		15	
1750	207	502	11	
1786	482			
1789	622			
1795	397			
1801	477			
1804	482			
1810	198			
1816	192			
1825	247			
1834	373			
1837	404			
1858	376			
1861	388			
1867	663			
1870	693			
1876	647			

<표 1-3>을 통해 단성 호적의 도이상조에는 공생과 향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성에서도 가리, 소동, 서원 등의 명칭은 18세기 초반에만 등장하고 사라진다. 의생과 율생은 조선후기 내내 등장하는데 향리와 하층 신분의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사용하는 직역이며, 그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9]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향직을 수행하는 자

9)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174쪽.

<표 1-3> 단성 호적 도이상의 향리 수 (단위: 명)

직역,직책 / 연도	鄕吏	貢生	醫生	律生	假吏	小童	書員
1678	4	13	6	6	15		
1717	8	15	2	16	7	10	9
1720	6	17	3	17	4	11	11
1732	7	33	4	11		7	10
1759	9	17	1	5			
1762	11	26	2	4			
1783	7	18	2	5			
1786	9	15	2	5			
1789	10	17	2	5			
1825	11	18	3	6			
1828	11	20	5	4			
1834	11	20	5	6			
1837	11	20	5	6			
1840	11	10	5	6			
1846	11	11	4	6			
1861	15	12	5	7			
1870	19	13	6	6			
1789	19	13	6	6			
1882	19	13	6	6			

들은 향리와 공생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호적에서 향리를 대표하는 직역명 중 하나는 공생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대구 호적에는 공생을 향리의 대표 직역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에는 감영이 있어 호적 작성 과정에서 국가 정책을 보다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의 도이상조에는 공생이 향리의 대표 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호적 본문에서는 향리와 관련된 직역명[공생, 향리]뿐만 아니라 안일호장, 기관 등과 같은 명칭도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생, 향리를 제외

한 향리관련 명칭을 직책으로 부르기로 한다. 호적 본문에 등장하는 향리의 직역명과 직책명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리와 관련된 직역 기재의 변화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대구 호적을 살펴보자. 대구 호적에는 다양한 향리 직역이 등장한다. 대구부 호적에는 대구부 관아에 근무한 향리와 경상감영에 근무한 향리가 다수 등장한다. <표 1-4>는 대구의 읍치인 서상면과 동상면 호적이 모두 남아있는 식년의 향리 직역과 직책을 정리한 것이다. 記官, 鄕吏, 人吏, 安逸戶長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관, 부리, 인리 등은 비중이 낮아지고 향리와 공생이 주를 이룬다. 특히 공생이라는 직역은 18세기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여러 향리 직역 가운데 공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식년은 1789년이고, 전체 413명의 향리 가운데 90%가 넘는 383명이 공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4> 대구 호적의 향리 관련 직역과 직책 (단위: 명)

직역,직책 / 연도	記官	鄕吏	人吏	安逸戶長	貢生	합계
1684	4	3	19	0	27	53
1732	2	57	88	1	62	210
1735	7	55	85	1	92	240
1747	3	46	11	2	187	249
1762	3	53	1	3	222	282
1789	0	28	0	2	383	413
1795	1	35	1	2	364	403
1825	1	108	0	5	337	451
1831	3	112	0	5	360	480
1858	1	100	0	3	485	589

아래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호적 본문에 공생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단성에서도 재확인된다. 향리는 단성 호적에 공생과 더불어 戶長과 記官으로 기재되었다. 단성 호적에서 읍치가 남아있는 식년은 총 9개인데 호장과 기관은 단 한 식년도 10명을 넘지 않는다.[10] 반면 공생

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19세기에는 40명 가까이 등장한다.

<표 1-5> 단성 호적 향리 수 (단위: 명)

직역, 직책 / 연도	記官	戶長	貢生	합계
1678	3	1	13	17
1717	3	5	14	22
1720	1	6	17	24
1732	2	5	28	35
1759	3	3	14	20
1783	2	6	19	27
1786	4	6	17	27
1825	3	3	44	50
1828	6	3	39	48

울산 호적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11]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 호적에는 향리가 안일호장, 기관, 공생 등의 직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장과 기관은 18세기 이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세기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1834년 호적에는 호장과 기관이 고작 3명만 등장한다. 반면 공생 직역자는 18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0) 본고에서 사용한 단성 호적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 연구원이 정리한 『慶尙道丹城戶籍』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11) 본고에서 사용한 울산 호적은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이 정리한 『蔚山府 戶籍大帳』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표 1-6> 울산 호적 향리 수 (단위: 명)

직역, 직책 / 연도	鄕吏	記官	戶長	貢生	합계
1609	0	2	2	0	4
1672	0	2	0	1	3
1705	0	17	3	23	43
1765	0	26	2	65	93
1771	0	18	2	44	64
1786	0	43	2	38	83
1789	2	33	6	46	87
1810	0	5	3	49	57
1819	0	3	5	55	63
1834	0	0	3	54	57
1840	1	3	3	44	51

실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향리라는 표현이 호적에는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단성과 울산 호적에는 향리라는 직역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단성 호적 본문에는 전 식년에 걸쳐 鄕吏라는 직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울산 호적에서도 1789년에 2명, 1840년에 1명이 등장할 뿐이다. 반면 18세기 이후 대구, 단성, 울산의 호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貢生은 실록에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공생은 실록에 총 54번만 등장하며 주로 한 개인의 직역으로 사용된다. 이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구, 단성, 울산 호적 본문에서 기관이나 호장과 같은 향리 관련 직책명이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공생이라는 직역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대구 향리를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가계 구성원 다수도 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아래 <그림 1-1>에 대구부 관아에 근무한 달성 서씨 향리의 가계도 일부와 그들의 직역과 직책을 나타내 보았다. 6대 연속 향리를 역임한 克達 후손 중 일부는 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한다. 熙甲, 碩來는 안일호장이라는 직책과 더불어 공생, 향리로도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일호장은 호장을 역임한 퇴사 향리에게 주는 명예직이었다. 즉

희갑과 석래는 상층 향리직을 역임한 향리임을 알 수 있고 안일호장 이전에 공생이라는 직역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안일호장을 역임한 아들과 손자를 둔 克達 역시 공생으로 기재되었다.

성명	克達 — 熙甲 — 碩來 — 宗濬 — 聖臣 — 義文					
직역, 직책	貢生 (1681, 1684)	貢生 (1708, 1717)	貢生 (1729, 1732)	鄕吏 (1759, 1762)	府鄕吏 (1795)	府鄕吏 (1816, 1825)
		安逸戶長 (1723)	鄕吏 (1735)	選武軍官 (1765)		
			府貢生 (1738)	出身 (1783)		
			安逸戶長 (1747, 1756)			

<그림 1-1> 향리 가계의 가계도와 직역

이상에서 호적에 많은 향리 가계원이 공생으로 등장하며 그 수가 18세기 이후 점점 늘어나는 것은 세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생이 어떤 의미이지, 어떤 사람들이 공생으로 기재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호적에 향리들이 유학을 지칭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줄 주요 단서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공생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생의 이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직임이 없는 향리 예비군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직임을 수행하는 향리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진다.[12)]

12) 공생을 직임이 없는 향리 예비군으로 바라본 연구자는 김필동, 이훈상, 정성학 등이 있다. 김필동은 구체적인 직임을 맡지 않는 액외의 이서, 일종의 이서 예비군이라고 보았다. 이훈상은 記官에 오를 자격을 갖춘 집단으로 이해했다. 이준구는 이훈상의 공생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공생이 대구 도시지역의 호적에 지나치게 많이 호주로 존재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을 향리 후손이면서 상

이러한 여러 견해를 염두에 두면서 공생을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공생의 어원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생은 고려의 鄕貢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려사』 성종 6년의 기사에 향공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후부터 만일 열심히 공부하여 경학에 뜻을 둔 자, 孝悌로 이름난 자, 의술을 쓸 만한 자가 있으면 牧宰와 州縣을 맡은 관리가 京師에 천거하라[13]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 성종 6년 지방관으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해 등용하는 향공 제도가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의 향공 제도는 『周禮』에 나오는 古事를 받아들여 만들어 진 것이다. 아래 『周禮』 「地官司徒」에는 이런 설명이 등장한다.

> 그날 鄕老와 鄕大夫를 비롯한 모든 관리는 현인과 재능 있는 사람을 기록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2번 절하고 받는다.[14]

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았다. 정성학은 향직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을 공생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는 주로 『연조귀감』에 나오는 공생의 정의를 인용해 이와 같이 정리했다. 반면 공생을 직임을 수행하는 향리로 본 연구자들은 주로 호적을 통해 접근했다. 권기중은 공생을 향리 자손을 칭하는 신분적 의미로 사용된 용어로 보면서도 주로 하층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 이해했다. 반면 이종서는 울산 호적 상급 향리 가문에서 공생 직역자가 다수 등장했기 때문에 상층 직임으로 이해했다. 손병규는 호적에 기재되는 향리 직역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공생은 실제로는 향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예비집단으로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훈상, 1990, 『朝鮮後期의 鄕吏』, 일조각, 234쪽; 김필동, 1982,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上) -社會史的 接近」, 『韓國學報』 제28집, 92~93쪽; 이준구, 1994, 「朝鮮後期 都市地域에서의 身分職役 構成과 商人의 存在: 大邱를 中心으로」, 『九谷黃鍾東敎授停年紀念 史學論叢』, 九谷黃鍾東敎授停年記念史學論叢 刊行委員會;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景仁文化社, 174쪽; 이종서, 2014, 「조선후기 울산지역 상급 향리직의 구성과 향리 가계의 변동 -'향리'의 의미 변화 및 위상 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67, 89쪽; 손병규, 2007,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34~236쪽, 정성학, 2019, 「조선후기 공생(貢生)의 의미와 공생층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111.

13) 『고려사』 3권, 성종 6년 "自後, 若有螢窓勵志, 鱣肆明經, 孝弟有聞, 醫方足用, 可其牧宰知州縣官, 具錄薦貢京師".

고려 정부는 고대의 예법을 받아들여 인재를 기용하는 한 방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2>에서 보듯이 고려시대 初試인 國子監試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국자감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여러 집단 가운데 하나가 鄕貢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인 界首官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經書, 孝悌, 醫術이 뛰어난 자를 선발해 界首官試를 치르게 한 것이다. 이 계수관시에 합격한 자를 바로 향공이라고 칭했으며, 그들은 국자감시에 응시할 자격을 가졌다. 향공 출신으로 국자감시에 합격한 자를 鄕貢進士라 불렀다. 그런데 지방관의 추천을 받아 계수관시에 응시하고 향공으로 선발되는 자들은 대부분 향리 자손이었다.[15]

貢士(一般國學生, 十二徒生)
鄕貢(界首官試 합격자)
胥吏(雜類를 제외한 吏屬)
└進士(國子監試) -> 禮部試(及第)

<그림 1-2> 고려시대 과거응시 자격

아래 인용문은 조선후기 尙州의 향리 후손 李震興이 편찬한 『掾曹龜鑑』 「吏職名目解」이다. 이 글에도 공생과 고려시대 향공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다.

> 향리의 자손들을 貢生이라 부르는 것은 고려 성종 6년 8월에 經書에 통달하고 書籍을 읽은 사람을 뽑아서 經學, 醫學博士로 삼아 12牧에 각각 한 명씩 보내 일을 잘 처리하게 하고, 여러 州郡縣의 長吏와 백성의 자식 가운데 가르칠 만한 사람은 모두 훈계하도록 하고 만약 經學에 뜻을 둔 자, 효제로 이름 난 자, 의술이 뛰어나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牧宰와 주현을 맡고 있는 관리로 하여금 漢家의 故事에

14) 『周禮』, 「地官司徒」 "厥明鄕老及鄕大夫羣吏, 獻賢能之書于王, 王再拜受之."
15) 허흥식, 2005 ,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122쪽. 이하 고려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해 작성했다.

의거해 모두 京師에 천거하는 것을 규정으로 여겼으니 이것이 이른바 향공이기 때문이다.[16]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향공 제도를 통해 선발된 자를 공생이라 불렀다. 그런데 향공 제도를 통해 선발되는 공생은 대부분 향리 자손이었기 때문에 향리를 공생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이 개국된 이후 향공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공생이라는 명칭은 존속했다. 고려시대 향공 제도로 선발된 자를 의미했던 공생은 향공제도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며 지역과 자료에 따라서 공생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다.

조선시대 공생은 다음 세 가지로 사용되었다. 첫째, 직임을 가진 향리만을 가리키기도 했고, 둘째, 향직 예비자만을 지칭하기도 했고, 셋째, 직임을 수행하는 향리와 그 예비자를 모두 아우르기도 했다. 세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실록 기사를 통해 조선시대 공생이라는 표현은 향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司諫 鄭道가 말하길 "(중략)이처럼 향리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國典에 밝게 실려 있습니다. (향리들이) 난리를 겪은 뒤 사망하여 거의 없어졌고 나머지 조금 넉넉한 자는 또한 다 贖身하여 本州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쇠잔한 자들이 약간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登第한다면 앞으로 누구를 부역 시킨단 말입니까. 공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향리입니다. 그들 중에 京榜에 참여된 자가 많으니 호남과 똑같이 처치해야 하는데,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7]

鄭道는 임진왜란 이후 향리들이 죽고 그나마 남은 공생, 즉 향리들이

16) 『椽曹龜鑑』, 「吏職名目解」, "鄕吏子孫稱以貢生, 盖高麗成宗六年八月選通經閱籍者, 爲經學醫學博士, 於十二牧各遣一人, 敦行敎諭, 其諸州郡縣長吏百姓有兒可敎學者, 并令訓戒, 若有勵志明經孝悌, 有聞醫方足用者, 令牧宰知州縣官, 依漢家故事, 具錄薦貢京師, 以爲恒式, 卽所謂鄕貢也".

17) 『광해군일기』 12년 1월 2일. "司諫鄭道啓曰 (중략) 且鄕吏許科, 昭載國典, 經亂之後, 死亡殆盡, 餘存稍實, 亦皆贖身, 本州所屬, 不過貧殘若干人。 今又登第, 將何使喚而爲郡役? 名貢生, 乃是鄕吏也。 來參京榜者, 不爲不多, 所當與湖南一樣處置, 未知將何以爲之"

과거에 응시해 향역에서 빠지는 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 나라에서 백성의 등급을 다양하게 제정했는데 士族[사족유생], 校生[사족이 아니면서 유업에 종사하는 자], 許通[사족의 첩 자손], 貢生[역을 지러 가는 향리], 百姓[양인으로 군대 가는 자], 公賤[각 관아의 노비], 私賤[私家의 노비], 才人[광대 무리], 白丁[소를 도축하는 무리]이 그들이다.[18]

17세기 중반~18세기 초에 활동한 李簠는 위의 인용문처럼 공생을 '人吏去役者'로 설명해 두었다. '去'의 해석에 따라 역을 지러가는 향리로도, 역이 없는 향리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보는 조선시대 백성을 사족, 교생, 허통, 공생, 백성, 공천, 사천, 재인, 백정으로 구분했다. 역을 수행하고 있는 향리들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人吏去役者'에 대한 해석은 역을 수행하는 향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이보 역시 공생을 향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호적에 공생으로 등장한 향리가 어떤 직책을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에 앞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향리를 크게 상층 하층으로 나누기로 한다.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해 향리 조직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는 수령 아래 여러 직책의 향리들이 존재했다. 삼공형, 호장, 육방, 색리는 군현의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이들은 위계 상으로는 구분이 되었으나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종 임무를 맡은 色吏들 역시 일부는 호장과 육방의 아래에서 근무했으며, 일부는 독자적인 부서로 존재하기도 했다.[19] 본고에서는 아래 그림에 등장하는 직책의

---

18) 李簠, 『景玉先生遺集』 券2 雜著 名分說, "國制民等級甚多, 曰幼學[士族儒生], 曰校生[非士族而業儒者], 曰許通[士族妾子孫], 曰貢生[人吏去役者], 曰百姓[良人從軍者], 曰公賤[各寺奴婢], 曰私賤[私家奴婢], 曰才人[倡優之屬], 曰白丁[屠牛之屬]".

19) 향리의 조직구조와 〈그림1-3〉 은 권기중, 2010, 앞의 책, 24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향리들을 상층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색리들 아래에는 이들을 보좌하는 많은 假吏들이 존재했다. 이들을 하층 향리로 규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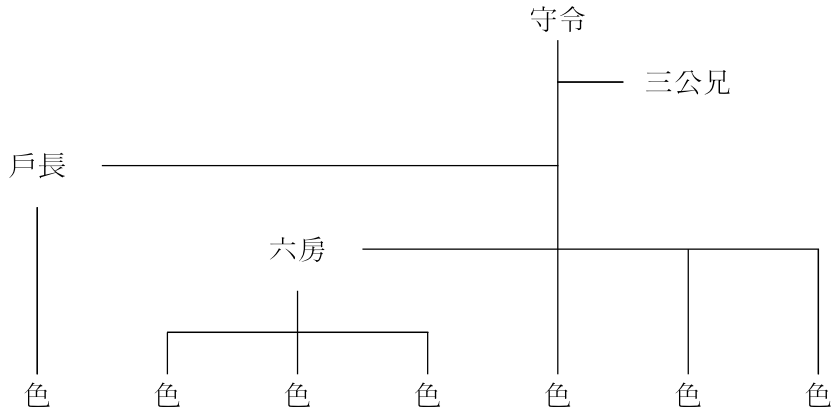

<그림 1-3> 향리의 조직구조

어떤 직책의 향리가 호적에 공생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리 선생안과 대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구에는 현존하는 향리 선생안이 없다. 대신 都以上이 남아있는 식년에 한해 호적색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1834년 대구 호적의 마지막 장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호적의 마지막 장에는 戶籍을 작성했던 향리와 監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곳에 기재된 색리는 당해 호적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戶籍色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부세 수취 과정에서 호적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감안하면 호적색은 높은 직임이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대구 호적의 도이상조는 모든 식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총 21개 식년에서 도이상이 남아있으며 그 중 1720년, 1723년 도이상에는 호적색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표 1-7>은 도이상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색의 이름과 그들의 직역을 나타낸 것이다. 당해 호적이 아닌 다른 식년 본문에 등장하는 호적색은 등장 식년을 별도로 표시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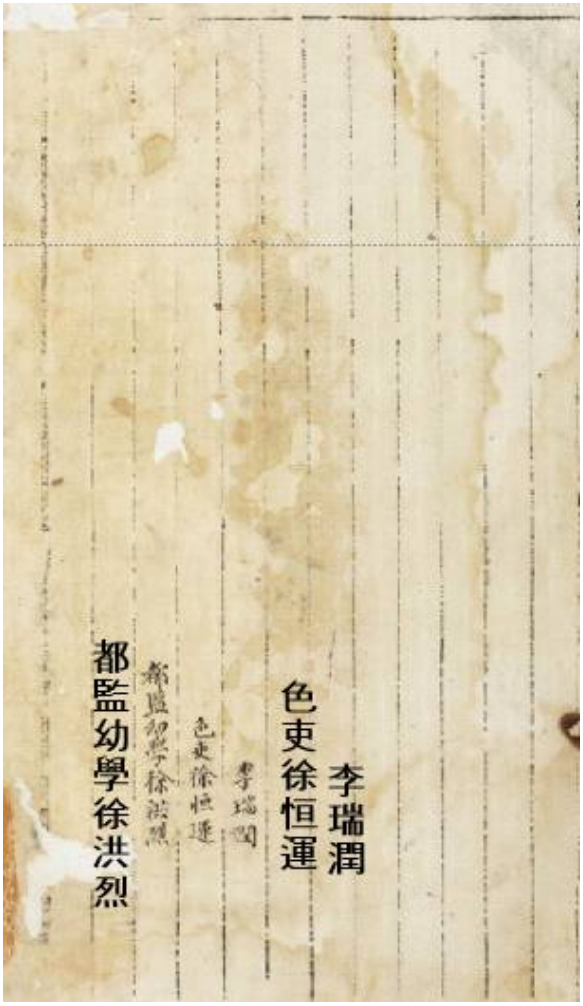

<그림 1-4> 1834년 대구 호적 작성자

<표 1-7> 대구 호적색의 호적 기재 양상

내용 / 식년	성명	본문 기재	비고
1705	裵益昌	貢生	
1711	丁起河	府貢生	1714년 본문
1750	徐碩來	安逸戶長	1747년 본문
1777	徐有八	鄕吏	1783년 본문
1786	徐禹來	貢生	1783년 본문
1789	李元采	府鄕吏	
1795	徐啓道	鄕吏	
1804	李大赫	鄕吏	1795년 본문
1810	李重潤	鄕吏	
1825	徐義洙	鄕貢	
1834	徐恒運	府貢生	
1837	李百枰	記官	
1858	李漢曄	鄕吏	
1861	金貴潤	鄕吏	1858년 본문
1867	李華奭	府吏	

26명의 호적색 가운데 15명의 직역을 호적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5명 중 9명은 당해 호적 본문에 등장한다. 이를 통해 호적색 직임을 수행하던 시기 호적에 어떤 직역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해 연도 호적에 등장한 호적색은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鄕吏나 府吏로 호적 본문에 등장하고, 나머지 4명은 공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徐義洙는 1825년에 호적에 鄕貢이라는 직역으로 등장한다. 향공이라는 직역은 호적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향공 제도로 선발된 사람을 공생이라고 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당해 호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인근 식년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6명의 호적색은 인근 식년의 호적에 등장하는데 향리가 3명, 안일호장이 1명, 공생이 2명 등장한다. 이처럼 호적색을 수행하고 있는 상층 향리가 공생으로 기재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단성 호적에도 호적색 이름이 감관 이름과 함께 호적 말미에 등장한

다. 아래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성 호적색의 이름은 대부분 18세기 호적에만 등장하고 19세기 이후 호적은 1825년을 제외하면 보이지 않는다. 단성의 호적색은 李氏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단성의 유력 향리 가계인 陜川 李氏 李後男의 후손이다.[20] 단성 호적의 호적색은 본인들을 공생으로 칭했다. 1732년부터 1789년까지 호적색은 본인의 이름 앞에 貢生이라는 직역을 사용했다. 이들 호적색은 본문에도 1732년, 1786년, 1825년에 공생으로 등장한다. 1783년, 1789년 호적색 최치민, 최대준은 당해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인근 식년에 발견된다. 이 중 최치민은 공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8> 단성 호적색의 호적 기재 양상

양상 / 식년	성명	도이상조 직역	본문 직역과 직책	비고
1717	李時馥		律生	
1720	許有章		律生	
1732	崔泰興	律生	貢生	
1735	李東祥	律生	律生	
1762	李翊茂	貢生	攝戶長	
1780	李命聃	貢生	攝戶長	
1783	崔致民	貢生	貢生	1786년 본문
1786	李再聃	貢生	貢生	
1789	崔大俊	貢生	記官	1786년 본문
1825	崔亨魯		貢生	

울산 호적에도 많은 향리가 공생으로 기재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울산 호적에서는 호적색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대신 향리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蔚山府先生案』이 존재해 호적과 교차 대조가 가능하다. 『蔚山府先生案』에는 1598년(선조 31)에 울산에 부임한 군수 金太虛 이후 1906년(광무 10)에 移任한 金德漢까지 총 308년 동안 울산에 부임한 수령과 좌수, 별감, 호장, 기관, 이방의 이름이 기록되어

20) 권기중, 2010, 앞의 책, 104쪽

있다.[21] 『蔚山府先生案』과 울산 호적을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1-9>이다.

<표 1-9> 『蔚山府先生案』과 울산 호적에 모두 기재된 향리

정보 / 순번	성명	『蔚山府先生案』		호적	
		근무 기간	직책	식년	직역과 직책
1	朴致雲	1607~1610	戶長	1609	戶長
2	朴獜福	1601	戶長, 免鄕	1609	免鄕
3	朴應春	1610	詔文	1609	記官
4	朴老松	1613~1614	詔文	1609	記官
5	朴輝	1607~1610	詔文部將	1609	康節校尉部將
6	卞三晉	1673~1676	詔文	1672	貢生
7	朴孝善	1666~1673	戶長	1672	記官
8	尹仁溟	1672~1673	詔文	1672	記官
9	鄭思遠	1672~1673	詔文	1672	記官
10	朴而文	1682~1683	戶長	1684	記官
11	朴喆烱	1704~1706	詔文, 戶長	1705	安逸戶長
12	朴起文	1702~1705	詔文	1705	安逸戶長
13	朴喆重	1703~1704	詔文	1705	安逸戶長
14	朴泰興	1703~1704	詔文	1705	貢生
15	朴晋文	1713~1714	詔文	1708	貢生
16	卞興碧	1709~1710	詔文	1708	貢生
17	朴尙文	1709~1710	詔文	1708	貢生
18	朴益文	1704~1709	詔文	1708	安逸戶長
19	朴慶新	1759~1761	副詔文	1765	貢生
20	朴慶恒	1764~1769	戶長	1765	貢生
21	朴汝弘	1761~1764	詔文	1765	貢生

21) 울산박물관, 2012, 『蔚山府先生案』. 『蔚山府先生案』에 대해서는 이종서, 2010, 「『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의 체제와 성격」, 『한국고문서학회』 36, 참고.

22	朴龍集	1761~1764	詔文	1765	貢生
23	朴凞敦	1761~1764	戶長	1765	貢生
24	朴凞老	1759~1761	戶長	1765	安逸戶長
25	朴五龍	1774~1777	記官	1771	貢生
26	朴凞老	1769~1774	戶長	1771	安逸戶長
27	朴宗樞	1774~1777	副記官	1774	貢生
28	朴昌百	1774~1777	記官	1774	貢生
29	朴文五	1783	戶長	1786	貢生
30	朴必濂	1785~1787	記官	1786	貢生
31	朴昌震	1785~1788	戶長	1786	貢生
32	朴文赫	1787~1794	戶長	1789	鄕吏
33	朴敏德	1790~1792	副記官	1789	貢生
34	朴相龍	1790~1792	記官	1789	鄕吏
35	朴昌震	1785~1788	戶長	1789	安逸戶長
36	朴道榮	1806~1809	副記官	1810	貢生
37	朴道郁	1809~1811	戶長	1810	安逸戶長
38	朴萬曄	1809~1811	戶長	1810	貢生
39	朴敏協	1809~1811	記官	1810	貢生
40	朴之順	1813~1814	戶長	1810	貢生
41	朴之英	1806~1809	副記官	1810	貢生
42	朴義斗	1816~1820	戶長	1819	貢生
43	朴載春	1816~1817	吏房	1819	壯仕郎
44	朴之會	1816~1817	副吏房	1819	貢生
45	朴敏華	1817~1819	副記官	1819	貢生
46	朴啓仁	1817~1819	副記官	1819	貢生鰥夫
47	朴道燁	1828~1829	戶長	1834	安逸戶長
48	李運恒	1828~1829	副記官	1834	貢生
49	朴禎埰	1828~1829	副記官	1834	貢生
50	金翼昊	1829~1834	戶長	1834	貢生
51	朴載彦	1829~1834	副記官	1834	貢生
52	朴偉相	1829~1834	副記官	1834	貢生
53	朴魯憲	1834~1835	詔文	1834	貢生
54	朴之寓	1834~1835	副記官	1834	貢生

두 자료 모두 등장하는 향리는 총 54명이다. 그 중 61%에 해당하는 33명의 직역이 공생으로 등장한다. 戶長 혹은 安逸戶長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10명, 記官으로 기재된 사람이 6명이다. 특히 18세기 이후 공생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 이같이 대구, 단성, 울산 사례는 상위 직책을 역임하는 향리 중 일부는 호적에 공생으로 등재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대구 향리가 호적에 공생으로 기재된 사례는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1870년 대구부 읍성을 수축한 후 남긴 修城碑이다. 대구부 읍성은 1736년 완공되었고 이후 1869년 慶尙道觀察使兼大邱都護府使로 부임한 金世鎬가 대구 읍성을 수리했다. 공사 이후 김세호는 大邱修城碑를 남기면서 수성비 하단에 공사에 참여한 인물의 이름을 기록해두었다.[22] 1870년의 축성 공사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역을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성비 하단에 이름을 남긴 인원은 총 51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色吏나 記官과 같은 향리였다.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는 1867년, 1870년 호적에 공생으로 등장한다. <표 1-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1명 중 25명이 호적에 발견되고 그 중 14명의 직역이 巡貢生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1867년 호적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兼景福宮衛將라는 직역으로 등장한 徐漢琦는 1834, 1843, 1846, 1852년 호적에 순공생으로 등장한다.

22) 대구부 읍성에 대한 설명과 표는 이동규, 2017, 「朝鮮後期 軍官職役者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06~107쪽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표 1-10> 수성비와 호적에 모두 등장하는 향리

정보 / 순번	姓名	碑文		戶籍	
		修城時 職務	職責	職役	居住面
1	徐漢琦	東城別看役	五衛將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兼景福宮衛將	東上
2	鄭魯允(潤)	東城別看役	色吏	府貢生	西上
3	徐奎賢	西城別看役	五衛將	折衝	東上
4	薛益秀	西城看役	色吏	巡貢生	東上
5	鄭宅夏	西城看役	色吏	직역 미기재	西上
6	徐必魯	西城看役	色吏	巡貢生	東上
7	徐甲增	南城別看役	架山別將	折衝將軍行架山鎭別將	西上
8	鄭益昇	南城看役	折衝	巡貢生	西上
9	鄭宅仁	南城看役	色吏	巡貢生	西上
10	金斗甲	南城看役	色吏	巡軍官	東上
11	徐志敏	南城看役	色吏	巡貢生	東上
12	趙達雲	北城看役監官	出身	出身	東上
13	李景龍	北城看役	色吏	營吏	西上
14	金泰林	北城看役	色吏	巡貢生	西上
15	鄭昌殷	北門看役監官	折衝	巡貢生	西上
16	鄭來鳳	北門看役	色吏	직역 미기재	東上
17	徐必道	北門看役	記官	巡貢生	東上
18	金禎漢	伐木所監官	嘉善	出身	東上
19	李養斗	伐木所監官	司果	在家軍官	西上
20	申錫根	伐木所監官	色吏	巡貢生	東上
21	許鈺	吹鐵所監官	司果	巡在家軍官	東上
22	李周植	吹鐵所監官	色吏	巡貢生	西上
23	金甲祚	燔瓦所監官	色吏	巡貢生	西上
24	楊必寬	碑閣監董	折衝	巡貢生	西上
25	尹鳳翕	築應看役	折衝	巡貢生	東上

*비고: 거주지가 동상면인 경우 1867년, 서상면일 경우 1870년 호적의 기록임

상층 향리 뿐만 아니라 하층 향리 역시 공생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그러한 사실은 양안에서 확인된다. 호적에는 한 개인이 특정 식년에 한번만 등장하지만, 양안에는 어떤 개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起主로 등장한다면 한 자료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여러 직역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직역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1720년 작성된 『龍宮縣庚子改量田案』[23]에는 起主의 이름과 직역이 적혀있다. 용궁현은 전체 1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리가 다수 거주한 邑內面 양안도 남아있다. 향리의 토지는 읍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 되어 있었다.[24] 그러나 자신들이 거주한 읍내면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읍내면 양안에는 향리들이 여러 필지의 기주로 등장한다. 한 사람이 같은 직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표 1-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생으로만 등장하는(㉰) 비중이 64%로 가장 높다. 그러나 한 개인이 직역명[공생, 향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책명[기관, 호장, 노리, 가리 등]을 쓰기도 한다. 상위 직책인 鄕吏, 記官, 戶長은 ㉮에 포함했고, 하급 직책인 老吏, 假吏는 ㉯에 포함시켰다. 총 48명이 공생과 ㉮의 상위 직책으로 기재되었다. 예를 들어 金海達은 읍내면의 여러 필지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玄字 130번 밭에는 貢生으로 등장한다. 반면 收字 42번, 43번 밭에는 記官으로, 金字 67, 68번 논에는 戶長으로, 珍字 5번 밭에는 鄕吏로 등장한다. 김해달처럼 공생과 ㉮의 상위 직책으로 동시에 기재된 사람은 전체 14%에 해당하는 18명이었다. 반면 李東發은 地字 22번 밭에 假吏로, 荒字 56번, 60번 논에는 貢生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동발과 같이 공생과 하위 직책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전체 22%에 해당하는 28명이다. 이처럼 호장과 같은 상위 직책을 맡은 자도 공생으로, 하리나 가리와 같은 하층 직책도 공생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3) 『龍宮縣庚子改量田案』, (奎 14953, 奎 13955)

24) 정성학, 2014, 「조선후기 안동 상층 향리의 향직계승과 존재양상」, 『한국사론』 60, 343~344쪽.

<표 1-11> 용궁현 읍내면 양안 속 공생의 기재 양상

직역	인원	(%)
㉮ 공생+상위 직책(향리, 기관, 호장)	18	(14)
㉯ 공생+하위 직책(가리, 노리)	28	(22)
㉰ 공생	82	(64)
㉱ 공생+기타직역	2	(2)
합계	130	(100)

두 번째로 공생은 향직 예비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몇몇 읍지와 人吏案에는 직임이 없는 향리를 공생으로 파악해 두고 있다. 1895년 편찬된 『湖南營事例』[25]에는 호남 감영의 향리를 기록해 두었다. 이곳에는 時仕鄕吏 16人, 律生 16인, 醫生 21인, 假吏 18인, 貢生 15인을 파악해 두었다. 공생은 당시 직임이 있던 향리와도, 율생, 의생, 가리와 같은 하급 향리와도 성격이 다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직임이 없던 자들도 공생으로 파악해 두었다고 봐야한다. 몇몇 향리 선생안에도 공생을 파악해 두었다. 공생이 등장하는 선생안은 『營屬人吏貢生官案』[26], 『營人吏貢生官案』[27], 『全州府人吏貢生日守官奴妓生官婢官案』[28], 『衙前官案』[29]이고 <표 1-12>에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

25) 『湖南營事例』 (奎, 貴12201).
26) 『營屬人吏貢生官案』, (奎, 古4652-120).
27) 『營人吏貢生官案』 (연세대 고서 115 0).
28) 『全州府人吏貢生日守官奴妓生官婢官案』, (奎, 21849).
29) 『衙前官案』 (奎, 가람古351.2-Aj35)

<표 1-12> 공생이 등장하는 人吏案

인리안	발행 연도	지역
『영속인리공생관안』	1750	전라 감영
『영인리공생관안』	1830	미상
『전주부인리공생일수관노기생관비관안』	1885	전주부
『아전관안』	미상	황해도

이들 인리안에서도 읍지와 마찬가지로 공생을 人吏와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영속인리공생관안』은 1750년 전라 감영에 소속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둔 것인데, 여기에는 人吏, 貢生, 年弱貢生의 명단이 등장한다. 인리 명단에는 이름과 그들이 맡은 직임을 기재해 두었다. 그 직임은 貢物色, 都書員, 吏房, 賑恤色, 均役色, 營庫色, 補軍色, 軍器色, 工房色, 馬位色, 古群山色, 會計色, 養士色, 蝟島色, 黑山島色 등이다. 이를 통해 人吏는 군현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향리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생 항목에는 이름만 적혀있고 아무런 직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약공생은 6세부터 17세까지 어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리안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인리 115명 가운데 4명의 이름 아래에 기재된 '還錄貢生'이라는 표현이다. 『영인리공생관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한다. 인리 명단에는 啓書, 書寫, 房掌 등의 직임과 營人吏, 府吏, 驛吏와 같이 소속 기관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생 명단에는 職任과 소속 기관의 서술이 없다. 대신 공생 명단 아래에 '陞吏'라는 표현이 있다. 황해도 아전들의 명단을 기록해둔 『아전관안』의 가장 첫 머리에는 營吏가 등장한다. 영리의 항목에 들어가는 직임은 吏房, 戶房, 兵房, 刑房, 禮房, 工房, 通引, 都事隧倍이다. 뒤이어 啓書, 算士, 隷習, 鎭撫가 등장한다. 이어서 首鎭撫, 禮房鎭撫, 都訓導, 軍器色, 工房鎭撫, 冶所色, 墨色, 首陽山城色, 長壽山城色, 中軍都訓導 醫生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貢生이 등장한다. 공생의 명단에는 다른 직임에는 없는 표시들이 있다. 바로 陞降의 기록이다. 몇몇 인물의 기록 아래에는 降定旗手, 降定軍牢, 陞部將 등의 기록이 있다. 안동의 『陞付吏案』[30]과 그들이 남긴

「節目」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本府(안동)의 향리는 金·權 양 太師의 후손으로 가업을 세습하였습니다. 그 수가 많아 몇 해 전 정원을 정하였는데, 營門에서는 130명으로 그 수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吏廳에서 함께 의논하여 부자형제를 구분하여 한결같이 나이에 따라 元案에 올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陞付案에 올렸습니다. 원안에서 빠지는 자가 있으면 대신하여 차례로 元案에 올리게 했습니다.[31]

『승부리안』, 「절목」의 설명대로라면 조선후기 향리의 정원이 정해지면서 일부는 향직을 맡는 元案에, 다른 일부는 원안에 궐액이 생기면 올라갈 자격을 가진 陞付吏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승부리안의 명단 아래에는 '元案移上'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원안에 궐액이 생겨 승부리안에 속한 향리를 원안으로 옮겨 적었다는 뜻이다. 이 표현이 '陞吏'와 '還錄貢生'과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인리안에서 파악한 공생은 당시 임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인리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의미한다. 공생들 가운데 일부를 인리로 '陞吏'하며, 인리 명단에서도 일부는 '還錄貢生'하는 자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공생은 앞의 두 의미를 합한 향직자와 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자 모두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한 사실을 대구 호적의 都以上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호적 도이상조에 등장하는 공생은 모두 직임이 있던 자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도이상에서 공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년은 1870년으로 693명이다. 도이상 뿐만 아니라 대구 호적의 본문에도 공생의 수는 상당히 많다. 일례로 1858년 대구 호적에는 府貢生 145명, 巡貢生 340명이 등장한다. 조선후기 관과 감영의 업무가 증대되면서 향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구에서만 500여명의 향리가 동시에 모두 직책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기엔 무

---

30) 『陞付吏案』 (奎, 古 920.051-Se81a)

31) 『陞付吏案』 「節目」,(奎, 古 920.051-Se81a), "本府鄕吏以金權兩太師後裔, 世襲箕裘, 厥數自多而年前定額時, 自營門以一百三十定數, 故一從年齒, 付之元案, 其餘段, 并付之陞付案, 以爲元案有闕, 代次次陞案之階".

<표 1-13> 대구 도이상 공생 수 (단위: 명)

구분 / 연도	壯	老	弱	합계
1705	47		8	55
1711	39		7	46
1720	41		1	42
1750	135		72	207
1786	325	157		482
1789	367	255		622
1795	290	107		397
1801	381	96		477
1804	394	88		482
1810	122	76		198
1816	135	57		192
1825	170	77		247
1834	336	37		373
1837	368	36		404
1858	344	32		376
1861	358	30		388
1867	454	209		663
1870	452	241		693
1876	415	232		647

리가 있다. <표 1-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이상에는 壯, 老, 弱을 구분해 조사해 두었다. 1750년까지는 弱을, 그 이후는 老로 조사된 자들이 등장한다. 특히 1750년 이후 향리 수가 늘어나면서 老나 弱의 수도 같이 증가한다. 壯, 老, 弱의 구분이 글자 그대로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1750년까지는 老가 한 명도 없고 그 이후는 弱이 없다. 따라서 壯, 老, 弱의 구분은 그들의 직임 수행 여부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壯이 실제 직임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면 老, 弱은 실제 직임이 없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향직 담당자를 일반적으로 향리라 불렀다면, 호적에는 공생이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었다. 이런

현상은 조선시대의 특수한 신분 질서와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신분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위상을 국가적 제도로 구분한 법제적 규정에 가깝다.[32] 그러나 조선 사회를 법제적 표현인 신분으로만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선 사회를 개개인을 법적인 지위나 자격에 따라 구분되는 국가적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서열을 의미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나누어 이해한다.[33] 이 기준에 따른다면 향리는 사회적 신분, 공생은 국가적 신분에 가까워 보인다. 호적이라는 국가의 문서가 규정하는 신분에 향리보다 공생이 일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단성과 울산 호적에는 향리라는 직역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구 호적에도 국가에서 각 군현에 내려준 '도이상'에 향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양반과 유학에서도 발견된다. 양반이라는 표현은 호적이나 양안과 같은 국가 문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반은 사회적 신분, 유학은 국가적 신분으로 규정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조선후기에는 사회적 신분과 국가적 신분이 온전히 구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리라는 표현이 호적에 등장하기도 한다.

18세기 이후 호적의 유학 직역자 수가 증가하지만 향리는 공생과 같은 향리들의 직역을 선호했다. 그 원인은 향리는 유학과 공생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학 직역자들은 원래 군역에서 면제되었으나 19세기에는 군역자 가운데 일부는 유학을 칭하기도 했다. 나아가 19세기 유학 대부분은 군역을 부담했다고 할 수 있다.[34] 공동납 체제가 시행되면서 군포를 마을 공동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다.[35] 반면 향리 역시 각종 역에서 면제되었다. 전라도 장흥부 모산동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세 수취하러 오는 관속들을 위해 지출했다.[36] 이처럼 향리는 부세를

---

32) 김인걸, 1987,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問題(下)』, 近代社會社 편, 한울.

33) 손병규, 2003,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용」,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34) 송양섭, 2005,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35) 김건태, 2021,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6쪽.

36) 김건태, 2021, 위의 논문 124쪽.

거두러 나가면 백성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명문 양반조차 향리를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1888년 경상도 寧海에서 戶籍色 尹一燦은 부사의 부재를 틈타 戶總을 올려 잡았다. 호총이 늘어나자 각 마을에서는 돈을 주고 호총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마을은 늘어난 호총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양반 마을인 槐市里에서 소장을 올려 윤일찬을 벌하고 호총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일찬이 뇌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만 府使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시간이 지나 판결을 내린 부사와 감사가 교체되었고 결국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37] 이처럼 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향리는 읍치에 한에서는 유학 못지않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유학이 과거를 준비하는 예비관료라는 의미처럼, 공생도 어원을 따져보면 과거 준비생이었다. 이처럼 유학과 공생은 유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향리들은 유학 대신 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37) 송양섭, 2017,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호적색 윤일찬의 '捧賂減戶'에 대한 마을민의 등소 사례」, 『조선시대사학보』 82.

2. 주요 향리 가계와 향직 분포

조선후기 향리의 수는 늘어났다. 대구에서도 18세기 이후 향리의 수가 급증했다. 조선후기 상층 향리 직임은 소수의 가계에서만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38] 대구는 어떤 가계에서 상층 향리직을 배출했으며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작업에 앞서 우선 대구 읍치의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1-5>는 1832년 간행된 『慶尙道邑誌』[39]에 수록된 대구부 읍치 지도이다. 대구의 읍치는 대구읍성으로 둘러 쌓여있다. 읍성 안 서쪽에 있는 건물이 本官이다. 이곳은 대구 府使의 근무처로서 대구의 각종 행정 업무를 주관했던 곳이다. 본관의 북동쪽에 위치한 것이 客舍이며 객사의 오른쪽이 監營이다. 감영에는 慶尙道 監司가 머무르며 경상도의 업무를 수행했다. 감영의 동쪽에는 中營이, 중영의 남쪽에는 鎭營이 있다. 행정 구역상 읍치는 西上面과 東上面에 소속되어 있다.

38) 이훈상, 1990, 앞의 책.
39) 『慶尙道邑誌』(奎666-v.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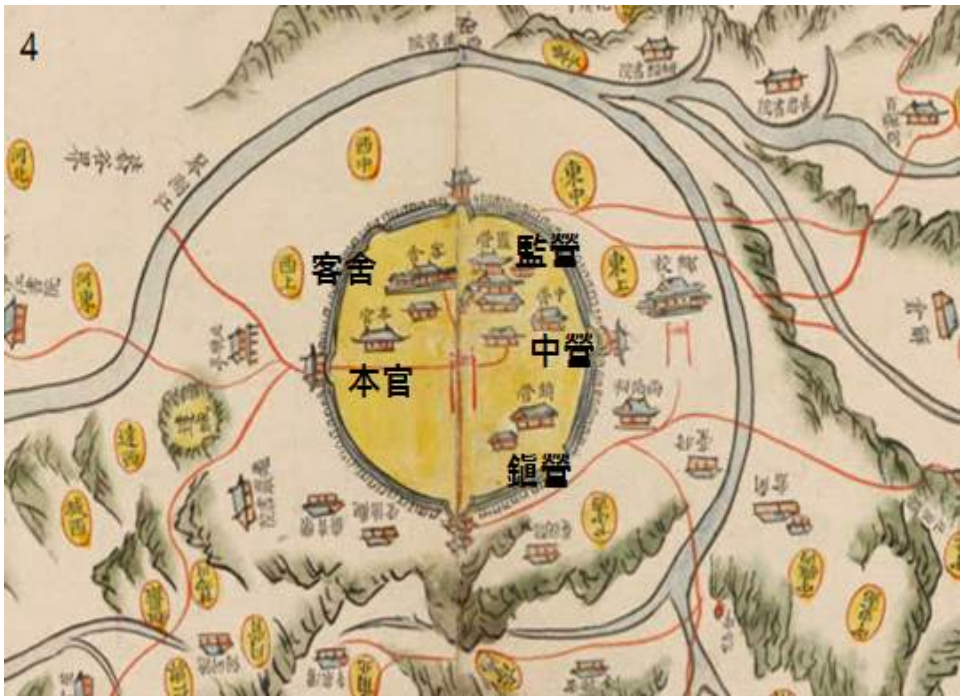

<그림 1-5> 대구부 읍치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18세기 이후 향리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향리의 수가 늘어난 만큼 향리를 배출한 성관도 증가했다. <표 1-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성관이 향리를 독점하는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구에서는 꾸준히 가장 많은 향리를 배출하는 성관이 달성 서씨와 김해 김씨이지만 두 성관 모두 한 식년에서 30명 이상의 향리를 배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신 매우 다양한 성관에서 향리가 배출된다. 1789년에는 총 63개 성씨가 향리로 호적에 등장한다.

<표 1-14> 대구 부리의 성관 (단위: 명)

성관 / 연도	達城 徐	金海 金	密陽 朴	月城 崔	기타 성관		합계 (%)
					주호	종류	
1684	11 (55)	0 (0)	0 (0)	0 (0)	9 (45)	5	20 (100)
1732	10 (11)	14 (16)	6 (7)	5 (6)	54 (60)	34	89 (100)
1735	12 (13)	12 (13)	6 (7)	7 (8)	53 (59)	35	92 (100)
1747	10 (11)	7 (8)	5 (6)	7 (8)	59 (67)	36	89 (100)
1762	12 (12)	13 (13)	9 (9)	3 (3)	63 (63)	34	104 (100)
1789	21 (12)	21 (12)	11 (6)	14 (8)	105 (62)	59	175 (100)
1795	18 (12)	19 (12)	8 (5)	11 (7)	96 (64)	47	155 (100)
1825	22 (16)	16 (11)	10 (7)	6 (4)	70 (50)	37	140 (100)
1831	17 (12)	15 (11)	8 (6)	10 (7)	92 (66)	40	140 (100)
1858	21 (9)	27 (12)	21 (9)	14 (6)	123 (54)	46	226 (100)

감영에 근무한 향리의 성관 역시 매우 다양하다. 아래 <표 1-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성 서씨, 김해 김씨, 해주 오씨, 연일 정씨와 같은 성관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18세기 이후 매 식년 40개 이상의 성관에서 향리를 배출했다.

<표 1-15> 대구 감영리 성관 (단위: 명)

성관 / 연도	達城 徐	金海 金	海州 吳	延日 鄭	기타 성관		합계 (%)	
					주호	종류		
1684	1 (5)	3 (14)	0 (0)	0 (0)	18 (82)	15	22	(100)
1732	14 (11)	15 (12)	9 (7)	3 (2)	81 (66)	38	122	(100)
1735	13 (9)	15 (10)	9 (6)	4 (3)	106(72)	46	147	(100)
1747	12 (7)	16 (10)	9 (6)	3 (2)	121(75)	52	161	(100)
1762	24 (13)	20 (11)	14 (8)	5 (3)	115(65)	41	178	(100)
1789	44 (18)	27 (11)	11 (5)	14 (6)	142(60)	50	238	(100)
1795	35 (14)	27 (11)	15 (6)	15 (6)	157(63)	44	249	(100)
1825	52 (17)	25 (8)	16 (5)	16 (5)	202(65)	48	312	(100)
1831	56 (17)	28 (8)	20 (6)	23 (7)	210(62)	46	337	(100)
1858	50 (14)	23 (6)	22 (6)	30 (8)	238(66)	38	363	(100)

대구 호적에 수많은 향리 성관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정 성관이 우위에 서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17세기 이후 어떤 성씨도 전체 향리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향리 범주에는 수많은 假吏들과 下吏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호적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리나 하리와 같은 하급 향리 직역이 사라진다. 아래 <표 1-16>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서상면의 하급 향리 직역자 수이다. 경상감영과 대구 관아에 소속된 하리는 17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많은 수가 보인다. 하급 향리들은 주로 下吏로 등장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노비이다. 일례로 1681년에 대구부 소속 하리 22명 가운데 12명이 府下吏 私奴 혹은 私奴府下吏로 등장한다. 1681년에는 56명, 1684년에는 71명이 등장하던 하급 향리는 18세기 이후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 1732년 이후는 律生만 소수 등장하고 하리와 가리 직역자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조선후기 향리의 수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하급 향리의 수도 늘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하층 향리는 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역으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표 1-16> 대구 호적에 나타난 하급 향리의 수 (단위: 명)

소속 / 연도	대구부			감영	합계
	하리	율생	가리	하리	
1681	22	7	4	23	56
1684	34	10	0	27	71
1708	22	17	0	0	39
1714	6	18	0	1	25
1723	3	7	0	0	10
1729	2	9	0	0	11
1732	0	6	0	0	6

<표 1-17>은 1708년 하급 향리로 등장했던 향리들이 1714년에는 어떤 직역으로 등장했는지 나타낸 것이다. 하급 향리들은 18세기 이후 人吏, 府吏, 혹은 貢生으로 직역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708년에서 1714년 사이에 하급 향리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호적의 직역 기재 방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18세기 중엽 이후 하리나 가리와 같은 직역이 사라지면서 인리나 부리나 공생과 같은 직역으로 기재한 것이다. 즉 호적에 등장하는 향리 직역에는 호장과 이방과 같은 최상층 향리부터 하리, 가리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이다. 호적에서 18세기 이후 노비와 같은 하층 신분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과 같이 하리나 가리와 같은 하층 직역도 서서히 사라진다. 1708년 하급 향리들은 1714년에는 인리로 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인리 역시 18세기 중반 이후 호적에서 자취를 감춘다.

<표 1-17> 하급 향리의 직역 변화

연도 / 성명	1708	1714
朴東汗	府下吏	府人吏
安次日	府下吏	府吏
崔萬迪	府下吏	府吏私奴
金汝晶	免賤府下吏	府吏
申以泰	府下吏	府律生
李時傑	府下吏	所吏
李必永	府下吏	府人吏
朴震煥	府下吏	府人吏
宋相福	府下吏	府人吏
金自淑	府下吏	老除府下吏私奴
徐必元	府下吏律生	府人吏
盧三平	律生	府貢生

조선후기 특정 가계에서 상위 향리 직임을 다수 배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와 비슷한 邑格인 安東과 尙州를 살펴보아도 특정 성씨의 상층직 배출 비중이 매우 높다. 안동에서는 안동 권, 안동 김씨 향리 가계에서 상위 직임을 대부분 배출했고,[40] 상주에서는 尙山 朴氏의 위상이 두드러졌다.[41] 대구에도 분명 상층 직임을 다수 배출한 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구에서도 향리 선생안과 같은 자료가 없지만, 상층 향리 가계를 제한적으로는 추적해 볼 수는 있다. 바로 안일호장과 같은 상층 향리만 사용하는 직역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호장이 70살이 되면 안일호장이라는 직첩을 주었다.[42] 조선시대에도 호장을 역임한 노년의 향리에게 안일호장이라는 증

40) 이훈상, 1990, 앞의 책, 105쪽.

41) 이훈상, 1986, 「'朝鮮後期 尙州의 戶長·吏房 명단과 蕭何의 圖像' 解題」, 『역사와 경계』. 이훈상 논문 말미에는 조선후기 상주의 이방과 호장의 명단과 재임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18세기까지 호장과 이방은 총 50명이었고 그중 76%에 해당하는 38명이 尙山 朴氏였다.

42) 『高麗史節要』, 목종 元年 3월, "三月, 以諸郡縣戶長, 年七十者, 爲安逸戶長,

서를 마련해 주었다.[43] 이처럼 안일호장은 호장이라는 최상위 직책을 수행한 자들만 칭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안일호장은 한 식년에 많으면 3명 등장하기도 하며,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 <표 1-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일호장은 18세기 23명, 19세기엔 46명이 등장하는데 달성 서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달성 서씨는 18세기에는 전체의 39%, 19세기에는 30%의 안일호장을 배출했다.

<표 1-18> 안일호장 성관

성관 / 시기	達城 徐	晉陽 河	水原 白	金海 金	河濱 李	기타	합계
18세기	9 (39%)	4 (17%)	0	0	3 (17%)	7 (30%)	23 (100%)
19세기	14 (30%)	8 (17%)	7 (15%)	4 (9%)	0	13 (28%)	46 (100%)

호적색을 통해서도 상층 직임을 수행한 향리의 성관을 알 수 있다. 달성 서씨는 안일호장뿐만 아니라 호적색도 가장 많이 배출했다. 호적색을 확인할 수 있는 식년은 총 19개 식년이고 거기에 26명이 등장한다. 달성 서씨는 호적색 26명 중 8명을 배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달성 서씨가 상위 직임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대구의 향리 성관임을 알 수 있다.

달성 서씨는 대구 관아에 근무한 여러 향리 성관 중 가장 힘이 있는 성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향리의 비중은 압도적이지 않다. 이런 현상은 최상위 향리직을 다수 배출한 몇몇 성씨도 하위직을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상황은 남원에서도 확인된다. 남원에는 다양한 직임의 향리 명단이 보존되어 있어 분석에 유리하다. 현존하는 남원의 향리 선생안은 『戶長吏房先生案』, 『戶

仍賜職田之半".

43) 『成宗實錄』 성종 2년 5월 25일, "諸邑鄕吏, 考其官陳省, 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牒成給."

房刑房先生案』, 『田制所先生案』, 『立馬廳先生案』이다.[44] 『戶長吏房先生案』은 최상위 직임인 호장과 이방의 이름과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호장은 1666년부터 1902년까지, 이방은 1663년부터 1902년까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戶房刑房先生案』에는 호방과 형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방은 1683년부터 1904년까지, 형방은 1674년부터 1904년까지의 명단이 나온다. 『田制所先生案』에는 書員廳에 근무한 都書員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서원청은 토지를 측량하고 전결세 수취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立馬廳先生案』에는 입마청 향리가 등장한다. 입마청은 조선 후기 물자를 운송하고 신임수령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刷馬價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民庫였다.[45] 이 민고를 운영하는 고마청은 식리사업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이들 선생안에 등장하는 성씨를 살펴보면 아래 <표 1-19>와 같다. 梁씨와 李씨는 이방과 호장의 95%를 배출하며 사실상 두 직임을 독점했다. 반면 『戶房刑房先生案』에는 양씨와 이씨의 비중이 낮아진다. 두 성씨는 『戶房刑房先生案』에도 5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지만 나머지 42%는 다른 성씨에서 배출되었다. 『田制所先生案』에는 27%, 『立馬廳先生案』에는 51% 만이 양씨와 이씨이다. 이처럼 최상위직인 이방과 호장을 독점한 성씨라 할지라도 모든 향리직을 독차지하지는 않았다.

---

4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선생안은 이훈상, 1990,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 運營과 그 特性 -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한국학논집』 17권에 실려 있다. 본 자료의 소개 역시 위 논문을 참조해 작성했다.

45) 김덕진, 2001,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雇馬庫 설립과 운영」, 『한국사 연구』 112; 문광균,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令 趙祗命의 시책」, 『한국사 연구』 184.

<표 1-19> 남원 향리 선생안의 성관 구성 (단위: 명)

성관 \ 선생안		『戶長吏房先生案』		『戶房刑房先生案』		『田制所先生案』		『立馬廳先生案』	
李		81	(50)	77	(30)	27	(17)	29	(23)
梁		72	(45)	71	(28)	16	(10)	23	(18)
鄭		8	(5)	11	(4)	4	(2)	13	(10)
金				30	(12)	31	(19)	9	(7)
朴				20	(8)	20	(12)	14	(11)
姜				17	(7)	19	(12)	4	(3)
기타	인원			32	(12)	44	(27)	36	(28)
	종류			10		11		13	
합계		161	(100)	258	(100)	161	(100)	128	(100)

이 점을 통해 대구의 달성 서씨가 대구의 유력 향리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숫자의 향리만 배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달성 서씨는 상층 직임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직책은 다른 성관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46]

요약하자면 대구 향리의 수는 조선후기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향리의 수가 증가했다고 특정 가계 구성원이 모든 향리 직임을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대구의 상층 향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계는 달성 서씨였다. 그들이 상급 직임을 많이 배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구성원이 향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는 향리 가계의 구성원 가운데 누가 향리 직임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6) 이훈상, 1990, 앞의 책 38쪽.

2장 향직 계승양상과 향리 가계의 분화

1. 직계자손 중심의 향직 계승

조선후기 향리는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게다가 특정 가계에서 모든 향리 직임을 독점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향리를 다수 배출한 가계라 할지라도 구성원 중 일부는 향리가 될 수는 없었다. 향리 가계에서 태어났더라도 향직을 수행하거나 그 예비군에 들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향리가 될 수 없었다. 즉 대구에서 유력 향리 가문인 달성 서씨 후손이라 할지라도 일부만 향리가 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누가 향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향리가 되지 못한 구성원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후기 지방 관아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향리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그 시작은 바로 중앙 정부 재정의 중앙집권화 시도였다.[1] 조선후기 국가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던 재정권을 제한하였고 재원의 파악, 징수, 납부까지의 과정이 모두 지방 관아의 몫으로 돌아갔다. 자연스럽게 지방 관아에서는 부세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향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지방 관아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아래 『牧民心書』와 『壬戌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을에 세거하며 실무에 능한 향리의 중요성은 커져만 갔다.

> 내가 오랫동안 읍내에 있으면서 縣令의 승진과 파직 당하는 일이 오로지 아전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았다. 巡營의 邸吏가 縣吏와 상응하여 헛된 칭찬과 억울한 무고를 하여 저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

1) 손병규, 2003,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25.

한다. 그 이유는 감사가 이속들을 풀어서 염탐하는 동시에 그들을 심복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 잘못이 감사에게 있으니 수령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2]

영리는 안동의 권생원과 김생원이다. 집에 있을 때는 갓을 쓰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책상에서 독서를 한다. 입번을 하면 담홍색의 直領을 입는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은 자는 감히 가죽 신을 신지 못한다. 六房에 모인 많은 향리들은 감영의 일을 주관한다.[3]

위의 두 자료를 통해 감영 소속 향리의 업무와 위세를 엿볼 수 있다. 향리 직임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하다는 영리들은 지방 수령의 인사에까지 관여했다. 두 번째 자료는 안동 권씨, 안동 김씨 향리가 근무한 경상감영의 이야기이다. 경상감영에 근무한 영리들은 감영의 일을 주관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수령 역시 향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보면 어리석은 수령은 반드시 首吏를 심복으로 알고 밤중에 몰래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아전이 수령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田稅를 농간하고 倉穀을 마음대로 다루어서 그 남은 것을 차지하고, 獄訟을 흥정하여 그 뇌물을 취하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결과로는 수령이 1을 먹으면 아전은 1백을 훔쳐 먹는다.[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외지에서 부임한 수령이 복잡한 행정을 향리의 도움 없이 수행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해당 군현 행정에 익숙한 首吏를 불러 여러 가지를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 관의

---

2) 『牧民心書』, 吏典, "余久在縣城之中, 見縣令黜陟, 專在吏手, 巡營邸吏, 與吏相應, 虛譽寃誣, 惟意所欲, 此由監司縱吏廉問, 信爲腹心故也, 曲在監司, 非牧之所能救也."
3) 『壬戌錄』, 「鍾山集抄」, "營吏, 卽安東權生員·金生員也, 居家則方冠闊袖, 對案讀書, 入番則始着淡紅直領, 而年少座卑者, 不敢着皮鞋, 六房濟濟, 主張一營之事."
4) 『牧民心書』, 「吏典」, "每見昏官, 必以首吏, 認爲腹心, 中夜密召, 以議庶務, 吏之所以媚悅其牧者, 不過田稅作奸, 倉糧翻弄, 以取其贏羨, 賣訟粥獄, 以吮其賄賂而已, 牧食其一, 吏竊其百."

공권력을 백성에게 행사하는 주체도 향리였다.

> 稅米를 징수하는 끝에 가서는 아전과 軍校를 풀어서 민가를 수색하여 긁어내는데 이것을 檢督이라 한다. 검독이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호랑이와 같은 것이다.[5]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향리는 백성들의 생계에 직결된 부세 수취의 담당자였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으러 오는 향리는 '승냥이'나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존재였다. 조선후기 향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들이 공권력을 대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각 읍에서 근무하는 향리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수가 무한한 것이 아니었다. 향직자 수가 정해져 있어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 요즈음은 아전으로 들어가려는 자가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경쟁하여 마치 벼슬을 얻는 것처럼 한다. 작은 縣의 吏屬이 혹 1백 명에 가까워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에 그들(향리들) 스스로 법을 만들어 부자가 함께 입사한다거나 형제 3명이 함께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6]

이처럼 향리 가계에 태어나 향리가 되고 싶었음에도 향직에서 배제되는 자들이 생겨났다. 향리들은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직임을 배정하려 했다. 이에 향리들은 부자가 함께 입사한다거나 형제 3명이 함께 입사하지 못한다는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들어 특정 가계의 독점을 막고자 했다. 안동의 향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안동 향리가 작성한 아래 『陞付吏案』[7]에서 위의 조약과 관련

---

5) 『牧民心書』, 「戶典」, "徵稅之末, 縱吏與校, 搜括民家, 名之曰檢督, 檢督者, 下民之豺虎也."

6) 『牧民心書』, 「吏典」, "今也鄕吏入仕者, 爭門碎頭,如赴科宦, 小縣之吏, 或近百人, 不可相容, 於時, 私自說法, 或父子不許同仕, 或兄弟不許三人."

7) 『陞付吏案』 「節目」 (奎 古 920.051-Se81a). 『陞付吏案』의 작성자, 작성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本府의 향리들이 權·金 兩太師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本府의 향리는 金·權 兩 太師의 후손으로 가업을 세습하였습니다. 그 수가 많아 몇 해 전 정원을 정하였고, 營門에서는 130명으로 그 수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吏廳에서 함께 의논하여 부자형제를 구별하여 한 결같이 나이를 따라 元案에 올리고 그 나머지 부자 형제와 관련이 없는 자와 (원안에서)떨어진 자를 구별하여 함께 陞付案에 올렸습니다.[8]

안동에서는 향리의 인원이 정해지면서 공정한 방식의 향리 선발을 위해 元案과 陞付案을 만들었다. 원안은 향리 직임을 실제 수행하는 자들의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이 병이나 개인 사유로 이탈될 경우 陞付案의 인원으로 보충했다. 부자 형제가 향리직을 역임하는지 여부를 살펴 元案에 기재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특정 가계에서 향리직을 독점하는 현상은 생길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군현에서 소수의 가계가 상층 직임 대부분을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9] 따라서 『목민심서』나 『陞付吏案』의 규정은 많은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향리의 선발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직 향리가 후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전라도에서 영리를 역임한 李德龜는 아래 『石泉遺稿』에서 영리의 선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두었다.

> 감영 영리는 으레 향리의 자제 중에서 먼저 門閥을 보고 다음으로는 文筆을 보아서 선임자가 추천을 한다.[10]

는 점, 승부안 명단에 김·권씨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통해 조선후기 안동 향리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陞付吏案』, 「節目」, (奎 古 920.051-Se81a), "本府鄕吏以金權兩太師後裔, 世襲箕裘, 闕數自多而年前定額時, 自營門以一白三十定數故, 吏廳公議, 區別父子, 一從年齒, 付之元案是遣, 其餘無拘於父子兄弟者及區別見落之類, 并置之陞付案".

9) 이훈상, 1990,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0) 김현영, 2006, 「조선후기 한 營吏의 일생 -李德龜(1701~1774)의 石泉遺稿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82호, 166쪽 "監營營吏, 例以鄕吏子枝, 先擇門地, 次取文筆, 先生抄薦."

감영의 영리와 府 향리의 선발 과정이 비슷했을 것이다. 즉 향리의 선발에 선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향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만약 향직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직계 자손을 후임자로 추천할 것이다. 반면 향직을 천하게 여기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면 후임자로 부자 형제의 相避 규약을 내세우며 자신의 후손을 향리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향직을 수행 하지 않고 사족화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향리 후손 중에서도 향직을 맡지 않고 유업에 종사하고 과거를 준비하는 자들은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존재했다. 조선전기 향촌에서는 吏族의 후손이 일부는 유학을 공부하며 과거 준비를 했던 士族으로, 다른 일부는 향직을 담당한 吏族으로 분화되었다.[11]

조선후기 향리는 자신의 후손을 향리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조선후기 향직이 대부분 직계자손에게 계승되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 서씨 사례가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대구부 상층 향리 직임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계는 달성 서씨 판서공파이다. 판서공파 구성원 중 호적에 한번이라도 향리 직임을 가진 사람은 총 116명이다. 116명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97명의 父, 祖父 직역이 향리이다.

안동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안동은 향리의 위세가 강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안동의 安東 權氏, 安東 金氏 두 성씨는 경상감영의 상층 향리직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1566년에서 1894까지의 영리 명단을 기록해둔 『嶺營椽房先生案』에는 총 489명의 영리가 기록되어 있다. 안동권씨 棣達派 澂 후손과 안동김씨 戶長公處商派 汝豪 후손은 각각 51명과 40명의 영리를 배출했다. 전체 영리의 19%에 해당하는 영리가 두 가계 출신이었다.[12] 91명의 영리 가운데 父나 祖父가 향리가 아닌 자는 6명밖에 되지 않는다. 6명도 3명은 曾祖父가, 2명은 高祖父가 영리 출신이다.

이처럼 향리 가계의 구성원은 향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

---

11) 이수건, 1979,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2) 이훈상, 2006, 「조선후기 경상도 監營의 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안동 향리사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 『大東文化硏究』 55.

러나 모든 구성원이 향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직에서 배제되는 자도 있었다. 향리가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향직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향리는 향직에서 배제되는 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기로 생각했던 것 같다. 직계 자손에게 향직을 우선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한 번 직임에서 밀려난 자는 앞으로도 향리가 될 가능성이 낮았다. 향직을 수행함으로써 면제되었던 각종 역도 수행해야 했다. 이들의 절박함을 아래 『陞付吏案』에서 엿볼 수 있다.

> 本府의 陞付案에 속한 향리 金光秀 등 20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부자형제 相避의 혐의가 없음에도 원통하게 元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중략) 權克祥 등 40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여러 해 역을 졌으나 하루아침에 (元案에서) 탈락하여 비단 이 한 몸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자손의 앞길도 영원히 막히게 되어 議送을 올립니다" (중략) 정원을 정한 후에 말하기를, "수년 동안 元額에 궐액이 전혀 없거나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陞付案에 기록되는 자는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陞付案에 오른 자들은 그들의 일생동안 元案에 오르지는 못하고 모두 늙어 陞付案에서 제외되는 걱정이 있을 뿐 아니라..." (중략) 바라건대 전처럼 시행하여 향리의 이름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13]

陞付案에 속한 향리들은 원안에 오를 기회가 사라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앞길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안동의 향리 직임이 19세기 말까지 직계자손 중심으로 계승되었음을 생각하면 이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陞付案에 속한 향리들과 그 후손은 元案에 오르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자연스레 향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경주의 퇴임 호장들은

---

13) 『陞付吏案』, 「節目」, (奎 古 920.051-Se81a), "本府陞付吏金光秀等二十餘人, 以其矣等無拘於父子兄弟相避之嫌, 而寃漏元案(중략) 權克祥等四十餘人, 以其矣等, 多年應役一朝見落, 非但一身廢棄, 永塞子孫前程是如(중략) 第以定額後言之, 數年之間, 元額有闕絶無而僅有, 陞案添錄月加而歲增, 所謂陞付案見錄者渠之一生未付元案, 而皆將有老除於陞案中之慮哀不喩(중략) 惟願其依前施行, 使不失鄕吏之名".

安逸房을 만들어 향리의 인사와 처벌에 관여했다. 그들이 남긴 『安逸房考往錄』을 보면 일부 향리 가계가 향직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 公兄의 직책은 위로는 수령의 명령을 받들고 아래로는 제반 관속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體貌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전 호장 崔鳳齡은 신정행차에 즈음하여 수령을 맞이하는 행렬이 比安의 주막에 이르렀을 때 큰 길에서 신임 이방에게 갑자기 더러운 말을 하고 고함을 질러서 쳐다보는 사람이 놀라고 부끄럽게 느꼈다. 또한 수령이 교체되던 때에도 공경스럽지 못한 더러운 말로 대낮에 公堂 위에서 타인을 욕보였으니 이것이 어찌 公兄의 체통이란 말인가. 더욱이 하속 중에서 벌을 받는 자가 있을 때면 庭下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廳 위로 끌어올려 직접 매를 때리는 등 거리낌이 없었다. 더욱이 그가 행한 일 중 더욱 해괴하고 패악스러운 것은 考往錄 중에 자기 집안이 벌 받은 명목을 기재한 책장을 몰래 찢어서 없애버린 일이니 이는 매우 놀랍고 해괴하다. 이 일은 마땅히 상세하게 조사한 다음 그를 吏案에서 제외시켜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다시 정하는 일은 후에 관에 올려서 헤아려 볼 것이며, 우선 그가 역임했던 각 처를 벌에 붙이기로하기에 이에 따라 의논을 완결 짓기로 한다.[14]

崔鳳齡은 경주의 호장을 세습한 慶州 崔氏 가계원이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령의 父 世甲은 안일호장을 역임했고 4형제 중 次男인 伯齡을 제외한 3명이 호장을 역임한 명문 향리 가계였다. 최봉령은 1757년 上詔文을 역임한 뒤 1760년에는 호장에 임명되었다.[15] 호장에

---

1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 「安逸房考往錄」, "公兄爲任上以爲奉承管府命令, 下以爲彈壓諸班官屬, 則其所體貌不輕而重矣, 前戶長崔鳳鈴頃於新延行次, 延候之行, 到比安酒幕, 對時任上詔, 猝以醜談呼唱於大道之上, 觀瞻駭愧是妳, 交承之間, 乃以不恭之醜談, 侵辱於白日公堂上, 是豈公兄之體是妳, 至於下屬之有罪者, 不治於庭下拿入廳上, 自杖擊打, 略無忌憚, 究厥所爲尤極駭悖是遣, 考往錄中自家之罰名所書册張, 暗自拔去事極萬萬驚駭, 此則, 從當詳査後削案, 次更定後會呈官處置計料爲妳, 經任各處爲先付罰所去乎, 依此完議者."(英祖45年(1769) 4월 29일)

15) 경주시, 2002, 『國譯 慶州先生案』, 경주문화원. 이 책에는 『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府尹先生案』, 『道先生案』이 실려있다.

임명된 9년 뒤인 1769년 안일방에서 최봉령을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정확한 내막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봉령은 호장의 체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吏案에서 제외된다. 그의 후손 역시 吏案에서 제외된 듯하다. 그의 형과 조카 宗崙 역시 1769년 이후 아무런 직임을 맡지 못했다. 이렇게 한 명문 향리 가계가 향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후 최봉령 후손은 장남인 鶴齡의 두 아들을 제외하면 경주 최씨 족보에서도 사라진다.[16] 대가 끊어졌을 수도, 가문이 몰락해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자신들의 축출에 참여했던 경주 최씨들과 인연을 끊었을 수도 있다. 최봉령의 처벌에는 총 7명의 前戶長이 참여하는데 그 중 최씨가 4명이다. 최봉령 처벌에 참여한 자들은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과 手決만 적혀있어 최봉령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경주의 호장을 배출한 최씨는 경주 최씨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최봉령과 친척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향직을 두고 가계 내부 구성원들과도 경쟁했다는 것은 향리들이 향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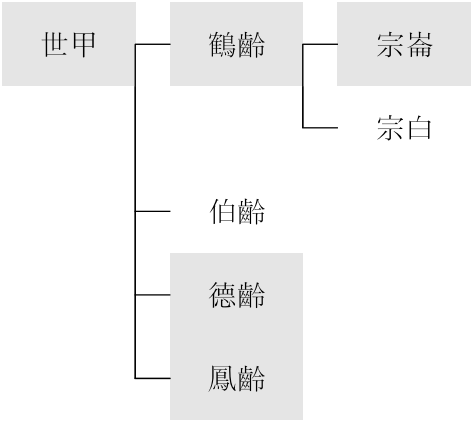

<그림 2-1> 최봉령 가계도

*비고: 음영이 처리된 곳은 향리를 역임한 자이다.

16) 『慶州崔氏大同譜』, 1982, 慶州崔氏大同譜重刊委員會.

향리라는 특권을 두고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전라 감영에도 등장한다. 이덕구는 18세기 전라 감영의 영리를 역임했다. 그가 남긴 『石泉遺稿』에는 영리의 특권을 상세히 서술해 두었다.

> 만약 부름을 받고 왕래하거나 일이 있어 드나들 때는 각 역에서 역마를 내고 각 읍에서 支供을 하였다. 入番을 하면 급료를 정해주고 여종이 식사를 供饋하며 房子를 한 명 정해 보내서 심부름을 시킨다. 또한 매달 의복, 필묵, 종이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다. 우대를 하는 것이 관직과 다를 바가 없다. 향리 중에서 문벌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라면 어느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1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리의 권한은 매우 컸고 많은 향리들이 선망하는 직책이었다. 그런데 이덕구는 井邑의 향리 가문인 楚山 李氏 출신이었다. 초산 이씨는 전라 감영의 영리를 대대로 배출한 집안은 아니었다. 그는 영리가 된 이후 殷好得, 金致西와 같은 영리들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았다. 대대로 영리를 한 본인들 집안과 이덕구 집안의 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지어 다른 영리들은 이덕구를 영리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방이라 부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덕구 역시 이들을 공격하며 맞대응했다. 이덕구는 27년간 영리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영리직을 세습하지 않던 가문이 영리에 선발되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런 경쟁은 비단 조선후기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전기에도 호장과 같은 상위 직임은 꾸준히 특정 가계에서 수행했다. 조선전기 호장의 계승을 경주의 『戶長先生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8] 『戶長先生案』에는 1281년 이후 호장에 임명된 자의 이름, 四祖의 직임과 이름, 임명 날짜를 기재해 두었다. 임진왜란 전까지 호장을 맡은 사람

---

17) 김현영, 2006, 앞의 책, "若其承招往來 有事出沒 責騎於各驛 責供於各邑 入番則給料饌定 食婢供饋 房子一名定送 令其水火使喚 且朔布衣資筆墨紙地磨鍊有例 似此優待 无異官職 凡鄕吏之地淸有文才者 孰不欲仰首投袂" 167쪽에서 재인용. 이하 「石泉遺稿」에 대한 내용은 김현영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18) 경주시, 2002, 『國譯 慶州先生案』, 경주문화원.

은 총 101명이다. 101명의 호장은 총 6개의 성씨로 구성되어 있다. 金氏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명으로 가장 많고, 李氏와 崔氏가 각각 19명이 등장한다. 그 외 鄭, 朴, 孫씨가 호장을 배출했다. 『戶長先生案』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호장을 세습한 가계 출신이다. 조선전기 경주의 호장 101명 가운데 父나 祖父가 호장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의 이름은 鄭自良으로 父는 老職修義校尉, 祖父는 興威衛精勇中郎將, 曾祖父는 戶長正朝, 외조부는 散員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조부대에 호장을 역임했으나 父, 祖父 대에는 武官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외조부 역시 무관으로 등장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鄭自良이 호장에 임명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戶長先生案』에는 호장의 이름과 더불어 임명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鄭自良에게는 날짜와 더불어 "正妻를 돌보지 않고 賤妾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印信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19] 단편적인 기록만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인물들에게는 전혀 달려있지 않은 내용이 유독 鄭自良에게만 달려있다. 또 그의 父, 祖父가 호장을 역임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임을 생각하면 최소한 호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정자량은 호장의 상징과도 같은 印信도 받지 못한 채 공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장과 같은 상위 직임뿐만 아니라 특정 향리 직임은 요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16세기 李文楗이 작성한 『默齋日記』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李文楗은 承文院博士를 거쳐 正言·吏曹佐郎을 역임한 뒤 1545년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星州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23년을 보낸 뒤 생을 마감한다. 이문건은 비록 유배인이었지만 중앙 관직을 역임한 이력으로 성주의 지방관 및 유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성주의 목사·판관과 다양한 청탁을 주고받았으며, 향리 차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문건은 1545년 9월 28일에 유배지인 星州에 도착했고 그해 10월 6일부터는 官奴 傑厚音의 집에 머물렀다.[20] 관노의 집이 누추했는지 다음해

19) 『戶長先生案』, "辛巳五月十一日差, 十九日開印行公, 正妻不顧, 賤妾對坐, 迎印不得."

4월 2일 衙前 裵純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21] 배순은 衙前으로 등장하는데 하급 향리로 추정된다. 이문건은 배순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인 1545년 11월에 戶長이 술을 대접한 下人들 중 한명이 裵純의 아들 裵仁孫이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와 같이 이문건이 배순의 집에 들어온 이후 수령에게 배순을 향리로 임명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 판관에게 부탁해서 裵純을 관아 향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 (판관은) 따르지 않았다.[22]

> (판관에게) 내가 말하기를, "주인 裵純에게 임무를 주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자, 말한 대로 해 보겠다고 했다. 밤에 돌아갔다.[23]

> 裵純을 임명하는 일로, 판관에게 임시로 司倉吏로 차정한다는 帖을 만들어 줄 것을 청했다.[24]

이문건은 배순의 집에 거처하며 그의 가족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문건은 거처를 옮긴 후 배순의 가족을 위해 다양한 일을 판관에게 청탁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의 인용문과 같이 배순을 향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 순의 아들 仁孫이 逃亡色 書員을 청했다. 목사에게 편지로 알리니 마땅히 정하겠다고 했다.[25]

---

20) 『默齋日記』, 1545년 9월 28일, "早食于扶桑驛, 朝發之, 始入星州地." 1545년 10월 6일, "留寓傑厚音家."
21) 『默齋日記』, 1545년 4월 2일, "移住南亭子下裵純家"
22) 『默齋日記』, 1546년 5월 10일 "囑二衙以裵純爲官廳吏. 不從."
23) 『默齋日記』, 1546년 12월 1일 "吾言'主人裵純須付任, 使生光', 則依圖云云. 夜乃去."
24) 『默齋日記』, 1546년 12월 6일, "以裵純差任事, 請於二衙權差司倉吏作帖與之."
25) 『默齋日記』, 1546년 6월 23일, "純子仁孫求請逃亡色書員. 簡通牧使前, 則當定云云."

목사가 초청하기에 관아로 들어가 바둑을 두었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목사가 말하기를, "仁孫이 하고자 하는 逃亡色은 致富하는 직임입니다" 라고 했다.[26]

仁孫이 選上色이 되고자 하기에 판관에게 말했더니 힘써 보겠다 한다.[27]

목사에게 종이를 거두는 것이 과다하다고 말하고, 또 仁孫을 頭書員으로 삼도록 청하니 답하기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을 까닭 없이 섣불리 내보낼 수 없고, 내보내자니 구차합니다" 라고 했다.[28]

목사가 仁孫을 頭書員으로 차정했다고 한다.[29]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배순의 아들 배인손은 이문건에게 적극적으로 특정직임을 청탁하기까지 했다. 배인손은 앞서 살폈듯이 下人으로 불리던 官屬이었다. 이문건이 본인의 집으로 이사 온 후 逃亡色 書員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다. 도망색 서원은 도망 노비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 향리로 추정된다. 이후 배인손은 選上色과 頭書員이 되고자 했다. 選上色은 妓女나 奴婢를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는 일을 담당하던 향리였다. 이 역시 노비를 관장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권이 컸을 가능성이 크다. 頭書員은 書員의 우두머리로 추정된다. 이문건이 목사에게 배인손을 頭書員으로 차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6일 뒤 두서원으로 차정했다고 알려왔다. 『默齋日記』가 작성된 16세기는 노비가 전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시기이다.[30] 노비제의 전성기에 도망 노비와 관련된 일을 하던 향리들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래 기

26) 『默齋日記』, 1546년 6월 24일, "牧使邀之, 入州着碁, 暮乃還.牧使曰仁孫所爲逃亡色, 致富之任云云."
27) 『默齋日記』, 1553년 4월 30일, "仁孫求差選上色云. 告二道則當圖云云."
28) 『默齋日記』, 1563년 7월 11일, "令道前喩徵干紙多濫事, 又請仁孫爲爲頭書員事, 則答曰"時任者無故.不可徑去, 去之則苟且."云云."
29) 『默齋日記』, 1563년 7월 17일, "牧伯差仁孫爲爲頭書員云."
30)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143쪽.

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인손도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 張繼顔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가 사사로이 쌓아놓은 곡식을 살펴서 보고하라고 하기에, 지금 仁孫의 집을 살피러 갑니다” 라고 했다. 인손이 따라와서 白活하니, 張이 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쌓아둔 것이라 하면 어찌 감히 세겠는가” 라고 하여 곧 그만두고 갔다.[31]

張繼顔이란 사람이 목사의 명으로 곡식을 사사로이 축적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인손의 반대로 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그만둔다. 이문건이 일방적으로 배순과 배인손에게 배푸는 것은 아니었다. 배인손은 관의 소식이나 하천의 허문 다리를 땔나무로 얻으라는 정보를 전해주며 상부상조했다.[32] 물론 모든 향리직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

> 유향소에 집주인 裵純을 上京吏로 배정하지 말 것을 청했는데, 경재소에서 옮기는 것이지 유향소에서 바꾸어줄 수 없는 것이라 답했다 한다.[33]

> 仁孫이 와서 書員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34]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배순은 上京吏에서 제외해달라는 부탁을, 배인손은 원했던 서원에서 다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배순이 중요한 직임인 서원을 그만두려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처럼 향리직은 직임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천직과 요직으로 갈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향리 직임을 천하게 여겼던 것은 양반과 같은 상층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선전기에는 지방 양반도 관직 진출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천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

---

31) 『默齋日記』, 1554년 10월 12일, “張繼顔來見, 言牧官令監報私儲穀, 故今看仁孫家云云. 仁孫隨來白活. 張答曰如汝所儲, 何敢計之云云, 乃罷去.”
32) 『默齋日記』, 1551년 6월 5일, 1552년 2월 23일.
33) 『默齋日記』, 1547년 1월 7일, “留鄕所前請家主裵純勿定上京事, 則答以京在所所移也, 非所之所能改云云.”
34) 『默齋日記』, 1551년 8월 17일, “仁孫來求書員減下.”

러나 조선전기에도 호장과 같은 상위 직임은 여전히 요직으로 인식되었으며, 호장이 아니더라도 직종에 따라서 상당한 부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역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향리들은 자신의 후손이 향리가 되는 것이 지배층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자신의 직계자손에게 향직을 계승했다. 향리가 되지 못하는 향리 후손은 더이상 향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 居昌의 유력 향리 성씨는 愼氏인데, 향리를 배출하지 못한 가계에서는 족보 편찬 단계에서 單子도 내지 못하며 가계 기록도 매우 소략해졌다.[35] 향직에서 배제된 가계는 평범한 농민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향리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향직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향리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향리 가계 구성원 중 몇 명이 직임을 맡을 수 있었으며, 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이훈상, 앞의 책, 1990, 28~31쪽.

2. 향리 가계의 분화양상

달성 서씨는 대구 관아의 주요 직임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성관이다. 달성 서씨 향리 가계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判書公派 임을 알 수 있다. 판서공파는 달성 서씨 7세손 涉의 후손이다. 서섭은 세종 연간 吏曹判書를 지냈기에 그의 후손을 판서공파라 불렀다. 1825년 호적에는 대구부에서 근무한 향리 관련 직역자가 140명 등장하고 그 가운데 달성 서씨는 22명이다. 이 22명 중 20명이 달성서씨 판서공파이다. 이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달성 서씨 14세손 興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구 관아에 근무했던 서씨들은 대부분 흥문의 후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흥문은 1572년에 태어나서 1652년에 생을 마감했다. 현존하는 최초의 대구 호적이 1681년이기 때문에 호적의 본문에서는 그를 찾을 수 없다. 대신 흥문의 손자들이 호적에 등장하기 때문에 四祖 직역을 통해 그를 추적할 수 있다. 흥문은 嘉善大夫이고, 흥문의 父 從善은 安逸戶長으로 나타난다. 달성 서씨 족보에 따르면 흥문은 丙子胡亂 이후 관직을 버리고 梧里에 물러나 숨어 살았다고 한다.[36] 여기서 관직은 아마도 향리 직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아버지 從善이 안일호장이었고, 그의 아들도 안일호장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흥문은 대구의 명문 향리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그 역시 향직을 수행했던 것 같다. 흥문의 후손은 대를 이어 상급 향직을 수행했다.

달성 서씨 족보를 통해 흥문 후손의 가계도를 그린 후 대구 호적에서 그들을 확인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다르더라도 四祖, 生年, 妻의 성관이 동일하다면 동일인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흥문 후손 423명의 정보를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약 200년에 걸친 흥문 후손의 직역 및 거주지 변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호적의 인물들은 식년별로 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매우 어렵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분류하였다. 첫째 鄕吏, 府吏, 記官, 貢生 등의 향리 직역을 한번이라도 사

36) 『達城徐氏世譜』, 1998. “仁祖年變後棄官退隱梧里”

용하는 경우 향리로 분류해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碩行은 다양한 직역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석행은 공생과 안일호장과 같은 향리 직역으로 등장하다 1762, 1765년에는 承事郎으로 등장한다. 승사랑이라는 향리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직역이 마지막 두 식년에 등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를 향리로 분류하였다. 둘째 호적에 등장하는 마지막 거주지를 최종 거주지로 파악했다. 예를 들어 1717년에는 서상면 호적에, 다음 식년인 1720년에는 동중면에 등장하고 더이상 호적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의 거주지를 동중면으로 분류했다.

<표 2-1> 碩行의 직역 변화

식년	직역	식년	직역
1732	府貢生	1756	安逸戶長
1735	鄕吏	1759	安逸戶長
1738	府貢生	1762	承仕郎
1747	安逸戶長	1765	承仕郎

우선 홍문 후손의 423명을 향리가 된 자와 향리가 되지 못한 자로 구분해 보았다. 423명 가운데 한 식년이라도 향리 직역으로 등장하는 자는 117명이다. 호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홍문 후손이 총 423명임을 고려하면 가계원의 27% 정도만이 향리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단성의 명문 향리가인 합천 이씨 이후남 후손도 구성원 전체의 34%만이 향직을 수행했다.[37] 아래 <그림 2-2>를 보면 홍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아들 7명의 이름은 得敏, 以敏, 俊敏, 允敏, 宗敏, 仁敏, 起敏이다. 이들 중 장남, 차남, 사남, 막내의 후손이 꾸준히 향리가 될 수 있었다. 반면 允敏, 宗敏, 仁敏의 후손에게서는 거의 향리가 배출되지 않았다.

37)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115쪽.

興門 ┬─ 得敏　후손 49명 중 27명 향리 (55%)
　　├─ 以敏　후손 66명 중 31명 향리 (47%)
　　├─ 允敏　후손 없음
　　├─ 俊敏　후손 227명 중 36명 향리 (16%)
　　├─ 宗敏　후손 28명 중 2명 향리 (7%)
　　├─ 仁敏　후손 27명 중 0명 향리 (0%)
　　└─ 起敏　후손 25명 중 21명 향리 (84%)

<그림 2-2> 홍민 후손의 향리 분포

대구 관아에서 최상위 직임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달성 서씨 향리 가계에서도 30% 미만의 인원만이 향리가 될 수 있었다. 즉 향리 가계 구성원 가운데 70% 이상이 향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거주지로 구분을 하면 크게 읍치에 거주한 자와 외촌에 정착한 자로 나눌 수 있다. 읍치에 거주하는 자들은 관을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읍치에 머무르는 자들은 전체 판서공파 구성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표 2-2>에 따르면 읍치에 머문 자들 가운데 향리는 절반인 51%였다.(1번)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도 상당수 읍치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직역은 幼學이다. 2, 4번처럼 유학을 칭하는 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인상적이다. 유학으로만 등장하는 인물이 46명, 유학과 무임 직역으로 번갈아 기재되는 자도 4명 등장한다. 읍치에서 유학으로 등장한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존해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들도 읍치에 거주했기 때문에 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진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 읍치 거주자의 직역 구성

순번 \ 거주자	직역	인원	(%)
1	鄕吏	117	(51)
2	幼學	46	(20)
3	武任	39	(17)
4	幼學, 武任	4	(2)
5	기타	23	(10)
합계		229	(100)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 중 상당수는 武任 관련 직역으로 등장한다(3,4번). 이들은 軍官, 業武, 閑良과 같이 武에 관련된 직임으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閑良, 業武, 武學과 같이 실질적인 직임이나 직책이 없는 직역은 군관이나 장교로 차정되는 대상이었다.[38] 조선후기 군관 역시 관의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군관 역시 말단의 직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아래 『牧民心書』에서 조선후기 지방에서 군관의 역할과 위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軍官이 혹 差使로 나가게 되면 좋은 벼슬이나 얻은 듯이 신이 나서 민가를 위협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禮錢을 거두어들인다. 대체로 차사가 이르는 곳에는 술을 거르고 국수를 삶고 닭을 죽이고 돼지를 잡는다. (중략) 매번 수령 중에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무릇 세금을 징수하고 환곡을 거둠에 명령을 발포하는 처음부터 차사를 내보내는데 그것을 檢督이라 부른다. 그들은 송아지를 끌어내거나 솥을 떼 오거나 늙은이를 묶어 오거나 손질하거나 하므로, 무릇 검독이 지나가는 곳에는 문짝이 부서지고 고을이 쑥대밭이 된다. 차라리 세곡을 징수하는 실적이 부진해 끝내 下考를 받을지언정, 호랑이를 풀어 놓아 사람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악을 쌓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39]

38) 이동규, 2013, 「조선후기 한량직역자 연구-조선후기 직역연구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26쪽.

39) 『牧民心書』 吏典六條 馭衆, "軍官或爲差使, 如得好官, 打家劫舍, 索賂徵例, 凡將差所到, 瀝酒壓麪, 殺鷄擊豕, 牧宜知此弊, 除非追捕逆賦, 不宜輕出將差."

기사년(1809, 순조9)·갑술년(1814, 순조14) 흉년에, 수령이 아전과 軍校를 보내어 절의 재물을 수색하여 公用에 쓸 쌀을 빼앗고 佛供에 쓸 양식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종(鐘), 징, 솥이나 가마솥[釜] 등을 가져다 파는데 이르렀다. 중들이 원통함을 호소함에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40]

『牧民心書』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후기 군관은 관의 실무자 역할을 했던 것 같다. 특히 세금 징수와 같은 주요 업무를 향리와 함께 수행했다. 조선후기 지방 관아의 업무가 비대해지고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지방의 군사 기관들은 군사적 기능이 약해졌다.[41] 자연스레 지방 관아의 행정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일부가 향리와 겹치기도 했던 것 같다. 그 결과 향리도 군관청의 상급 장교를 역임했다. 南原에서는 이방과 호장을 역임한 상층 향리들이 군관청 行首를 역임한 사례도 보인다. 경상남도 昆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곤양의 상급 향리를 역임한 가문은 慶州 崔氏이다. <표 2-3>은 경주 최씨 향리 가문에게 발급된 差帖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42] 崔光臣은 일생동안 상급 향리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최상위 향리 직임으로 알려진 戶長, 吏房 뿐만 아니라 신임 수령을 맞이하는 新迎 호장·이방을 두루 지냈다. 그러다 그의 나이 61세가 되는 1827년에 道軍官 직책을 수행한다. 道軍官은 아마도 군관을 통솔하는 직임이 아닐까 추정된다. 崔允衡 역시 신영이방, 신영호장을 역임한 뒤 作隊哨官으로, 최태호 역시 行首軍官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최상위 향리 직임을 역임한 자들 중 일부는 武廳의 상위 직임도 수행했다. 대구의 향리 가계에서 많은 수의 군관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남원과 곤양처럼 대구의 향리 중 일부가 군관의 차정에 개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읍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에

---

40) 『목민심서』 賑荒六條 勸分, "己巳·甲戌之年, 守令發遣吏·校搜括寺財, 奪其公用之米, 損其佛供之糧, 甚至賣其鍾鉦, 鬻其錡釜. 衆髡號冤, 慘不忍聞. 斯又民牧之所宜戒也."

41) 배기헌, 2000, 「朝鮮後期 將廳의 成立과 性格」, 『한국사연구』 9집.

42) 이훈상, 유훈, 2009, 『조선후기 곤양의 경주 최씨 향리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16쪽.

의지해서 살아갔다.

<표 2-3> 곤양 경주 최씨에게 발급된 차첩과 그 내용

이름	발급연대	직임	이름	발급연대	직임
崔光臣 (1767~1841)	1805	吏房	崔允衡 (1799~1852)	1840	新迎吏房
	1810	戶長		1842	新迎戶長
	1811	新迎戶長		1850	作隊哨官
	1812	攝戶長	崔泰浩 (1841~1922)	1871	吏房
	1813	正朝戶長		1886	新迎吏房
	1814	戶長		1886	戶長
	1815	吏房		1886	新迎吏房
	1815	新迎吏房		1887	新迎戶長
	1815	安逸戶長		1888	攝戶長
	1818	新迎戶長		1888	行首軍官
	1824	吏房			
	1824	新迎戶長			
	1825	新迎戶長			
	1825	補民倉都監			
	1827	道軍官			

<표 2-2>에서 보았듯이 홍문 후손 가운데 기타 직역 자들도 23명 등장한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지위가 낮아졌다. 命佐는 英祖 3년(1727) 增廣試 武科 丙科 47위로 급제하여 직역도 '及第'로 나온다. 명좌를 제외하면 대부분 府扇工, 府冊工, 豆錫匠과 같은 匠人 혹은 府奴, 營吏廳文書直私奴와 같이 노비와 같은 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홍문 후손 423명 가운데 46% 가량인 195명은 외촌에서 발견된다. 읍치를 떠나 외촌에 거주하는 자들의 직역은 대체로 유학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읍치를 떠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쟁에서 밀려 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읍치를 떠나는 것은 향리 후손에게는 상당한 도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직을 수행하며 관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착 비용이 들었음은 물론이고 향직을 수행하며 면제되었던 군역도 해결해야만 했다. 친척 중 일부는 여전히 향직을 수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멀어져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을 것이다.

외촌으로 이거한 자들 중 상당수는 특정 동리에 세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 호적에서 10명 이상의 가계원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례를 네 건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가계의 정보는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俊敏의 5대손 昌老, 昌源, 昌壽 삼 형제는 읍치를 떠나 租巖面 一里에 정착한다. 삼 형제의 후손은 총 22명 호적에 등장하는데 그중 17명이 조암면 일리 호적에서 발견된다. 조암면 일리에 등장한 창로, 창원, 창수 후손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유학이다. 또 준민의 4세손 翼佐는 解西部面 不老洞里로 退村한다. 익좌 후손 45명은 모두 解西部面 不老洞里 혹은 九成村里에 세거한다. 불로동리와 구성촌리는 매우 가까운 곳으로 추정된다. 구성촌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불로동에 속한다. 이들의 직역 역시 모두 유학이다. 준민의 4세손 膺敦, 膺淳, 膺國은 花縣內面 棆谷里와 舌化里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 후손 19명이 이 마을에 세거했다. 이들의 집거지인 명곡리와 설화리 역시 매우 가까운 곳으로 보아야 한다. 두 지명은 현재 '설화명곡'이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43] 仁敏의 손자 貴甲도 東中面 伏賢岩里로 퇴촌했다. 이후 그의 후손 22명이 그곳에 세거한 모습이 발견되고 그중 17명은 유학이 되었다. 이처럼 특정 촌락에 세거한 자들은 총 106명이다. 홍문 후손 가운데 외촌 거주 유학이 총 195명임을 고려하면 절반 조금 넘는 인원이 특정 촌락에 세거지를 형성하여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설화명곡은 현재 달성군 화원읍에 속해 있고, 설화명곡은 대구 지하철역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표 2-4> 퇴촌한 향리 후손의 집거지

면명	리명	入鄕祖	入鄕 시기	총 인원
東中面	伏賢岩里	貴甲	1720	18
觧西部面	不老洞里, 九成村里	翼佐	1747	46
花縣內面	桧谷里, 舌化里	膺敦,膺淳,膺國	1756	22
租巖面	一里	昌老,昌源,昌壽	1783	20

호적의 자료 특성상 정확한 移去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에 이루어졌다. 18세기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동성촌락을 형성·발전시켰다고 알려진 시기다.[44] 향리 후손도 18세기 이후 특정 촌락에 집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이 모두 한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 중 89명은 특정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여러 마을을 전전했다. 조선후기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은 대체로 동성촌락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읍치를 떠나 집거지를 만들지 못한 89명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조선후기 달성 서씨 홍문 후손의 유형별 분류 (단위: 명)

향직 / 거주지	수행	(%)	미수행	(%)	합계	(%)
읍치	117	(51)	112	(49)	229	(100)
외촌	0		194	(100)	194	(100)

대구 관아의 상급 향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달성 서씨 홍문 후손을 직역과 거주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표 2-5>와 같다. 일단 직역을 통해 향직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누어지며, 거

44)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28쪽.

주지에 따라 읍치와 외촌으로 나누어진다. 전체 구성원 423명 가운데 117명만이 조상의 가업인 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나머지 306명은 향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306명 가운데 112명은 그대로 읍치에 남아 있었다. 반면 194명은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했다.

대구 호적에는 대구 관아 소속 향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감영에 근무했던 향리도 다수 등장한다. 대구에는 경상감영이 있어 단성이나 울산 호적에는 등장하지 않는 巡鄕吏, 營鄕吏, 巡人吏, 巡貢生 등의 직역이 다수 보인다. 경상감영이 위치한 대구 호적에 영리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지도 모른다. 우선 이들이 어떤 직임을 맡은 향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감영의 영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嶺營事例』[45]에는 감영 소속 향리를 두 집단으로 구분해 설명해 두고 있다. 하나는 吏房色,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등이 속해 있는 육방 영리 집단이다. 또 다른 집단은 육방 영리를 보좌하며 감영의 내부 관리를 수행하는 人吏廳 소속 영리이다. 두 집단은 선생안을 따로 작성할 정도로 위계질서가 명확했다. 『嶺營掾房先生案』[46]에는 六房 영리만 등장한다. 이 선생안에는 16세기 중반부터 1894년까지 경상감영에서 근무한 향리 489명의 정보가 적혀 있다. 498명은 안동 출신의 안동 김씨, 안동 권씨 향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47] 반면 『營人吏官案』[48]에는 후자의 영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육방의 직임이 등장하지 않으며 徐氏, 李氏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1. 향리 2명을 차출해 班 하인을 감독하고 임무를 부여
2. 신임 官長 맞이
3. 창고 관리
4. 각 稅所의 색리를 임명 및 교체

45) 『嶺營事例』,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2B-0003).
46) 『嶺營掾房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47) 이훈상, 2006, 앞의 논문, 371쪽.
48) 『營人吏官案』,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475).

5. 會計色과 算員을 차출
6. 藥契色을 차출해 藥材 관리와 醫生으로 차출
7. 使令, 軍牢, 營奴 차출
8. 창고지기 임명[49)]

위의 업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주로 경상감영의 內務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육방 향리들이 경상감영의 재정, 행정 등을 담당했다면 『營人吏官案』에 이름을 올린 향리들은 주로 경상감영의 운영과 관리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호적에 등장하는 감영리 직역자들은 『營人吏官案』에 등장하는 영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감영의 육방 향리는 대부분 안동 권씨, 안동 김씨이다. 그러나 대구 호적의 감영리는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가 단 한 명도 없다. 1825년 대구 호적에는 총 312명의 감영리가 등장하는데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영리를 배출한 성관은 달성 서씨이다.

<표 2-6> 1825년 호적에 등장하는 감영리 본관

감영리 / 순번	본관	인원	(%)
1	達城 徐	52	(17)
2	金海 金	25	(8)
3	月城 崔	24	(8)
4	月城 李	19	(6)
5	延日 鄭	13	(4)
6	기타	179	(57)
합계		312	(100)

『營人吏官案』은 1891년 작성되었는데 이곳에는 총 464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464명 중 2명은 記官, 261명은 吏, 201명은 通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營人吏官案』이 1891년에 작성되어 현존하는 대구 호적

49) 『嶺營事例』,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2B-0003).

의 마지막 식년인 1876년과 15년 정도 거리가 있다. 그리고 감영리는 서상면보다 동상면에 더 많이 등장하는데, 동상면 호적은 1867년이 현존하는 마지막 식년이라 비교가 쉽지 않다. 기관 2명과 261명의 吏를 1876년 대구 호적과 비교해 보았다. 『營人吏官案』에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따라서 同名異人의 착오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름이 같더라도 거주지가 읍치가 아니면 제외시켰고, 『營人吏官案』과 호적은 15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작성되었음을 감안하여 45세 이상은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63명 중 14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적을 통해 확인한 14명의 정보는 아래 <표 2-7>과 같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감영과 관련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14명 가운데 8명이 순공생이며, 2명이 순소동, 2명이 영인리로 등장한다. 또 『營人吏官案』과 호적 사이의 15년이란 간극이 존재했지만 두 자료에 등장하는 성씨는 거의 비슷하다. 『營人吏官案』에는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성씨로 비교해 본 것이 아래 <표 2-8>이다. 두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성관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營人吏官案』과 1976년 대구 호적에 모두 등장하는 향리

향리 / 순번	이름	직역	나이
1	徐承祖	巡貢生	25
2	吳世鳳	巡貢生	34
3	李基德	巡貢生	26
4	鄭宇河	巡貢生	36
5	鄭處默	巡貢生	25
6	鄭宅魯	巡貢生	30
7	崔鳴雲	巡貢生	30
8	吳世俊	巡貢生	31
9	李魯賢	巡小童	26
10	崔興林	巡小童	25
11	崔秉林	巡營吏	28
12	崔命福	巡砲	38
13	徐元祚	營校	30
14	吳致煥	營人吏	37

<표 2-8> 『營人吏官案』과 1867년 대구 호적 향리의 주요 성씨

『營人吏官案』			1867년 호적		
성씨	인원	(%)	성씨	인원	(%)
崔	77	(17)	李	33	(18)
李	75	(17)	徐	32	(18)
金	66	(15)	崔	24	(13)
徐	56	(13)	金	19	(10)
鄭	36	(8)	鄭	17	(9)
白	20	(5)	吳	9	(5)
吳	23	(5)	尹	8	(4)
尹	22	(5)	白	3	(2)
기타	71	(16)	기타	36	(20)
합계	446	(100)	합계	181	(100)

대구 호적에 등장하는 영리들의 사회적 지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

만 영방과 영인리청 소속 향리들이 선생안을 따로 만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인리청 소속 향리가 육방 향리보다는 위계적으로는 하위 직급이 분명하다. 그러나 『嶺營事例』을 보면 두 집단에게 내려준 물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歲饌을 육방 향리에게는 쌀 1섬, 靑魚 2급, 生雉 2마리, 곶감 1접, 간장 5되, 누룩 1동을, 영인리청 소속 영리에게는 쌀 1섬5말, 누룩 5동, 靑魚 3급, 곶감 2접, 간장 7되를 주었다. 본인이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육방 영리에게는 儀軌木 10필, 油紙 1속, 白紙 4속을 지급하는 반면 영인청 영리에게는 木 1필과 白紙 3속, 본인 상에는 木 3필과 白紙 3속을 지급했다. 이처럼 영인리들이 감영으로부터 받은 물품은 육방 향리와 거의 대등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영인리들 역시 감영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구 호적에는 수많은 감영리가 등장한다. 아래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성 서씨는 많은 감영리를 꾸준히 배출했다. 특히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감영리를 배출한 성관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달성 서씨는 대구 관아에도 많은 향리를 배출했다. 그러나 영인리청에 근무한 달성 서씨는 대구 관아에 근무한 달성 서씨와 먼 친척관계였다. 경상감영에 근무한 달성 서씨는 대부분 學諭公派이다. 일례로 1825년에 등장하는 달성 서씨 감영리 52명 중에서 30명, 1831년에는 56명 가운데 33명이 학유공파 渡의 후손이다. 渡는 世祖 5년 文科二等 중 1인으로 합격해 成均館權知學諭에 이르러 그 후손을 학유공파라 불렀다. 호적에 등장하는 향리들은 이들 중시조로부터도 거의 10세손에 해당한다.

<표 2-9> 감영리 배출 성관 (단위: 명)

성관 / 연도	달성서	김해김	밀양박	달성백	해주오	연일정	기타	합계
1732	14	15	8	5	9	3	68	122
1735	13	15	6	8	9	4	92	147
1747	12	16	6	4	9	5	109	161
1762	24	20	5	6	14	6	103	178
1789	41	27	4	4	11	17	134	238
1795	35	27	5	4	15	15	148	249
1825	53	25	6	3	16	16	193	312
1831	56	28	7	0	19	23	204	337
1858	50	22	6	0	22	30	233	363

*비고:음영이 들어간 곳은 해당 식년 가장 비중이 높은 성관이다

족보와 호적의 교차 대조를 통해 학유공파 영인리는 크게 두 가계에서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漢益의 후손이며, 다른 한 가계는 命立의 후손이다. 한익의 후손 가운데 62명의 영인리가, 명립의 후손 가운데 109명의 영인리가 등장한다. 아래 <그림 2-3>을 통해 두 인물은 판서공파의 中始祖 渡 후손이지만 도의 손자인 滉와 尹에서부터 갈라져 상당히 먼 친척관계임을 알 수 있다.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渡	智元	滉	記業	聖嶷	興基	赫	克立	碩東	漢益
渡	智元	尹	德問	儀	禹臣	琱	康遜	素	命立

<그림 2-3 >학유공파 계보

漢益은 1696년 免賤府下吏라는 직역으로 호적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1705년에는 律生으로 직역이 변화한다. 즉 한익은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 府의 下吏로 입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익의 두 아들 취걸과 취호가 순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한다. 한익 후손 대에 처음 감영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호적을 통해 한익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命立은 호적에서 발견할 수 없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대구 호적은 1681년 호적이다. 명립은 그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호적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호적에서 발견된다. 명립의 맏아들 日龍은 府案付騎保巡書記로 확인된다. 둘째 아들 後達은 1690년, 1696년에 府案付騎保巡都訓導라는 직역으로, 셋째 아들 後平은 1690년에는 府案付騎保營人吏, 1696년에는 巡人吏로 등장한다. 명립의 세 아들 모두 감영에 소속된 향리이자 騎保로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향리는 향직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군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향리는 향직을 수행함과 동시에 保人으로 차정되기도 했던 것 같다.

족보와 호적의 교차 검토를 통해 한익과 명립 후손 234명의 직역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이들을 나누어 보았다. 먼저 감영의 향리로 근무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해 보았다. 학유공파 한익과 명립 후손 234명 중 73%인 171명이 영리로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대구 府吏는 전체 가계원 가운데 28% 정도가 향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27%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가계원들은 감영리가 될 수 없었다.

학유공파 후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아도 읍치에 머무르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성원의 92%가 읍치에 등장한다.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하며 유학으로 기재되는 자는 전체 구성원의 8%에 해당하는 18명에 불과하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를 이어 集居하는 사례도 없다. 그나마 德隆 후손이 한 촌락에 정착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래 <그림 2-4>는 덕융의 가계도이다. <표 2-10>에서 알 수 있듯이 덕융은 1756년 서상면 호적에 選武軍官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러다가 1759년에는 府軍官으로 직역을 바꾸어 花縣內面 城山里로 거주지를 옮긴다. 3년 후인 1762년에는 業武, 1774년에는 閑良으로 직역이 바뀌지만 1783년 이후로는 계속 유학으로 기재된다. 덕융의 아들 宗祿의 직역이 흥미롭다. 그는 1825, 1831년에 璿源閣 參奉으로 등장한다. 선원각은 조선시대 御帖, 御筆, 왕실 족보 등을 보관해 두는 곳이다.[50] 호적을 통해서는 종록

이 어떻게 선원각 참봉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선무군관, 부군관 등의 직역으로 호적에 등장한 그의 아버지 덕융 역시 선원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종록은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선원각의 참봉이 되었고, 그 경험은 화현내면에서 그 후손이 유학으로 세거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된다. 덕융의 후손 宗祿, 啓仁, 大憲, 大增, 大順, 相華는 모두 유학을 사용하며 花縣內面 城山里에 세거했다. 덕융 후손을 제외하면 특정 촌락에 세거한 가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이 대구의 영리 후손은 읍치를 떠나는 비중도 낮았고 한 마을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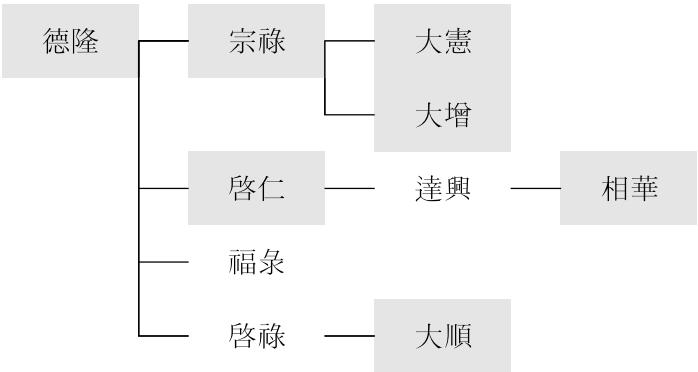

<그림 2-4> 덕융 후손 가계도

*비고: 음영 표시된 인물은 화현내면에 거주한 사람. 음영이 없는 인물은 호적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50) 조계영, 2010,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 정족산사고 '선원록 형지안(璿源錄形止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55집.

<표 2-10> 덕융 후손의 직역

이름 / 연도	德隆	宗祿	啓仁	大憲	大增	大順	相華
1756	選武軍官						
1759	府軍官						
1762	業武						
1774	閑良						
1783	幼學						
1795	幼學						
1801	幼學						
1810	幼學						
1825		璿源閣 參奉	幼學				
1831		璿源閣 參奉	幼學				
1858				幼學	幼學	幼學	幼學

<표 2-11>은 읍치에 머물렀던 가계원의 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읍치에 머무르는 사람이 모두 영리는 아니었다. 영리가 아님에도 읍치에 남아있던 자들이 45명 등장한다.(2,3,4,5번) 이들은 전체 구성원의 19%에 이른다. 이 중 무임 관련 직역자가 가장 많다.(2번) 이들 역시 감영의 군관·업무 등을 수행하며 관에 의탁해서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영을 떠나 대구 관아의 향리가 된 자들도 상당수 있었다.(3번) 이처럼 영리가 아니더라도 관에 의탁하는 자들이 읍치를 떠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표 2-11> 읍치에 거주한 영리 가계의 직역 구성

영리 / 순번	직역	인원	(%)
1	영리	171	(79)
2	무임	19	(8)
3	부향리	10	1(5)
4	유학	9	(4)
5	기타	7	(3)
합계		216	(100)

이런 결과는 향리 후손이 향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읍치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비록 경상도의 육방 영리는 아니었지만 감영에 근무하며 공권력에 기탁한 자들이었다.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공권력의 작은 권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아의 문을 지키던 門卒은 공권력의 최하층이라 할 수 있다. 아래 『목민심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졸이 가진 권한도 5가지나 된다고 서술해 두었다.

> 門卒을 日守라고도 하고, 使令이라고도 하며, 혹은 羅將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본래 떠돌이로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이다. 혹 광대 출신도 있고, 혹은 꼭두각시 놀이패 출신도 있으므로 가장 천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백성이다.
> 그들이 가진 권리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閻權, 둘째 杖權, 셋째 獄權, 넷째 邸權, 다섯째 捕權이다. 이 다섯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이리처럼 무서워한다. 수령된 자가 그들이 포악한 짓을 하게 두면 백성은 곤궁하게 될 것이다.[51]

다섯 가지 권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성문 출입 통제, 곤장의 경중, 죄인 관리, 지령 전달, 체포 등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백성

51) 『牧民心書』 吏典六條 馭衆, "門卒或稱日守, 或稱使令, 或稱羅將, 此輩本皆浮浪無根之物, 或以倡優投入, 或以窟儡翻變, 皆最賤難化之民也. 而手握之權,總有五事, 一曰閻權, 二曰杖權, 三曰獄權, 四曰邸權, 五曰捕權, 執此五權, 故下民畏之如豺狼, 爲牧者, 縱其爲虐, 民斯困矣."

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하층 관속마저도 관의 임무를 통해 상당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경상감영의 영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달성 서씨 한익과 명립 후손을 직역과 거주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표 2-12>와 같다. 일단 직역을 통해 향직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누어지며, 거주지에 따라 읍치와 외촌으로 구분된다. 전체 구성원 234명 가운데 171명이 조상의 가업을 이어받아 향직을 수행했다. 단 63명만이 향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63명 가운데 읍치를 떠나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 단 18명만이 외촌으로 떠나갔고 대부분 한 마을에 정착하지 못했다. 향리가 되지 못했던 자들도 대부분 읍치에 머물렀다. 그 결과 전체 구성원의 92%가 감영이나 대구 관아에 의존하여 살아갔다.

여기서 읍치를 떠난 자의 비중이 주목된다. 대구부 향리를 다수 역임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 후손은 전체의 46%가 읍치를 떠났고, 감영리 후손은 전체의 8%인 18명만이 읍치를 떠났다. 이런 차이는 향직을 수행하는 비중의 차이와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향리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읍치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구 읍치는 관아와 감영의 존재로 인한 진휼과 각종 업무들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52] 더군다나 향직을 수행하며 관과 감영에 의탁하는 자들에게 읍치는 더욱 안정적인 공간이었을 것이다.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하는 것이 향리 후손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조선후기 달성 서씨 영리의 유형별 분류 (단위: 명)

향직 / 거주지	수행	(%)	미수행	(%)	합계	(%)
읍치	171	(79)	45	(21)	216	(100)
외촌	0	(0)	18	(100)	18	(100)

지금까지 대구 관아에 근무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와 경상감영에 근무

52) 이유진, 2011, 「18세기 大丘 戶籍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大丘府 西上面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7.

한 달성 서씨 학유공파 후손을 200여년에 걸쳐 추적해 보았다. 향리 가계는 크게 향직을 수행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 향리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직을 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 결과 향리들은 직계자손에게 가능하면 향직을 계승하려 했다.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읍치를 떠나기도, 읍치에 남기도 했다. 향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읍치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구의 관과 감영이라는 기관에 의지해 살아갔다. 반면 읍치를 떠난 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다음 장에서는 읍치를 떠난 자들의 정착에 대해 살펴보겠다.

3장 향리 후손의 거주지 이전과 사회적 지위

1. 향리 후손의 외촌 정착과 마을 내 위상

읍치는 관아가 위치하여 행정, 상업, 군사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읍치는 관아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 많이 거주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방의 양반은 읍치에 거주하지 않았다. 조선전기 재지 토성들이 사족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외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1] 향리는 관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읍치에 거주했다. 하지만 향리 후손 중 일부는 조상이 세거한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했다. 향리 후손이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 향직에서 배제되고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하는 자들의 정착과정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유학은 더 이상 양반만이 사용하는 직역이 아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에는 직역만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특정 성씨가 한 마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황의 후손인 眞城 李氏도 良洞에 살면 상놈 된다”[2]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후기 동성촌락은 양반의 필수 조건이었다. 조선후기 양반은 특정 조상을 기점으로 한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했다. 자연스레 양반의 동성 촌락은 특정 성씨의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높은 가문일수록 한 촌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호적을 통해 특정 성씨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역과 거주 촌락에서 그 성씨가 차지하는 비중

1) 이수건, 1998, 『中世社會史硏究』, 일조각.
2) 여중철, 1980,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로 婚班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혼인은 대체로 家格이 비슷한 집안과 이루어졌다. 혼반을 맺은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특정 가계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다. 대구 관아의 향리를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 후손 가운데 거주지를 외촌으로 옮겨 세거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창수와 귀갑의 후손이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한 과정과 그 마을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수[3] 후손의 거주지 이전을 먼저 살펴보겠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구 府吏를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는 대부분 홍문의 후손이다. <그림 3-1>의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수는 홍문의 6세손이다. 창수의 아버지 봉지는 현존하는 대구 호적에는 주호나 주호의 구성원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후손의 四祖 정보를 바탕으로 봉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표 3-1>을 보면 봉지의 직역은 學生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호적만으로는 향직을 수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봉지의 父 弼行은 향리, 祖父 漢甲과 曾祖父 應達은 공생으로 등장해 창수는 대대로 향직을 수행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14世	15世	16世	17世	18世	19世	20世
興門 —	俊敏 —	應達 —	漢甲 —	弼行 —	鳳祉 ┬	昌老
					├	昌源
					└	昌壽

<그림 3-1> 창수의 가계도

3) 창수는 삼 형제 중의 막내지만 가장 먼저 조암면 일리 호적에서 등장한다. 조암면 일리에 정착한 창수 형제의 후손을 편의상 창수 후손이라 지칭하겠다.

<표 3-1> 창수 조상의 직역

기록 / 이름	직역1	직역2	직역3	거주지
興門	嘉善大夫			
俊敏	通政大夫			
應達	貢生			서상면
漢甲	貢生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서상면
弼行	鄕吏	貢生	老職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	서상면
鳳祉	學生			

-비고: 홍문, 준민, 봉지의 직역은 그들 후손의 四祖 직역을 참고해 작성했다.

창수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昌老, 昌源이다. 호적을 통해 이들의 직역과 거주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3-2>와 같다. 첫째 아들 창로는 27세인 1747년 호적에 처음 등장하는데 下守西面 檢岩里에서 幼學으로 등장한다. 그가 하수서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창로의 妻邊과 관련 있어 보인다. 창로는 金汝雄의 딸과 결혼을 했다. 호적에 김여웅이 등장하지 않지만 김여웅의 아버지 즉 창로의 妻祖父인 金仁說이 1738년 下守西面 西邊立岩里에 등장한다. 따라서 창로의 거주지 이동은 처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창수 형제의 직역과 거주지

식년	이름	직역	거주면	거주리
1747	창로	幼學	下守西面	檢岩里
1756	창수	鄕吏	西上面	後洞內里
1759	창수	幼學	租巖面	一里
1762	창수	幼學	租巖面	一里
1774	창원	通德郎	租巖面	一里
1783	창로	幼學	租巖面	一里
1795	창원	通德郎	租巖面	一里

반면 봉지의 막내아들 창수는 1756년 읍치에 등장했다. 3년 뒤 1759년 호적에는 租巖面 一里에서 등장한다. 이후 꾸준히 유학 직역을 사용하며 같은 마을에 등장한다. 이를 통해 창수가 이곳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조암면 일리 역시 창수와 전혀 무관한 곳은 아니었다. 창수는 월성 최씨 崔太永의 딸과 혼인을 맺었는데 최태영은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장한다. 즉 창수도 그의 맏형과 같이 처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妻鄕으로 이거하는 것은 조선전기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많은 관료가 조선전기 정치적 격변기에 本鄕, 妻鄕, 外鄕으로 낙향했고 이후 재지사족으로 자리 잡았다.[4]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정착한 조선후기에는 이런 풍습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8세기 향리 후손은 읍치에서 외촌으로 이거할 때 여전히 처변을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 같다. 창수의 조암면 정착은 호적에서 서상면에서 조암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1756~1759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5] 창수가 조암면에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창원도 조암면 일리에 등장한다. 하수서면으로 이거했던 맏형 창로도 그 마을에 정착하지 못했는지 36년 뒤인 1783년 조암면 일리 호적에 보인다. 삼 형제의 조암면 일리 정착 이후 이들의 후손 22명 가운데 17명이 조암면 일리의 호적에서 발견된다. 현존하는 대구 호적의 마지막 식년인 1876년에도 창수 후손 대부분이 조암면 일리에서 발견되는 것을 미루어보면 최소 100년 이상 조암면에 세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암면은 당시 靈岩面으로도 불렸다. 아래 <그림 3-2>가 조선후기 대구 지도이다.[6] 빗금 친 동그라미로 표현된 곳이 대구의 읍치에 해당하는 서상면과 동상면이고, 읍치의 서쪽에 조암면이 있다. 조암면은 대구 읍치

---

4)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5) 창수는 1756, 1759, 1762년에는 昌義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등장한다. 그러나 창수, 창의는 四祖, 生年, 妻가 모두 같고, 1783년에는 개명을 하여 창수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개명 전 이름은 호적에서 확인할 수 없다.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수를 대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6) 한영국, 1976, 「十八十九世紀大邱地域の社會變化に關する一試考-大邱府戶籍の'新戶'を中心に」, 『朝鮮學報』 80. 83쪽에서 재인용.

에서 서쪽으로 약 30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현재는 달서구의 월배이다.[7]

7) 『大邱府邑誌』, (奎 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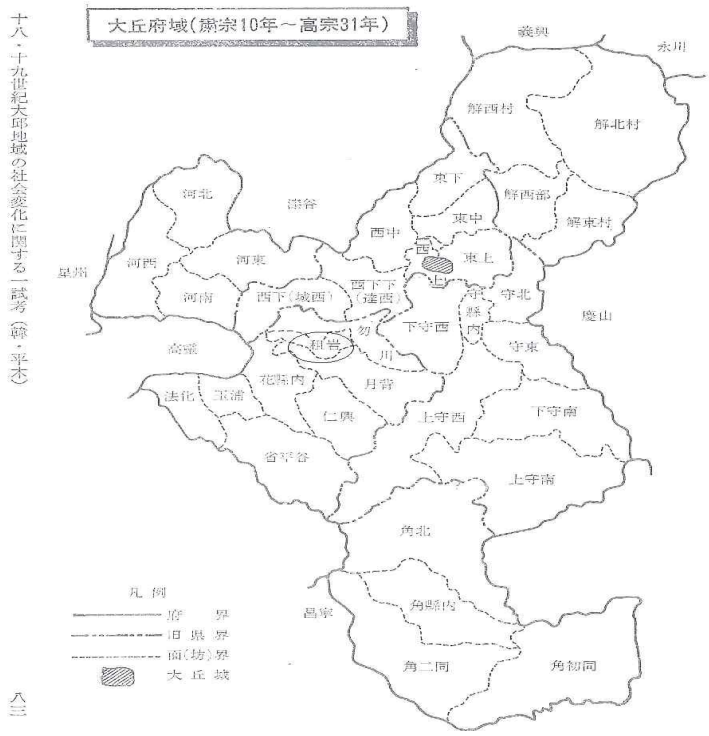

<그림 3-2> 대구부 지도

창수가 조암면 일리에 정착하기 전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조암면은 수해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농토가 비옥한 곳이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지 소유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9] 창수가 조암면에 정착하기 전인 1756년 조암면 일리의 성관 구성을 아래 <표 3-3>에 정리해 두었다.

8) 김용섭, 1995,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3, 「조선후기 신분구성의 변동과 농지소유 -대구 조암방지역 양안과 호적의 분석」, 『東方學志』, 82집.

9) 미야지마 히로시, 「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조선후기 대구 조암방의 사례」, 『국학연구』 14, 조암면 양안의 분석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논지를 따른다.

<표 3-3> 1756년 조암면 일리 주호의 성관

성관	인원	(%)	성관	인원	(%)
慶州 崔	24	(29)	慶州 陣	6	(7)
金海 金	9	(11)	기타	22	(27)
星州 李	9	(11)	無	4	(5)
丹陽 禹	8	(10)	합계	82	(100)

조암면 일리에는 총 82명의 주호가 등장하고 그 중 慶州 崔氏가 2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金海 金氏와 星州 李氏가 각각 9호 등장한다. 그 외에 11개 성씨에서 22호를 배출했고, 성이 없는 노비도 4호 존재했다. 조암면 일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주 최씨는 전체 주호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이 점은 경주 최씨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성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암면 일리에 사는 경주 최씨 24명은 다양한 직역으로 등장한다.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총 24명의 최씨 가운데 유학은 10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암면 일리 전체의 유학 비중도 그리 높지 않았다. 전체 82호 가운데 총 25개 주호만 유학 직역을 사용했다. 나머지 경주 최씨 주호 14명은 군관, 무임, 보인 등의 직역이 더 많다. 한 마을에 거주했던 경주 최씨들은 사회적 지위가 차이나기 때문에 어쩌면 본관만 같은 남일 가능성도 있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24명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24명의 경주 최씨 四祖 기록을 통해 24명 가운데 16명이 같은 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족임이 확인되는 경주 최씨 16명도 다양한 직역을 보유하고 있다. 유학은 그 절반인 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군관, 보인, 무임 직역자였다. 즉 조암면 일리에 거주했던 경주 최씨는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성관이었지만, 개개인의 직역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경주 최씨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성씨는 바로 단양 우씨이다. 이들은 마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8명의 주호 모두 유학 직역을 사용했다. 이들은 인근 月村에 거주한 단양 우씨 一族으로 보인다.[10] 단양 우씨는 月背面 上仁里에 동성촌락을 형성하였다. 월배면 상

인리에 거주한 단양 우씨는 載, 鎭, 海 등을 항렬자로 사용했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단양 우씨 역시 위의 항렬자를 사용한다.

<표 3-4> 1756년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재된 최씨

직역	인원	직역	인원
幼學	10	武任	5
軍官	6	無	1
保人	2	합계	24

창수가 조암면 일리에 정착하기 전 이곳은 수적으로는 경주 최씨, 사회적으로는 단양 우씨가 우위에 있다. 동시기 주변 마을과 비교해 보면 조암면 일리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단성현 법물야면 이교리에서 동성촌락을 형성한 달성 서씨는 평민 출신 가계임에도 1762년 38.5%, 1780년 50%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기록했다.[11] 다른 마을과 비교해 봤을 때 조암면 일리는 경주 최씨와 단양 우씨가 가장 우위에 있었지만 두 성씨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졌다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주 최씨는 마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고, 단양 우씨는 등장 호 전체가 유학이지만 전체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창수 후손이 정착하기 전 조암면 일리는 경주 최씨와 단양 우씨가 우위에 있었지만 특정 성씨가 강한 우위에서 있는 촌락이라고 칭할 수는 없어 보인다.

10) 월촌에 거주한 단양 우씨에 대해서는 김현영, 1999, 「조선후기 친족의 결속과 갈등의 한 양상 -大丘 月村 丹陽禹氏 宗契關聯文書의 분석-」, 『고문서연구』 16; 2002, 「조선후기의 재지사족의 정치적 성장과 '전통의 창출' - 大邱月村丹陽禹氏의 養浩堂顯揚事業을 중심으로」, 『史學硏究』 6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11)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 연구』 52호, 7~8쪽.

<표 3-5> 조암면 일리 주호의 성관과 유학 직역자 (단위: 명)

성씨 / 연도	達城 徐氏		慶州 崔		丹陽 禹		金海 金		기타		합계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1759	1	1	24	8	9	9	7	0	39	9	80	27
1762	1	1	27	10	11	11	7	0	30	12	76	34
1774	2	2	28	12	9	9	6	0	35	16	80	39
1783	3	3	24	10	9	9	10	0	39	16	85	38
1795	4	4	15	10	8	8	6	1	36	12	59	35
1798	3	3	6	5	6	6	2	1	21	13	38	27
1810	4	4	6	4	11	11	0	0	21	12	42	31
1831	7	7	6	6	12	12	2	0	22	16	51	41
1837	7	7	6	5	7	7	2	0	29	9	51	35
1861	8	8	6	6	3	3	2	1	23	20	42	38
1867	9	9	4	3	1	1	5	3	22	13	41	32
1870	6	6	5	5	1	1	7	4	22	19	41	36
1876	8	8	3	3	1	1	0	0	15	9	27	23

*비고: 음영이 들어간 곳은 해당 식년 가장 높은 비중의 성관이다.

창수 후손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주요 성관의 戶數를 <표 3-5>에 나열해 보았다. 이를 통해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 호적에 등장하는 1759년 이후 주요 성관의 추이를 추적할 수 있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했던 달성 서씨가 모두 창수의 후손은 아니었다.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에 등장한 1759년에도 달성 서씨는 이미 여섯 호 등장하고, 그 다음 식년인 176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창수 후손과 달리 판서공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에 등장하는 달성 서씨는 창수 후손만 모은 것이다.

1759년 이후 조암면 일리의 성관 구성은 큰 변화를 보인다.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에 등장하는 1759년부터 약 40년간은 경주 최씨가 우세했다. 그러나 유학은 구성원의 절반 이하였다. 경주 최씨는 1798년부터 비

중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 이유는 경주 최씨 구성원 일부가 조암면을 떠나 甘勿川面 葛山里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반면 단양 우씨는 19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10명 안팎의 인원을 유지했다. 특히 유학의 비중이 다른 성관에 비해 높다. 1810년부터는 경주 최씨를 제치고 가장 많은 호를 배출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단양 우씨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져 19세기 후반에는 단 1호만을 배출하게 된다. 김해 김씨도 1759년부터 1795년까지 전체 호수의 10%에 가까운 호를 배출했으나 1798년을 시작으로 그 수가 급감하게 되고 결국 1810년에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다 1867년 5호, 1870년에 7호를 배출하여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 다음 식년에는 자취를 감춘다.

경주 최씨, 단양 우씨, 김해 김씨 등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비중이 낮아졌지만 달성 서씨는 꾸준히 성장했다. 1759년 창수가 처음 조암면 일리로 거주지를 옮긴 뒤 100년 동안 창수 후손은 느리게 세력을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창수 1호 밖에 없었지만 1774년 둘째 형 창원이 합세해 2호가 되었고 그 다음 식년에는 다른 곳으로 퇴촌했던 맏형 창로까지 합세해 3호로 늘어났다. 느리지만 꾸준히 비중을 늘려나갔던 달성 서씨는 1759년으로부터 약 100년 뒤인 1837년에는 최다 성관으로 등극하게 된다. 마지막 식년인 1876년에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8호를 배출했다. 이같이 창수 후손은 조암면에서 그 비중을 키워나갔지만 그들의 동성촌락을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1876년을 제외하면 1870년에는 김해 김씨와 같은 수를, 그리고 경주 최씨와는 단 두 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창수 후손이 조암면 일리에서 수적으로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내 다른 성관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6>은 창수 후손이 정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 19세기 달성 서씨의 노비수와 호당 구수를 마을 내 다른 성씨와 비교해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당 구수가 높으면 그들의 호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비수도 달성 서씨가 조금 더 많고 호당 구수 평균도 대체로 더 많다. 즉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들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 조암면 일리 거주민의 노비 수와 호당 구수 (단위: 명)

식년	달성 서씨		그 외 성씨	
	호당 노비 수	호당 구수	호당 노비 수	호당 구수
1837	0.96	4.8	1.1	3.9
1862	1	4.4	1	4.4
1867	1	4.4	0.9	4
1870	1.8	5.7	0.9	3.9
1876	1	3.4	1	3

동중면 복현암리에 정착한 향리 후손도 있었다. 바로 귀갑과 그의 후손이 100년 이상 그 마을에 세거했다. 귀갑의 가계도를 <그림 3-3>에 나타내 보았다. 귀갑은 조암면 일리에 정착한 창수 형제와는 먼 친척 관계였다. 창수의 曾祖父 漢甲이 귀갑과는 6촌 관계이다.

13世		14世		15世		16世		17世
從善	—	興門	—	仁敏	—	廷達	—	貴甲

<그림 3-3> 귀갑의 가계도

<표 3-7> 귀갑 조상과 그들의 직역

이름	직역	이름	직역
從善	安逸戶長	廷達	正兵
興門	嘉善大夫	貴甲	騎保府軍官
仁敏	通政大夫		

-비고: 종선, 흥문, 인민, 정달의 직역은 그들 후손의 四祖 직역란을 참고해 작성했다.

위의 <표 3-7>에서 보듯이 귀갑과 그의 父 정달은 각각 騎保府軍官, 正兵으로 등장한다. 정달은 일반 군역을 지는 양인으로 지위가 추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귀갑의 가계가 처음부터 양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귀갑의 高祖父인 종선은 안일호장이었으며 曾祖父 홍문도 호적에는 가선대부로 등장하지만 족보를 보면 그도 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문은 족보에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梧里에 은거했다고 나와있다.[12] 아버지가 안일호장을 역임한 명문 가계였으며 그의 두 아들도 안일호장이었다. 따라서 '官'의 의미는 향리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홍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인민은 네 번째 아들이었다. 인민은 안일호장으로 등장하는 형들과 달리 통정대부로 표기되었고 그의 아들 정달에 이르러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한다. 이같이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3세대 만에 정달은 어느새 군역을 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귀갑 역시 騎兵 保人이자 軍官이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갑은 대대로 거주하던 읍치를 떠나는 결정을 내린다. 1708년 서상면 남산리 호적에 등장했던 그는 1720년에는 東中面 伏賢巖里 호적에 등장한다. 동중면은 위의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읍치인 동상면의 북쪽에 위치하며 대구 관아와 7里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13] 1708년에서 1720년 사이 귀갑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 마을에 세거했다.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동중면 복현암리 역시 저명 양반이 거주하던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동중면 복현암리는 귀갑이 정착하기 15년 전인 1705년에는 총 18명의 주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이 없는 노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720년에는 양주 이씨의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다양한 성관이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達城徐氏世譜』, 1998. "仁祖年變後棄官退隱梧里"
13) 『大邱府邑誌』, (奎 10810)

<표 3-8> 귀갑 정착 이전 복현암리의 주요 성관

성관	1705		1720	
	인원	(%)	인원	(%)
東萊 鄭	3	(17)	2	(6)
楊州 李	2	(11)	9	(25)
達城 徐	1	(6)	1	(3)
無姓(奴婢)	8	(44)	6	(17)
기타	4	(22)	18	(50)
합계	18	(100)	36	(100)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05년에는 전체 18호 가운데 3호, 1720년에는 전체 36호 가운데 2호만 유학이다. 이들은 모두 동래 정씨이다. 동래 정씨를 제외하면 모두 군역자 혹은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동래 정씨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귀갑이 정착하기 전 복현암리는 전형적인 민촌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마을 상황은 귀갑이 복현암리를 선택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귀갑 후손은 복현암리에 정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유학으로 기재되지 못했다. 그의 아들 成必과 連必은 각각 水軍, 陸軍으로 등장한다. 귀갑 후손이 처음 유학으로 기재되는 것은 귀갑의 손자 대 이후이다. 그의 손자 聖大가 1789년 호적에 비로소 유학으로 기재되기 시작한다. 귀갑의 복현암리 첫 정착을 1720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70년이 걸렸다. 19세기 이후 복현암리에 등장한 귀갑의 후손은 모두 유학을 칭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 이들이 양반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9세기 이후 농촌 지역에서는 유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복현암리에도 유학의 비중이 매우 증가했다. 18세기 중반까지 단 한 명의 유학도 배출하지 못했던 양주 이씨도 1837년 이후로 모두 유학으로 등장했다.

<표 3-9>를 통해 귀갑이 복현암리에 정착한 후 200년 가까이 같은 마을에 세거했고, 19세기 이후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성관에 비해 두드러지는 수적 우위를 보이지는 못한다. 19세기에도 복현암리는 여러 성씨들이 모여사는 雜姓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9> 동중면 복현암리 주호의 성관 (단위: 명)

성씨 / 연도	達城 徐氏		楊州 李		東萊 鄭		金海 金		無姓		기타		전체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1705	1	0	2	0	3	3	1	0	8	0	3	0	18	3
1720	1	0	9	0	2	2	0	0	6	0	18	0	36	2
1726	0	0	8	0	1	1	4	0	3	0	17	0	33	1
1732	0	0	8	0	3	3	0	0	6	0	19	0	36	3
1735	2	0	8	0	3	3	0	0	2	0	21	0	36	3
1747	2	0	8	0	6	5	9	0	4	0	15	4	44	9
1768	2	0	5	1	1	1	9	1	1	0	22	3	40	6
1789	3	2	4	2	5	5	9	0	0	0	20	4	41	13
1810	4	3	5	2	4	3	4	0	0	0	27	5	44	15
1837	5	4	8	8	2	2	2	0	0	0	24	11	41	25
1858	7	6	7	7	2	2	3	2	0	0	24	14	43	31
1870	6	6	7	7	3	2	4	2	0	0	26	16	46	36

*비고: 음영이 들어간 곳은 해당 식년 가장 높은 비중의 성관이다.

동중면 복현암리에 정착한 귀갑 후손 역시 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같은 마을 거주민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갑 후손이 보유한 노비 수는 다른 성씨와 비슷하지만, 호당 구수는 대체로 1명 이상 더 많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1명 이상 더 많은 호당 구수를 기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자들보다는 안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동중면 복현암리 거주민의 노비 수와 호당 구수 (단위:명)

식년	달성 서씨		그 외 성씨	
	호당 노비 수	호당 구수	호당 노비 수	호당 구수
1810	1.3	5.8	0.6	4.4
1837	1	5.2	0.9	5.2
1858	1.3	7.7	1.1	5.2
1861	1.1	6.4	1.3	5.2
1870	1.5	6.5	1.2	5

이들이 읍치를 떠나 이렇게라도 한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향리들의 경제력에서 찾아진다. 대구 향리의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대신 타 지역 향리의 경제력을 통해 대구 향리의 경제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720년에 작성된 龍宮縣과 義城縣 읍치 지역의 양안을 통해 향리의 경제력을 파악해 보았다.[14] 아래 <표 3-11>을 작성할 때 직면한 기술적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첫째, 同音異字의 이름을 가진 기주들은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둘째, 名만 지닌 기주는 동명의 姓 보유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셋째, 名이 양반의 노비명과 동일한 기주는 양반의 노비로 간주한다.
넷째, 성명이 동일하거나 앞의 첫째, 둘째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취급된 기주가 둘 이상의 직역을 지니더라도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다섯째, 위의 넷째 경우 가운데 상이한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둘 이상 보유한 기주의 신분은 상위 신분으로 확정한다.
여섯째, 기주의 신분은 이준구의 분류기준을 따른다.[15]

14) 『義城縣庚子改量田案』 (奎14951); 『龍宮縣庚子改量田案』 (奎 14953).
15) 이상의 분류 방법은 김건태, 2008,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471~472쪽을 참고했다. 이준구, 1993,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 일조각.

<표 3-11> 1720년 용궁 부내면과 의성 북부면의 토지 소유 양상

(단위: 결-부-속)

신분 \ 지역		용궁현 부내면			의성현 북부면		
		인원	전체 결부	평균	인원	전체 결부	평균
양반		203	120-31-3	0-59-3	46	30-08-1	0-65-4
중인	향리	152	75-78-4	0-49-9	256	145-21-3	0-56-7
	무임	49	21-31-0	0-43-5	111	35-60-0	0-32-1
	기타	18	12-75-4	0-70-9	44	41-29-4	0-93-6
평민		270	56-78-0	0-21-8	228	72-00-9	0-31-6
천민		495	77-27-0	0-15-6	800	253-43-5	0-31-7
합계		1,187	366-21-1	0-31-9	1,505	688-16-1	0-45-7

<표 3-11>에 각 신분층의 전답 소유 양상을 나타내 보았다. 두 지역 모두 향리는 양반보다는 못한 경제력을 보여준다. 용궁현 부내면의 경우 양반은 총 203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평균 59부 3속의 토지를 보유했다. 반면 향리는 양반에 못 미치는 49부 9속의 토지를 보유했다. 의성현의 상황 역시 비슷했다. 의성현의 읍치인 북부면에서 양반 기주수는 46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1인당 평균 65부 4속을 가지고 있다. 향리들은 평균 56부 7속을 보유해 양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양반과 향리의 토지보유 규모는 양안에 수치보다 더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양반 가운데는 부재지주가 적지 않았던 것에 비해 향리들은 모두 재지 지주다. 즉 재지 양반, 즉 용궁현과 의성현에 거주하던 양반 1인의 평균 토지 규모는 <표 3-11>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양반의 경제력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리의 토지 소유 규모는 평민이나 천민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록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도 거주지를 옮기고 그 중 일부는 한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다.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대체로 빈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향직

에서 배제된 자 중 일부는 무임 관련 직역을 가진다. 동중면 복현암리로 이거했던 貴甲도 군관이었다. 무임들의 경제력은 향리보다 못했다. 즉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의 경제력은 점점 낮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향리 후손이 읍치를 떠나 새로운 마을에 세거했지만 그들의 존재 형태가 대구의 양반가와는 큰 차이가 나 보인다. 아래 <표 3-12>는 대표적인 대구의 양반 동성촌락인 묘동리의 성관과 직역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河西面 妙洞里는 死六臣 朴彭年의 후손이 자리 잡은 곳이다. 박팽년의 아들 朴壹珊은 15세기 후반 묘동리에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16] 이들은 순천 박씨로 묘골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까닭에 묘골 박씨라고 불리기도 했다. 묘동리는 전형적인 양반 동성촌락을 보여준다. <표 3-12>를 보면 17세기에는 순천 박씨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無姓 주호가 눈에 띈다. 순천 박씨의 노비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묘동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간이 지나며 순천 박씨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19세기에는 전체 주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다른 성씨를 수적으로 압도한다. 수적인 압도뿐만 아니라 직역의 우위도 눈에 띈다. 특히 19세기 유학의 숫자에 눈이 간다. 주지하듯이 19세기 중반 이후 농촌 지역은 주호의 대다수가 유학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하서면 묘동리에는 1876년에도 마을 전체 67명의 주호 가운데 35명만이 유학이고 그 대부분이 순천 박씨이다. 묘동리에서 순천 박씨의 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처럼 강한 위세를 가졌던 양반 동성촌락과 비교했을 때 봉지 후손과 귀갑 후손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약했음이 자명해 보인다.

16) 이영진, 2015, 『달성 마을이야기』, 민속원.

<표 3-12> 묘동리 호적 주호 성관 (단위: 명)

성씨 / 연도	順天 朴		金海 金		慶州 李		奴婢		기타		합계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1681	17	7	10	1	14	0	118	0	39	5	198	13
1690	16	7	6	0	20	0	161	0	12	1	215	8
1705	6	6	5	0	3	0	112	0	10	0	136	6
1726	16	16	4	1	1	0	120	0	14	6	155	23
1741	20	16	3	1	2	0	49	0	7	3	81	20
1765	20	18	3	0	2	0	48	0	9	4	82	22
1786	19	18	4	0	1	0	47	0	10	0	81	18
1807	18	15	5	0	3	0	27	0	11	5	64	20
1825	24	23	4	0	3	0	21	0	17	4	69	27
1837	25	25	2	0	2	0	27	0	13	1	69	26
1855	29	29	3	0	2	0	23	0	8	3	65	32
1876	34	33	6	0	2	0	10	0	15	2	67	35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한 향리 후손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家格이 낮은 양반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래 <표 3-13>은 대구 上守南面 友鹿洞의 주요 성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마을에는 降倭人 金忠善의 후손이 세거했다. 김충선은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 장수로 조선에 왔다가 귀순하고 전쟁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김해 김씨와 충선이라는 본관과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嘉善大夫에 제수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김충선은 대구 우록동에 정착해 살았다. 김충선의 후손은 우록동에 정착해 성리학을 공부하고 洞約을 실시하며 자신의 동성촌락에서 지배력을 키워나갔다.[17]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록동에 정

17) 양흥숙, 2016, 「조선후기 항왜(降倭)의 존재 양상과 정착-대구시 우록리 김충

착한 김해 김씨는 양반에 가까워 보이지만, 항왜인 후손이라는 점에서 묘골의 순천 박씨보다는 급이 낮은 양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록동에 거주한 김해 김씨는 그 마을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아래 <표 3-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 김씨는 1747년을 제외하면 모든 식년에서 우록동 전체 주호의 과반을 차지한다. 인천 이씨를 제외하면 꾸준히 등장하는 성관도 없다.

<표 3-13> 우록리 호적의 주호 성관 (단위: 명)

성 / 씨 / 연도	金海 金		仁川 李		密陽 朴		無姓		기타		합계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주호	유학
1747	26	17	6	6	2	2	1	0	22	5	57	30
1768	24	18	3	3	3	2	1	0	14	5	45	28
1789	23	22	4	4	2	2	0	0	13	5	42	33
1804	22	21	4	4	2	2	0	0	8	2	36	29
1825	24	22	7	7	2	2	0	0	8	6	41	37
1837	21	21	9	9	2	2	1	0	8	7	41	39
1858	32	31	14	14	0	0	0	0	6	6	52	51
1876	36	35	11	11	2	2	0	0	8	8	57	56

조암면 일리와 동중면 복현암리에서 세거했던 향리 후손 중 일부는 각자의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먼저 조암면 일리에서 벗어난 가계원을 <표 3-14>에 기록해 두었다. 거주지 이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읍치가 아닌 다른 마을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와 읍치인 서상면과 동상면으로 옮긴 사례이다. 석현과 관석은 각각 수현내면과 달서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반면 다시 읍치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 석문, 영준, 우석은 다시 읍치로 들어가 영준은 향리가 되었고, 석문과 우석은 유학을 사용했다. 이들이 조암면 일리를 떠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외촌에서 다시 읍치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암면 일리를 떠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돌림자를

선의 후손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2.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암면 일리에 거주한 봉지 후손은 22세에는 列을, 23세에는 周를 돌림자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해당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 3-14> 조암면을 떠난 향리 후손

이름	직역	세대	이주면	이주리	기타
錫鼎	幼學	22	守縣內面	上洞里	
錫文	幼學	22	西上面	南山里	禹錫의 父
英俊	鄕吏	23	東上面	射觀里	
觀碩	幼學	23	達西面	聖堂里	
禹錫	幼學	23	西上面	南山里	錫文의 子

동중면 복현암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 복현암리를 떠난 자들의 정보를 <표 3-15>에 나타내 보았다. 聖儀는 史庫參奉이 되어 서상면 동산리 호적에 등장한다. 사고참봉을 역임한 이후에는 유학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 덕신과 손자 세환은 읍치인 서상면에 머물며 각각 한량과 두석장으로 등장해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암면 일리와 동중면 복현암리에 거처한 달성 서씨 향리 후손의 위상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 마을을 떠나면 그마저 유지하지 못한 채 사회적 지위가 더욱 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복현암리를 떠난 향리 후손

이름	직역	세대	이주면	이주리	기타
聖儀	史庫參奉,幼學	19	西上面	東山里,後洞里	
德臣	閑良	20	西上面	東山里	聖儀의 子
世丸	豆錫匠	21	西上面	南山里	德臣의 子

조암면 일리와 동중면 복현암리라는 세거지를 떠난 자들을 소수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유입은 없었다. 동성촌락을 형성한 다른 마을에서는 여러 계보가 함께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동성촌락 근처로 동족들이 결집하기도 했다.[18] 조암면 일리와 동중면 복현암리로 떠나온 자들 이외에도 많은 달성 서씨 판서공파 가계원이 향리가 되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읍치를 떠나지만 단 한 명도 조암면 일리나 동중면 복현암리로 이거해온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읍치를 떠나 외촌으로 이거한 향리 후손의 이거 과정과 그 마을에서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 마을에 세거하며 마을 내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양반 마을과 비교했을 때는 그 우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민촌 마을과 비교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는 혼반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 김경란, 2018,「조선후기 동성(同姓)마을의 분화에 대한 연구 —경상도 대구부 경주(慶州) 최씨(崔氏) 동성(同姓)마을의 사례—」, 『사림』 65권.

2. 혼망을 통해 본 사회적 지위

조선시대 혼인은 대체로 비슷한 지위의 가문과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향리도 철저히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통혼권을 형성해 나갔다. 향리는 주로 주변 향리 가계와 혼인했다고 알려져 있다.[19] 조상이 세거하던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향리 후손의 통혼망을 분석한다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할 수 있다.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호적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호적에는 처의 본관과 四祖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그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집안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호적을 통해 조암면 일리에 정착한 창수 후손 20명 가운데 12명의 妻邊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동중면 복현암리에 거주한 귀갑 후손의 경우 27명 가운데 9명의 배우자 가족이 대구 호적에 등장한다. 나머지는 아쉽게도 대구 호적에 등장하지 않는다.

먼저 조암면 일리에 세거했던 창수 후손 12명의 정보를 <표 3-16>에 나열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의 가계원 중 유학 직역자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이들을 전통적인 양반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재우의 妻父와 妻叔父, 有禹·錫文·錫鼎의 처부는 유학이지만 대구의 읍치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양반은 읍치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상층 양반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군관이나 한량과 같은 武任 직역자도 다수 등장한다. 有禹의 妻祖父는 재가군관으로, 錫鼎 처의 오빠는 부군관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읍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관에 기대어 살아갔던 자들이다. 또 巡扇子匠과 같은 하층 직역자와 혼인을 맺은 자도 보인다.

혼인을 맺은 지역도 주목할 만하다. 창수 후손들은 읍치를 떠났음에도 여전히 읍치에 거주하는 집안과 가장 많이 혼인을 맺었다. 읍치가 아닌 곳도 그들의 거주지인 조암면과 가까웠다. 우선 주언의 妻祖父는 서하하동면, 妻父는 달서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림 3-2>에 따르면 이곳은 조암면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勿川面을 지나면 바로 서하하동면이

19) 이훈상, 1990, 『朝鮮後期의 鄕吏』, 일조각.

다. 또 주인과 진우의 배우자 가족이 거처한 곳은 감물천면인데, 이곳은 위의 <그림 3-2>에는 물천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천면은 조암면의 북쪽과 동쪽을 에워싸고 있다. 주홍의 혼처 역시 매우 가까웠다. 월배면은 조암면의 동남쪽에 인접하고 있다. 유일하게 조암면에서 인접하지 않은 곳은 바로 주영의 배우자 가족이 살았던 해북촌이다. 해북촌은 대구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이처럼 봉지 후손은 읍치나 가까운 곳의 인물과 혼인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창수 후손 배우자 가족의 직역과 거주지

달성 서씨 구성원		배우자 집안			
직역	성명	본관	배우자와의 관계	직역	거주면
幼學	昌老	慶州 金	祖父	幼學	下守西面
			男妹	閑良	下守西面
幼學	昌壽	月城 崔	父	業武府軍官	阻岩防面
幼學	在禹	仁川 李	祖父	幼學	東上面
			叔父	幼學	東上面
幼學	鎭禹	金海 許	父	幼學	甘勿內面
幼學	有禹	水原 白	祖父	在家軍官	西上面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護軍	西上面
			父	閑良	西上面
				業儒	
				巡貢生	
				幼學	
幼學	周彦	月城 崔	祖父	幼學	西下下同面
			父	幼學	達西面
			叔父	幼學	達西面

幼學	周弘	江陽 李	祖父	幼學	月背面
			父	幼學	月背面
幼學	周仁	驪陽 陳	曾祖父	業武	租巖面
			祖父	幼學	甘勿內面
			父	幼學	甘勿內面
幼學	周榮	月城 崔	父	幼學	觧北村
幼學	錫文	南平 文	父	幼學	西上面
幼學	錫鼎	淸州 韓	父	幼學	西上面
				閑良	月背面
			男妹	府軍官	西上面
鄕吏	英俊	達城 裵	祖父	巡扇子匠	西上面

<표 3-17>은 동중면 복현암리로 거주지를 옮긴 귀갑 후손의 배우자 정보이다. 대구 호적을 통해 9명의 배우자 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귀갑의 후손 역시 배우자 가족의 직역은 유학이 가장 많았다. 聖儀, 命祿, 就慶, 周慶, 洛慶의 妻父는 유학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양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聖儀 妻父의 본관은 김해이고 이름은 태옥이다. 그는 1762년 서중면 평리에 유학으로 등장한다. 그 마을에는 총 43명의 주호가 등장하며 그 중 김해 김씨는 5명에 지나지 않는다. 5명의 김해 김씨 가운데 2명은 노비이고 1명은 군역자이다. 따라서 서중면 일리에 거주하는 김해 김씨는 家格이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유학 직역자 딸과 결혼한 명록, 취경, 주경, 낙경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읍치에 거주하는 집안과 혼인한 경우도 있다. 성필과 세환은 읍치인 동상면과 서상면에 거주했던 집안과 결혼을 했으며, 일복은 面內婚을 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거주지인 동중면과 가까운 곳에서 혼처를 구했음을 알 수 있다. 서중면은 동중면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그 외에도 해북촌, 달서면, 수북면 등은 인접하진 않지만 한 개의 면만 지나면 도달할 수 있다. 해북촌은 동중면에서 해서부면의 동북쪽에, 달서면은 서상면을 지나, 수북면은 동상면을 지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직 하서면만 멀리 떨어져 있다. 귀갑의 후손도 전반적으로 읍치나 가까운 곳에서 혼처를 구했음이 확인된다.

<표 3-17> 귀갑 후손 배우자 집안의 가족과 거주지

달성 서씨 구성원		배우자 집안			
직역	성명	본관	배우자와의 관계	직역	거주면
陸軍	必連	達城 裵	父	業武	東上面
				貢生	
史庫參奉	聖儀	金海 金	父	幼學	西中面
武學	聖太	丹陽 禹	父	城丁軍	解北村
			男妹	水軍	
幼學	日馥	星州 呂	父	府軍官	東中面
幼學	命祿	完山 李	父	幼學	守北面
幼學	就慶	星州 裵	父	幼學	河西面
幼學	周慶	南陽 洪	父	幼學	達西面
幼學	洛慶	星州 裵	父	幼學	河西面
豆錫匠	世丸	金海 金	父	龜巖書院下典	西上面

대구 호적을 통해 통혼 지역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구 밖에서 혼처를 구한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한 가문의 혼인은 대체로 비슷한 집안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적에서 발견되지 않는 배우자 집안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통혼 양상을 양반과 그리고 읍치에 남아 향직을 수행한 향리와 비교한다면 이들의 사회적 위상이 분명해 지리라 생각된다. 조선후기 양반 동성촌락에서는 유력 성관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봉지 후손의 통혼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성관과 통혼을 맺는 점은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평민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21]

20) 권내현,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 -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52.

21) 김경란, 2017,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大丘府 解北村 廣里

조선후기 양반의 통혼은 그 범위가 넓었다. 안동의 저명 양반인 豊山柳氏의 경우 面內婚이 7.2%, 郡內婚이 27.9%, 도내 타 郡婚이 67%를 기록했다.[22] 반면 중하층의 경우 혼인의 범위가 좁아져 촌락 내혼이 주를 이루었다.[23]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봉지 후손과 귀갑 후손의 혼처는 주로 읍치 혹은 인근 마을이었다.

이들의 혼처를 핵심 향리 가계의 배우자 집안과 비교해 보았다. 향리는 주로 인근 군현의 향리와 혼인을 맺어왔다고 알려져 있다.[24] 대구의 향리 역시 다른 지역 향리와 비슷한 혼인 양상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달성 서씨 핵심 향리 가계 하나를 선택해 그들의 혼반을 확인했다. 달성 서씨 鴻佐 후손은 대대로 향리를 배출한 핵심 가계이다. 홍좌 후손은 총 15명의 향리를 배출했고 그들 중 일부는 안일호장과 같은 최상위 직임을 수행했다. <표 3-18>에 그들의 배우자 집안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홍좌 후손이 가장 많은 혼인 관계를 맺은 곳은 같은 향리 집안이었다. 대구 관아에 근무한 향리뿐만 아니라 감영의 향리와도 통혼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 명선을 제외하면 모두 향리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상대 집안도 상층 향리 직역이 다수 등장한다. 동윤과 세길의 妻父는 안일호장으로 등장한다. 안일호장을 역임한 의협은 경주 최씨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의 조부는 英祖 49년(1773) 癸巳 增廣試 丙科 187위로 武科에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25] 명선의 妻父는 유학과 府校로 등장한다. 府校라는 직역은 鄕校와 관련된 직역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22)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硏究』 일조각.

23) 이성임, 2010,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법물야면의 혼인 양상」, 『남도문화연구』 19.

24)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90쪽~93쪽.

2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

<표 3-18> 향리 배우자 집안의 가족과 거주지

달성 서씨 구성원		배우자 집안			
직역	성명	본관	배우자와의 관계	직역	거주면
鄕吏	宅臣	慶州 崔	父	巡貢生	西上面
				通德郎	仁興面
鄕吏, 府貢生	益臣	淸州 韓	父	巡貢生	東上面
安逸戶長, 鄕吏	義俠	慶州 崔	祖父	及第	西上面
安逸戶長, 府記官	義洛	遂安 金	父	貢生	西上面
				業儒	東上面
			男妹	巡貢生	西上面
鄕吏, 府貢生	義洙	水原 白	父	巡貢生	東上面
				幼學	守北面
鄕吏	東贇	波平 尹	父	安逸戶長	西上面
府記官, 安逸戶長	相基	密陽 朴	父	府貢生	東上面
鄕吏	世吉	水原 白	父	安逸戶長	西上面
鄕吏	海璟	仁川 李	父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行龍讓衛副護軍慶熙宮衛將行架山鎭別將	東上面
			男妹	府貢生	
鄕吏, 府貢生	明善	全州 李	父	幼學	東上面
				府校	

혼인망을 중심으로 읍치를 떠난 달성 서씨 향리 후손의 사회적 지위를 양반가와 향리를 수행한 동족과 비교해 보았다. 봉지 후손과 귀갑 후손의 혼인망은 저명 양반가와 크게 달랐다. 가까운 지역에서 혼처를 구했으며 여전히 읍치에 거주하는 관속들과도 지속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혼인 형태는 오히려 읍치에서 향직을 수행하던 달성 서씨 동족들이나 평민들과 유사점이 더 많았다. 혼반을 통해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향리들이 자신들의 직계 자손을 향리로 만들려고 한 결정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의 사회적 지위를 호적을 통해 살펴보았다. 읍치를 떠난 많은 향리 후손 가운데 새로운 마을에 정착해 세거한 사례를 살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향리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향리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직을 계승하려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다.

4장 향직 탈락자의 지위 유지 전략

1. 향직 탈락자의 활동

앞 장에서는 대구 호적을 통해 읍치를 떠나 한 마을에 세거한 향리 후손을 추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혼반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을 호적이라는 자료를 통해 추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생각을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본 장에서는 안동의 사례를 통해 읍치를 떠난 향리 후손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도에서 가장 권세 있는 향리는 바로 안동의 향리였다. 안동의 향리는 감영의 육방 영리를 다수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1890년 편찬된 『營吏官案』[1]에는 경상도 감영의 영리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을 살펴보면 전체 영리 155명 가운데 안동 출신이 116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족은 안동의 향리는 물론이고 최상위 향리 직임인 경상감영 향리를 다수 배출했다. 이 가운데 안동권씨 同正公派는 아래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안동 권씨 향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영리를 배출한 가계였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안동 권씨 同正公 棣達派 應錘系에 속하는 澂 후손이다.[2]

1) 『營吏官案』, 1987, 『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 1, 東亞大學校 博物館.
2) 安東權氏大同譜所, 1907, 『安東 權氏 大同譜』; 안동권씨 종보사, 안동권씨 한글판 전산대동세보 〈http://www.andongkwon.or.kr〉, 2012. 이하 안동 권씨 가계도는 위의 두 족보를 참고 작성했다.

<표 4-1> 안동권씨 향리 가계의 영리 배출 양상

가계 \ 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인원	(%)	인원	(%)	인원	(%)
同正公	應錙系	4	(15)	6	(13)	15	(12)
棣達派	應錘系	3	(11)	9	(20)	46	(37)
副戶長	若水系	1	(4)	1	(2)	2	(2)
時中派	俊敏系	2	(7)	6	(13)	32	(26)
副正公	孝源系	2	(7)	9	(20)	9	(7)
通義派	成沖系	4	(15)	3	(7)	4	(3)
戶長公 大宜派	守倫系	8	(30)	8	(18)	14	(11)
戶長公 樞派	理系	3	(11)	3	(7)	3	(2)
합계		27	(100)	45	(100)	125	(100)

안동 향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선생안은 두 가지이다. 두 선생안은 『嶺營掾房先生案』[3]과 『安逸班先生案』[4]이다. 『嶺營掾房先生案』에는 경상감영의 육방 향리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安逸班先生案』에는 안동 관아에 근무한 육방리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澂 후손 중 상당수는 두 선생안에 이름을 올렸다. 두 선생안은 최상위 직책의 향리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들도 향리 직임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징 후손과 같은 명문 향리 가계의 구성원의 직임이 안동 관아의 육방리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들은 향직을 수행하지 못했던 향리 후손으로 보아야 한다.

3) 『嶺營掾房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4) 『安逸班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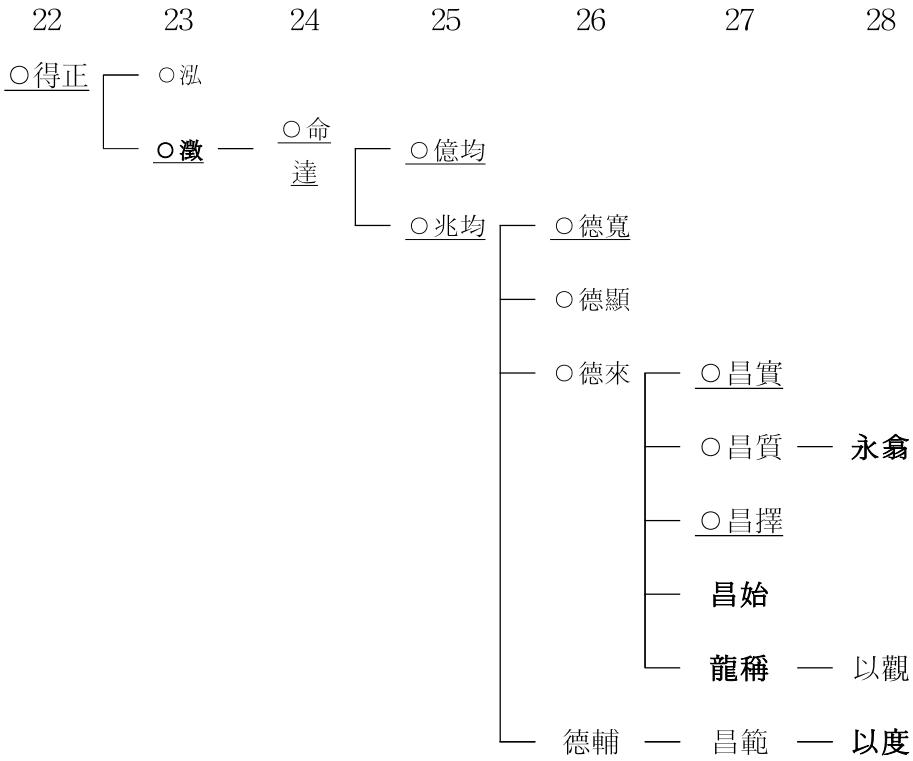

<그림 4-1> 안동 권씨 동정공파 가계도

*비고: ○는 『嶺營掾房先生案』에서 확인되는 영리, 밑줄은 『安逸班先生案』에서 확인되는 향리이다

澂 후손은 다수의 향리 및 영리를 배출하며 동정공파 가운데서도 핵심 향리 가계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명문 향리 가계에서도 주요 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로 추정된다.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조균은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세 아들만 영리가 되었다. 장남 덕관, 차남 덕현, 삼남 덕래는 영리를 역임했지만, 막내인 사남 덕보는 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덕래의 자식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장남 창실, 차남 창질, 삼남 창택이 영리가 되었지만 넷째 아들 창시와 다섯째 아들 용칭은 상층 향리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향리가 출생 순서대로 향직을 계승하고 남은 아들

에게는 그러지 못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중요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조균 후손 중 일부는 읍치를 떠난다. 새로 정착한 곳은 안동 읍치로부터 오늘날 도로로 10km정도 떨어진 풍산면 막곡동이었다. 조균의 후손이 풍산면 막곡동으로 퇴촌하고 그곳에 세거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안동 권씨 족보를 살펴보면 창시 이래로 그의 후손이 안동 豊山 幕谷에 繼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를 보면 창시의 직계 자손인 永琓, 啓用, 秉弘, 重鈺, 泰穆이 풍산 막곡에 묘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또 1914년 작성된 『安東郡 土地調査簿』[5]에도 창시 후손은 풍산면 막곡동에 다수 등장한다. 막곡동의 입향조 가운데 한 명인 창시는 1741년에 태어나 1813년에 생을 마감했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어느 시점 풍산면 막곡동으로 이거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의 후손이 이곳에서 최소한 1914년까지는 대를 이어 거주했다.

5) 『土地調査簿』는 안동시청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국학자료센터의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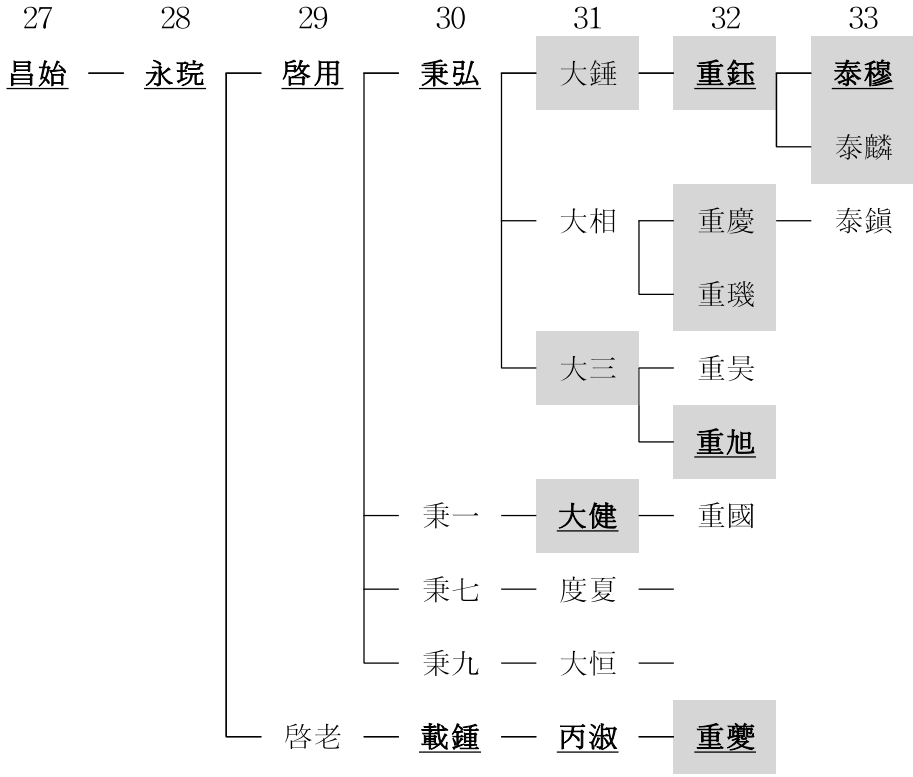

<그림 4-2> 창시 후손의 가계도

*비고: 음영이 처리된 인명은 『土地調査簿』에 豊山面 幕谷洞에 거주한다고 나타난 인물들이다. 밑줄과 진하게 표시된 사람은 무덤이 풍산 막곡에 있는 자들이다. 배우자의 묘소가 풍산 막곡인 경우도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창시의 둘째형 창질과 그의 아들 영흡 역시 막곡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준호구와 호구단자에 나타난 거주지는 아래 <표 4-2>와 같다.[6)]

6) 이훈상, 1987, 「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 Ⅰ-『安東鄕孫事蹟通錄』의 刊行者 權永翕 家門과 그들의 文書-」, 『考古歷史學志』 3.

<표 4-2> 창질과 영흡의 거주지

정보 / 자료	統首	발급 연도	거주지
준호구	창질	1777	府內 城也洞
준호구	창질	1792	府內 城也洞
준호구	영흡	1795	西後面 松夜下里
호구단자	창질	1797	府內 城也洞
준호구	창질	1798	西後面 松夜下里

1777년 발행된 준호구에 따르면 당시 44세의 창질은 읍치인 城也洞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야동은 안동의 명문 향리들이 다수 거주했던 法尙洞의 옛 지명이다.[7] 창질은 향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관아의 인근인 성야동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95년 발급된 준호구에 따르면 창질의 아들 영흡의 거주지는 西後面 松夜下里이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부내면 성야동에 거주했지만 영흡은 중요 향직을 맡지 못하여 특정 시점에 송야하리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창질 또한 1798년에는 아들이 살고 있던 서후면 송야리로 옮겨갔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65세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은 시기로 보인다. 이들이 移居한 송야하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그러나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송야하리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바로 송야천과 송야사거리와 같은 지명이다. 현재 송야사거리는 풍산읍 막곡리에 속해있고, 오늘날에도 안동에서는 송야하리라고 하면 흔히 막곡동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창질, 영흡, 창시의 退村은 같은 곳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누가 처음 풍산면 막곡동으로 이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창시와 그의 조카 영흡은 읍치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새로 정착한 송야리에는 조선 중기 인물인 松巖 權好文을 배향한 靑城書院이 있고 그들의 후손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권호문의 후손은 풍산면의 북쪽에 위치한 西後面 校洞에

7) 안동민속박물관, 2002, 『안동의 지명유래』, 안동민속박물관.

<그림 4-3> 안동 지도(출처: 네이버지도)

거처하는 것으로 나온다. 『安東郡 土地調査簿』에 따르면 권호문의 13세손 權禹鉉은 서후면 교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서후면 교동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宗中財産도 그의 이름 아래 기재 되어 있다. 권우현의 동생 世鉉, 권우현의 아들 寧甲 역시 서후면 교동에 등장한다. 교동에는 총 70명의 토지소유자가 등장하는데 그중 20명만이 권씨이다. 풍산 류씨의 동성촌락으로 알려진 풍산면 하회동에는 273명의 토지소유자가 등장하고 그중 220명이 류씨였다. 따라서 교동에 등장하는 권호문 후손은 상대적으로 족세가 약한 양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풍산면 막곡동과 서후면 교동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다. 권호문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교동에, 창시 후손은 막곡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의 거주지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다. 풍산면 막곡동은 읍치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즉 비록 관과의 직접적인 끈은 끊어졌더라도 형제와 친척들이 상층 향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풍산면 막곡동으로 거처를 옮긴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한 활동 중 하나는 과거 응시였다. 조선후기 과거 응시자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8] 늘어난 과거 응시자에는 향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高宗대 조정에서는 향리들이 과거장에 출입해 폐단이 생

기니 그들의 과거 응시를 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기도 했다.[9] 풍산면 막곡리로 거주지를 옮긴 조균의 후손 중에서도 과거에 응시해 합격한 자들이 있다. 덕래의 5남 용칭, 창질의 아들 영흡, 창범의 아들 이도가 바로 그들이다. 용칭은 1789년(정조 13) 式年試에서 進士 3등 44위로, 영흡은 1801년(순조 1) 식년시 生員 2등 14위로, 이도는 1801년(순조 1) 식년시 진사 3등 13위로 각각 합격했다.[10] 합격 당시의 나이를 찾아보면 용칭은 30세, 영흡은 43세, 이도는 34세였다. 관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글과 셈에 능해야 하기 때문에 향리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다. 그러나 과거를 위한 공부와 향리로서 필요한 공부는 달랐다. 세 명은 모두 주요 향직에서 배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용칭, 영흡, 그리고 이도는 권세있는 향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계속 과거 공부에 전념한 듯하다. 이렇게 한 가계에서 여러 명의 급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들 외에도 향직에서 배제된 많은 향리 후손이 과거공부에 매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원, 진사시의 합격이 관직 진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합격 후에도 이들은 꾸준히 안동에서 행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관직 진출을 도모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18세기 후반 향리 후손이 과거에 합격한다고 관직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요직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연조귀감속편』을 간행한 상주의 향리 후손 李明九 역시 향직을 수행하지 않은 자로 관직 진출의 열망이 상당했다. 이명구는 중앙의 여러 요직을 거친 申錫愚가 경상감사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았다. 이후 신석우를 통해 중앙의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鄕薦, 道啓 등을 통해 관직 진출을 도모했다. 그러나 끝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1]

주요 향직에서 배제된 용칭·영흡·이도는 다른 방식으로 지위를 유지하

---

8) 박현순, 2014, 「19세기 문과에 대한 고찰」,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9) 『承政院日記』 고종 9년 4월 30일, “各司吏胥, 聚會點考, 以防冒入借書之弊, 則吏胥之不得赴擧, 自是典式也。 夫以吏胥而不許冒入, 則京鄕宜無異同, 而名在吏案, 肆然赴試, 身通朝籍, 厭然供仕者, 豈非猥濫無嚴之甚乎? 已往固不必追究, 從此以後, 各道吏屬之現帶役名者, 毋敢赴擧事, 申明著式, 以定防限, 以嚴紀綱, 何如?”

1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

11) 이훈상, 2019, 「19세기 향리 지식인 이명구의 지적 여정과 지방 吏胥들에 대한 미완의 역사 프로젝트 “연조귀감속편”」, 『진단학보』 132.

려 했던 것 같다 즉 이들이 과거 공부에 몰두한 것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생원·진사시의 합격이 관직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향촌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컸다. 조선후기 생원 진사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12] 안동에서도 향직에서 배제된 수많은 향리 후손이 평범한 농민으로 전락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이 향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후대에 자료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 합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 권씨 일부 향리 가계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출현한 것은 이들의 능력이나 재능이 출중한 점도 있었겠지만, 다른 가계와는 구분되는 경제력도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향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같지만, 그들은 대대로 영리를 배출한 유력 향리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타 향리 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물려받았다. 즉 출발점이 달랐다.

이들의 경제력은 창질과 그의 아들 영흡에게 발급된 준호구를 통해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창질과 영흡에게 발급된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모두 5건이 전해지고 있다.[13] 대부분 훼손이 심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나, 1792년 창질에게 발급된 준호구는 전체 내용이 온전하다. 앞의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질은 영리를 역임했으나 그의 아들 영흡은 주요 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1792년 당시 창질의 나이는 62세로 그는 총 42口(奴22, 婢20)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시기 경상남도 곤양에서 향직을 수행한 慶州崔氏의 경우 소유 노비의 수가 가장 많을 때 12구에 지나지 않았으며[14], 초계의 향리 변씨는 18구 이상을 소유하지 못했다.[15]

---

12) 이수환, 2010,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 시민강좌』 46.

13) 이훈상, 1987, 「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Ⅰ-『安東鄕孫事蹟通錄』의 刊行者 權永翕 家門과 그들의 文書-」, 『考古歷史學志』 3.

14) 윤명두, 2005, 「朝鮮後期에 있어서 兩班層의 鄕吏職 수행의 事例硏究 : 곤양면 慶州崔氏 古文書에 기초해서」, 경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5) 최승희, 1983, 「朝鮮後期 鄕吏身分移動與否考 2 -草溪卞氏 鄕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硏究」『韓國文化』 4.

이런 현상은 앞서 살펴본 용궁현과 의성현의 양안에도 그대로 발견된다. 향리는 양반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력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향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용궁현 읍내면에서 1결 이상의 토지를 가진 개인은 총 71명이었다. 그 중 48명이 유학과 같은 양반 직역자이며 22명이 향리이다. 의성현 북부면에 1결 이상의 토지를 가진 개인은 총 84명인데 그 중 20명이 향리였다.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영리를 여러 대 역임한 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소수 향리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지역 향리에 비해 많은 노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요 향직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富는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이들은 과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 권씨 향직 탈락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선양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1808년 안동 풍산 막곡동에 권희학을 모신 祠宇인 鳳剛影堂이 건립되었다. 권희학은 안동의 향리 출신으로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이 발발했을 때 都巡撫使 吳命恒을 따라 안성·죽산 등지에서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훗날 권희학은 奮武功臣 3등에 임명되었다. 봉강영당 건립은 1788년(정조 12) 권희학 후손에 의해 처음 논의가 이루어졌다.[16] 그러나 이때 권희학 본손은 영락하고 쇠잔해 진행되지 못하다가, 17년 후 1805년 재논의가 시작되고 1808년 완공되었다.

16) 영당의 건립과정은 한국국학진흥원, 2007,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성심: 이수환, 2012 앞의 논문을 참조해 작성했다.

<표 4-3> 봉강영당 創建時 有司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都有司	金壽鴻	監役	權永翕	運木	權永湜	司書	權永濟
都廳	權昌質		權彛中		權永年		權永游
	權諫		權心度	運凡	權永震		權永漢
都辦	權昌擇		權彛經	運石	權啓宇		權啓晃
都監	權昌始	鳩財	權昌燮	辦供	權啓祚		權啓晟
監役	權昌稷		權永奎	日記	權龍稱		權啓昇
	權龍稱		權啓光		權永翕		權秀崑
	權昌模	鳩材	權永周		權心度		權永淳
	權彛用		權永斗	司書	權永觀		權永協

*비고: 음영이 표시된 인물은 향직을 이행한 자들이다.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강영당 유사안』[17]에는 총 36명이 등장한다. 이들 유사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동권씨 동정공파이며, 안동의 다른 향리 가계는 참여하지 않았다.[18] 위의 36명 가운데 음영이 들어간 곳은 중요 향직을 역임한 향리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다. 이 명단에 기록된 8명의 향리를 제외한 나머지 향리는 주로 재원을 부조하는 것으로 건립에 기여했다.

<표 4-4>는 봉강영당 건립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조가 들어온 어서각 낙성례의 부조처와 금액이다. 음영이 들어간 곳은 향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곳이다. 향리와 관련된 조직에서 부조한 금액은 상당히 컸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안동의 향리로서 큰 공훈을 세운 권희학을 현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창건 과정에서는 현직 향리들의 역할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17) 이수건, 1990,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457~458쪽.
18) 이훈상, 2006, 「조선후기 경상도 監營의 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대동문화연구』 55, 413~414쪽.

<표 4-4> 어서각 낙성례 부조자와 부조액

부조자	부조금	부조자	부조금	부조자	부조금
安逸班	25냥	權夏集門中	2냥	金東詠	1냥
巡營房 養老所	20냥	權興泰門中	2냥	權正懿	1냥
星廳	30냥	權正均門中	2냥	九潭 金壽鴻	2냥
巡營房	10냥	軻川權昌炯門中	2냥	金道默 兄弟	2냥
兵營房 養老所	3냥	赤池姜氏門中	2냥	法田 姜文奎	1냥
兵營房	5냥	大谷金氏門中	2냥	權昱	1냥
將官廳	15냥	秋山朴氏門中	5냥	支洞權宗周	5전
旗牌官廳	10냥	大田權宗國門中	2냥	大溪金時國 兄弟	2냥
吏政廳	3냥	大溪金氏門中	2냥 5전	大溪金宅範 兄弟	2냥
本府裨將廳	3냥	日落權氏門中	7냥	治洞李憲裕	5전
鎭營裨將廳	3냥	支洞權氏門中	5냥	漢湖金漢範	2냥
書役所	5냥	殷豊李氏門中	4냥	東城大宗中	10냥
祚溪書堂	15냥	權尙彦門中	3냥	東城小宗中	5냥
金谷書當	20냥	權尙謙門中	3냥	巖山權宅麗門中	3냥
錦春堂	1냥	權啓根	3냥	巖山權亨玉門中	3냥

*비고: 음영 처리된 곳은 향리와 관련된 곳이다.

봉강영당 건립 과정은 『創建日記』[19]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표 4-5>에 공사의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20] 『創建日記』에 따르면

19) 한국국학진흥원, 2007 「봉강영당 창건일기」,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성심,

20) 이수환, 2012, 「조선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구사학』 106, 223~224쪽에서 재인용.

<표 4-5> 봉강영당 건립 과정

연	월.일	내용
1805	1.3.	**용칭,영흡,이도,창시,창모** 등 수십인이 모여 봉강영당 건립 논의
	1.15	**창시**의 주도로 목재와 기와 모음
	2.2	**용칭,영흡,이도** 등이 참석해 영당 터를 傍孫이 많은 杜谷으로 정함
	2.5	**이중**이 터를 파는 일, 주춧돌 놓는 일, 기둥 세우고 들보 올리는 일, 기와 덮는 일의 吉日을 받아옴
	4.2	지신제 후 開基
	4.15	礎石을 놓기 시작함
	4.24	上樑祭
	4.29	기와 덮음
	5.1	흙일 시작
	5.10	영당과 御書閣 완공
	5.10	落成禮를 행함. 부조금 400여 緡이 들어옴
	10.1	재원을 구하기 위해 **창시, 영흡**을 각처로 보내 부조를 받음
	11.2	현판을 새김
1806	4.2	畵工僧을 시켜 丹靑을 함
	10.1	본손으로부터 백미 30斗와 별도의 金 80緡을 수합
1808	10.1	어서와 영정을 받들어 내는 吉日을 받음
	10.7	빈객 접대를 위한 집물을 마련. 방손의 각 집에 떡과 양식을 주어 조석으로 손님 접대
	10.9	**창시**와 **용칭**이 가마와 龍亭을 가지고 感顧堂으로 감
	10.1	어서는 龍亭에, 영정은 가마에 싣고 대열을 맞춰 이동
	10.11	원근의 사림이 차례로 도착하여, 公事員과 諸執事를 분정한 후 영당에 도착해 享禮를 거행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권용칭, 권영흡, 권이도, 권창시 등이다. 이들은 모두 향직을 수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반면 현직 향리의 등장은 전혀 없다. 현직 향리는 부조를 하고 유사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건립의 주요 역할은 권용칭, 권영흡, 권이도, 권창시 등이 도맡아서 했다. 봉강영당 건립과

정에서 현직 향리의 역할이 컸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봉강영당의 건립 주체들의 형제와 가까운 친척들이 대다수 상층 향리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봉강영당 건립과정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봉강영당은 권희학의 傍孫 용칭, 영흡, 이도, 창시 등의 주도와 안동과 인근 지역민의 부조를 통해 완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봉강영당에서의 祭享은 건립 후 50여 년간 단 5차례에 불과했고, 완공 후 6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62년에 본손이 거주하는 春陽으로 이건되었다. 제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외적 원인은 '봉안식 이후의 祭儀는 십수년을 축적해야 제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듯이 경제적인 문제였다.[21] 제사뿐만 아니라 영당의 관리 역시 매우 소홀했다. 『鳳剛影堂 移建日記』에는 "(봉강영당 건립 후) 세월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맡아 지키는 일은 점점 해이해지고 재물이 마구 지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비용은 더욱 줄어들고 任員이 오래 비어 있어서 선비들이 방문함에 황량하기가 마치 잡초덤불이 우거진 듯하다"[22]고 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봉강영당을 건립하고도 제향 및 관리에는 소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로 경제력이 쇠락해 제사를 지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1805년에 시작되어 4년간 지속되었고, 4년간 소모된 돈이 약 930냥에 이르렀다. 각지의 부조를 받아 건립되었지만 건립 주도층의 재력이 가장 많이 투자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건립 후 건립 주도자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제향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봉강영당이 건립된 후에도 영당 건립 주도층이 『安東鄉孫事蹟通錄』[23]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영당을 관리조차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는 그들이 봉강영당의 관리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건

---

21) 이수환, 위의 논문, 2012, 29쪽.

22) 한국국학진흥원, 「봉강영당 이건일기」, 『국역 조선시대 서월일기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성심, 2007.

23) 『安東鄉孫事蹟通錄』, 장서각 청구번호 (K2-436).

립 주도층과 권희학 본손들과는 족적인 결속력이 크지 않았다. 권희학의 본손과 봉강영당 주도층은 10촌 관계이다. 게다가 권희학 후손이 봉화 춘양으로 이거하고 향리 직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두 가계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6>은 두 가계에서 사용한 돌림자를 나타내 보았다. 23대, 24대에 氵과 命을 각각 돌림자로 공유했던 것과 달리, 권희학이 속한 25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항렬자를 사용하였다. 26대에는 德을 항렬자로 공유하지만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이 26대에 동일 항렬자를 공유했더라도 27대에는 다시 완전히 다른 항렬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봉강영당 건립의 주체들은 자신들과 그다지 가깝지 않은 권희학을 현창하는 사우를 건립했던 것이다.

<표 4-6> 泓, 澂 후손 항렬자 비교

항렬자 / 세대	泓 후손	澂 후손	대표인물
23	氵	氵	泓,澂
24	命	命	
25	喜	均, 億	喜學, 兆均
26	德	章, 德	
27	言(부수, 외자)	昌	昌始, 昌質
28	彛	景, 永, 以	永翕, 以度

조선후기 양반은 자신들의 顯祖를 현창하는 書院과 사우를 건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족을 결합하고 家格을 높이려 했다. 봉강영당 건립 주체 역시 양반과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양반과 비교해서 향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顯祖의 존재였다. 이들이 향촌에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顯祖' 권희학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다. 영당을 건립함으로써 건립 주체의 가계가 명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영당으로 향촌에서 지배층으로서의 위신을 굳건히 하려 했던 핵심 목표는 이미 충족되었다. 다만 제사와 영당의 관리는 권희학의 본손 담당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춘양으로 이건되기 전 제향은 1820년, 1830, 1834, 1842, 1846년에 총 5회 실시되었다.[24] 다섯 차례 가운데 4차례는 1830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권희학 본손들이 경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권희학 후손은 권희학 사후 침체를 거듭하며 사패전답과 노비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후 1820년에 이르러 10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패전의 상당수를 되찾을 수 있었다.[25] 따라서 1830년 이후의 제향은 권희학의 본손이 사패전을 되찾고 경제력을 회복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봉강영당은 건립 약 60년

24) 이수환, 2012, 앞의 논문, 229쪽.
25) 김인호, 2014, 「18~19세기 안동 향리 權喜學家의 賜牌訴訟」, 안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후인 1861년 본손의 거주지인 春陽으로 移建되었다.

풍산면 막곡동에 거주한 향리 후손은 1824년 『安東鄕孫事蹟通錄』[26]을 발간한다. 『安東鄕孫事蹟通錄』은 안동 향리 가운데 행적이 두드러진 인물의 傳記를 수록한 책이다. 『安東鄕孫事蹟通錄』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바로 序文과 跋文의 필진이다.[27] 이들은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핵심 인사들이다. 대표적으로 金載瓚, 金學淳, 金履陽은 당대 안동김씨 노론의 실세들이다. 그 외에도 중앙 요직을 역임한 다수의 노소론 인사들이 서발문의 필자로 참여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정치기 핵심 인사들이 향리 문집의 서발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컸다고 보인다. 즉 중앙 정계 인사의 『安東鄕孫事蹟通錄』서발문 참여는 안동이 남인 세력의 근거지였다는 점과 밀접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론 집권 세력은 1728년(영조 4)에 노론계의 대표인물인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고자 했지만, 남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28] 이 같은 상황에서 노론 핵심세력의 안동향리에 대한 지원은 결국 안동 남인들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26) 『安東鄕孫事蹟通錄』, 장서각 청구번호 (K2-436).

27) 『安東鄕孫事蹟通錄』 서발문의 작성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훈상, 1990,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을 참고해 작성했다.

28) 정만조, 1982, 「영조 14년의 안동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한국학연구』 1 ; 정진영, 2015,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72; 정진영, 2015,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韓國史硏究』 171.

<표 4-7> 『안동향손사적통록』 서문·발문의 저자

인물 / 글	성명	본관	거주지	당파	관직	비고
서문	李野淳	眞寶	예안	남인	掌樂院正	이황 9대손
	金載瓚	延安	한양	노론	領中樞府事	영의정을 역임한 金燈의 아들
	韓用龜	淸州	한양	노론	領中樞府事	영의정 역임
	洪義浩	豊山	한양	남인	禮曹判書	
	申緯	平山	한양	소론	戶曹參判	
발문	權中執	安東	黃澗	노론	郡守	
	洪秉翼	南陽	한양	노론	前司僕寺檢正	
	洪耆燮	南陽	한양	노론	參判	
	徐長輔	達城	한양	노론	成均館大司成	
	李光文	牛峰	용인	노론	吏曹判書	
	洪羲俊	豊山	용인	노론	吏曹判書	
	金學淳	安東	용인	노론	吏曹判書	
	洪起燮	南陽	용인	소론	吏曹判書	
	權丕應	安東	용인	노론	吏曹判書	
	尹秉烈	海平	용인	노론	經筵侍讀官	
	趙貞喆	楊州	과천	노론	議政府左參判兼知經筵事	
	權敦仁	安東	黃澗	노론	承政院右承旨	영의정 역임
	尹致奎	首陽	한양	노론	前郡守	
	李翊會	全義	한양	노론	禮曹判書	安東府使 역임
	金熙周	義城	안동	남인	兵曹參判	大山 李象靖 문인
	柳相祚	豊山	안동	남인	判書	류성룡 8세손
	柳台佐	豊山	안동	남인	參判	류성룡 후손
	吳翰源	錦城	昌平	노론	刑曹參判	
	申在植	平山	昌平	노론	吏曹判書	
	金履陽	安東	한양	노론	吏曹判書	

	李一淵	全州	?	?	縣監	
	徐萬淳	達城	한양	소론	參判	

『安東鄉孫事蹟通錄』의 서문·발문에 참여한 두 번째 집단은 바로 안동에 거주했던 명문 양반이다. 서문·발문 작성에 참여한 남인은 총 5명으로 노론·소론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의 후손, 대산 이상정의 문인 등 안동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핵심 양반이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 동기는 우선 향리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생각된다. 향리가 행정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비록 명문 양반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와 같이 『安東鄉孫事蹟通錄』의 간행자가 비록 더이상 중요 향직을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직 향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29]

본고에서 더 관심을 갖는 점은 바로 이 책의 편찬자다. 이 책의 편찬은 영흡, 용칭, 이도, 啓緯(영흡의 子)가 주도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향직에서 배제되고, 과거에 응시하며 읍치를 떠난 자들이다. 『安東鄉孫事蹟通錄』의 편찬은 자기 조상을 현창함으로써 향리 후손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확장 시켜나가려 한 사업이다. 다시 말해 중앙의 핵심 노·소론 인사들과 남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가문의 현창과 함께 자신들의 관계망을 과시하고자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安東鄉孫事蹟通錄』의 발간에도 봉강영당 건립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향리의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향직을 수행하는 향리들은 조상을 현창하거나 가문의 격을 높이지 않아도 향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향리들의 권력은 공권력을 통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향리에게는 조상을 현창하는 사업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관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아니면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현실 대응

29) 지금까지 살펴 본 『安東鄉孫事蹟通錄』의 서발문 작성자의 참여 동기는 이훈상, 1990, 앞의 책을 참고해 작성했다.

역시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2. 향직 탈락자의 정체성

막곡동에 정착한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은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고 보인다. 과거에도 합격하고,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는 큰 사업도 추진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비록 향직에서 탈락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 여기서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본인들을 어떤 존재라 인식했는지, 또 주변에서는 이들을 어떤 자들로 인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향리들은 양반이 되기 위해 읍치를 떠났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들은 더 이상 향리 직임을 수행하지 않았고, 읍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향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安東鄕孫事蹟通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安東鄕孫事蹟通錄』은 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동 향리의 전기를 모은 책이다.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수록된 향리는 대부분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다.[30] 총 66명의 향리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36명이 안동 권씨이며, 29명이 안동 김씨 향리이다. 이곳에 기록된 향리 중 상당수는 영리나 호장과 같은 최상층 향리 직임을 수행했다. 일부는 士人이나 진사와 같이 과거 준비를 하거나 과거에 합격한 자들도 보인다. 이처럼 이 책은 안동의 향리 조상 중 행적이 두드러지는 자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30) 〈표 4-8〉은 이훈상, 1990, 앞의책 84～85쪽에서 재인용했다.

<표 4-8> 『安東鄉孫事蹟通錄』에 수록된 향리

순번	성명	직임, 관직	행적	순번	성명	직임, 관직	행적
1	姜翰	進士	이황과 교류	34	權啓萬	營吏	繕寫
2	權敏義	進士	이황과 교류	35	權日彬	營吏	繕寫
3	權山虎	戶長	錄勳宣武	36	權命祥	營吏	繕寫
4	權慶星	判官	錄勳宣武	37	權永淳	營吏	繕寫
5	權完元	戶長	節義	38	金東珞	營吏	繕寫
6	權克秀	出身	錄勳振武	39	金璜	戶長	孝行, 旌閭
7	權用休	戶長	殉節, 旌閭	40	金存水	戶長	文章
8	權仲英		孝行, 旌閭	41	金就成	營吏	書藝
9	權孝曾	士人	殉節	42	金就英	生員訓導	書藝
10	權運亨	營吏司果	軍功	43	金肇		書藝
11	權後重	護軍	節義	44	金之燁		書藝
12	權是亮	進士	文藝, 學行	45	金棨		書藝
13	權舜經	生員	學行	46	金石諧		書藝
14	權命達	贈 參議	孝行, 復戶	47	金鈴	戶長	軍功
15	權喜炳	贈 參議	孝行	48	金獻復	出身	節義
16	權縡	進士	學行	49	金得聲	出身	錄勳靖國
17	權斗徵	處士	學行	50	金就雄	出身	軍功
18	權喜學	花原君	奮武功臣	51	金遠鳴	戶長	孝行, 旌閭
19	權運萬	副司直	吏務	52	金麗鳴	戶長	節義
20	權萬亨	士人	軍功	53	金聖鼎	營吏	節義
21	權台式	贈 參判	文藝	54	金時俊	進士	學行
22	權時大	同樞	詩名	55	金宇俊	生員	學行
23	權載運	處士	學行	56	金是鈺	營吏, 進士	學行
24	權啓運	處士	學行	57	金志恒	戶長	吏務
25	權德恒	進士	學行	58	金運祚	營吏	行檢
26	權時規	同樞	吏務	59	金起祚	營吏	行檢
27	權德寬	同樞	淸廉	60	金有亨	僉樞	錄勳揚武
28	權昌植	同樞	學行	61	金漢龍	營吏, 同樞	錄勳揚武

29	權德來	贈 參判	學行	62	金泰崙	營 吏, 贈 參議	學行
30	權達時	士人	學行	63	金觀錫	進士	書藝
31	權鳳章	士人	學行	64	金思默	戶長	孝行
32	權鳳彬	士人	學行	65	金信澤	戶長	孝行 復戶
33	權聖範	戶長	孝行, 旌閭	66	金之琓	戶長	孝行 復戶

향리의 전기를 모아 서적을 발간하는 활동은 다른 지역서도 발견된다. 尙州 향리 후손인 李震興도 『掾曹龜鑑』을 편찬했다. 이 책을 편찬한 이진흥 역시 향직을 수행하지 않은 향리 후손이었다. 『掾曹龜鑑』 역시 『安東鄕孫事蹟通錄』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귀감이 되는 향리의 傳記와 향리의 역사가 책의 주요 내용이다. 禮泉에서도 예천 향리의 전기를 모아 『襄陽耆舊錄』[31]을 편찬했다. 즉 읍치를 떠나 과거를 준비했던 향리 후손이었지만 자신들은 향리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安東鄕孫事蹟通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들을 鄕吏의 子孫 즉 鄕孫이라 지칭했다. 『掾曹龜鑑』의 '掾' 역시 향리라는 의미이다. 그들이 건립한 봉강영당 역시 향리로서 큰 공을 세운 권희학을 현창한 사우이다.

이런 활동은 양반을 지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전기 양반은 대부분 고려시대 향리의 후손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속 향리로 남아 지방 관아의 사무를 담당하며 吏族이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유학을 공부하며 과거를 준비했고 이후 士族이 되었다. 두 집단은 모체가 같았기 때문에 鄕案에 향리의 本孫, 女孫, 外孫도 입록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초기에는 사족과 이족 사이에 큰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집단 사이에는 동족이라는 의식이 약해졌고, 16세기 후반 향리 후손은 더 이상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다.[32] 이 시기 이후 양반과 향리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이런 현상은 조선후기까지 이

31) 『襄陽耆舊錄』, (奎 古4653-13)
32) 이수건, 1979,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정진영, 1998, 「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어져 향촌에서 인정받는 양반은 향리와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어야만 했다. 그런데 풍산면 막곡동에 정착한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은 더 이상 향직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향리 후손이라 정의 내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닌 훌륭한 향리의 후손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판단했다. 이같이 안동 막곡동에 정착한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이 과거를 보고, 사우나 영당을 건립하고, 조상을 기리는 서적을 발간하는 것을 두고 '양반 지향'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막곡동 안동 권씨 후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로 이들의 혼반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안동 권씨 족보를 통해 막곡동으로 이거해 과거에 합격한 3명의 아들과 손자의 혼반을 확인해 보았다. 총 52명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성관은 아래 <표 4-9>와 같다. 그러나 이들의 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름만으로는 방대한 족보에서 특정 인물의 가계와 파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가계를 비록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대충은 어떤 집단과 혼인관계를 맺었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표 4-9> 막곡동 거주 안동 권씨 과거 합격자 자손의 혼반

배우자 성관	인원
安東 金	4
星州 都, *仁同 張*, 順興 安, 聞韶 金(義城 金 포함), 興海 裵(曲江 裵 포함)	3
東來 鄭, 英陽 南, *慶州 李*(月城 李 포함), 眞城 李, 一直 孫, 平山 申	2
江陵 金, *慶州 金*, *公州 李*, *金寧 金*, 丹陽 禹, 達城 徐, *寶城 吳*, 奉化 琴, *商山 金*, 順天 金, *寧海 朴*, *禮安 金*, 醴泉 林, 完山 李, 月城 孫, *恩津 宋*, *淸道 金*, *竺山 全*, *平海 黃*, *咸陽 朴*, 朴氏(본관 미상)	1

*비고: 밑줄 친 성관은 『座首別監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성씨

조선후기 안동의 鄕案과 『座首別監案』에는 대략 46개 성씨와 80여 성관이 등장한다. 이들을 안동 향촌사회의 지배집단으로 이해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7, 18세기 이후 등장하지 않거나 새롭게 편입되는 20개 성씨는 수적으로 거의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반면에 9개 성씨, 즉 安東 權, 義城 金, 英陽 南, 豊山 柳, 全州 柳, 禮安 李, 眞寶 李, 固城 李, 淸州 鄭氏는 향안 등재자와 좌수별감, 대소과 합격자의 80%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을 안동사회의 유력한 양반가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33]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52명의 성관과 안동 향촌사회 양반 성씨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양반가와 혼반이 닿았는지 알 수 있다. 의성 김씨, 영양 남씨 등과 같이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성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안동의 유력 양반가문이 아니다. 특히 밑줄 친 16개 성관은 아예 향안과 『座首別監案』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80개의 성관과도 겹치지 않는다. 즉 읍치에서 막곡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안동 권씨

33) 정진영, 2001,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2) -안동 향안의 입록인물 검토-」, 『대동문화연구』 38, 261쪽.

향리 자제들의 혼반은 안동의 양반가에 닿지 않았던 것이다. 안동의 상층 향리는 주로 향리 가문과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과[34], 3~4명과 혼인을 한 안동 김, 성주 도씨가 각 지역에서 유력 향리 가문임을 생각한다면 의성 김씨, 영양 남씨도 명문 양반가문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고 사우를 건립하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동의 양반들은 그들을 동격으로 파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인정받는 양반이 되었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막곡동에 정착한 안동 권씨 향리 후손은 실패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양반을 노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리 후손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내세웠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 삼는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안동 권씨 향리 후손들이 막곡동에 정착 한 후 20세기 초반까지 이 마을에서 높은 위상을 가졌던 것이 확인된다. 『안동군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풍산면 막곡동에 거주했던 토지 보유자는 83명이고, 그 가운데 43명이 권씨이다. 막곡동에 거주한 토지소유자는 총 83명이고 이들의 토지는 모두 299,677평이다. 그 중 74%에 해당하는 220,342평이 권씨 소유지였다. 즉 막곡동에 거주한 안동 권씨 향리 후손들은 처음 정착한 뒤 100여년이 지난 1914년까지 이 마을에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했다. 물론 조선시대 경제력이 사회적 위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과 달리 경상북도 봉화에 정착한 권희학 후손은 사회적 지위 유지에 실패한다. 권희학은 향리 후손으로 수령을 역임하고 공신에 책봉되는 등 향리로서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한다. 권희학과 그의 후손은 안동을 떠나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있는 奉化 春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양반세가 강한 안동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다.[35] 준호구를 통해 그들의 직역을 확인해 보면 권희학의 아버지 命迥은 처음에는 '鄕吏'라는 직역을 사용했지만 권희학이 공훈을 세우며 '嘉

34) 이훈상, 1990, 앞의 책, 117~118쪽.
35) 이수환, 2012, 앞의 논문.

善大夫'로 바꿔 기재되며 그의 부인과 며느리 이름에 사용하던 召史 역시 사라지고 본관과 성씨를 표기했다.[36] 그러나 권희학 사후 이들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게 된다. 권희학은 총 5결 81부 5속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신난 진압의 공으로 받은 賜牌地와 賜牌奴婢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권희학은 사패지를 사패노비들과 양인들에게 경작시키고 지대를 걷었는데, 권희학의 아들 덕린이 죽은 1728년 이후로는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았다.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패지의 관리를 위해 종이나 청지기를 보냈으나 그곳의 경작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대를 내지 않고, 자신들의 물건처럼 放賣하기도 했다. 결국 권희학의 사후 60년 후에는 祭需도 마련하지 못할 형편에 처했다.[37] 권희학 사후 거주지도 옮기면서 위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권희학의 사우는 본손이 거처하는 봉화가 아닌 풍산면 막곡동에 건립되었다. 이같이 뛰어난 공훈과 업적을 가진 권희학의 후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반면에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여러 활동을 통해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까지 그 마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들의 정착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6) 김인호, 2014, 앞의 논문, 5쪽.
37) 이수환, 2012, 앞의 논문, 19~20쪽.

결론

지금까지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향리 가계의 분화와 지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향리는 향직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리의 정원은 정해져 있었고 모든 향리 가계원이 향리 직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 향리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직임 수행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향리들은 향직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는지, 그리고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 1절에서는 조선후기 향리의 수 증가가 호적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으며, 향리는 어떤 직역으로 등장했는지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향리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향리의 수가 늘어난 현상은 호적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호적에는 유학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읍치 호적에는 유학의 수가 그리 증가하지 않는다. 향리 역시 유학이 아닌 향리의 직역으로 등장했다. 향리는 다양한 직역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공생이라는 직역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공생은 고려시대 향공 제도를 통해 선발된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려시대 지방관은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계수관시를 열었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향공이라 불렀다. 향공에 선발된 공생은 대부분 향리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공생은 향리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조선의 개국 후 향공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공생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상층 향리부터 하층 향리, 더 나아가 향리 예비군까지 모두 공생이라는 직역으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공생은 고려시대 과거를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관료 예비군을 의미하는 유학과 의미가 유사했다. 이런 까닭에 향리는 유학이라는 직역 대신 공생으로 호적에 등장했다.

2절에서는 대구의 주요 향리 성관과 그들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호적의 향리 수가 급증하는 동시에 향리를 배출한 성관 역시 늘어난다. 대구

호적에는 수많은 향리 성관이 등장하며 특정 성관이 우위에 서지 않았다. 조선후기 대구의 어떤 성씨도 전체 향리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향리 직역에 상하층 향리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인근 군현에서도 상층 직임은 소수의 가계에서 독점하고 하층 직임은 여러 성씨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대구의 상층 향리 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호적의 호적색과 안일호장의 성관을 확인해 보았다. 달성 서씨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호적색과 안일호장을 배출했다. 즉 달성 서씨는 대구 관아에 근무한 여러 향리 성씨 가운데 가장 위세가 높은 성관이라고 볼 수 있다. 달성 서씨가 가장 힘 있는 향리 성씨라 하더라도 그들이 차지한 향리 직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은 달성 서씨 향리 구성원 중 일부는 향리가 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2장 1절에서는 향리 후손은 향리가 되는 것을 선호했을까, 아니면 향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까 에 대한 답을 구해보았다. 조선후기 향리 직임을 두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읍에서는 향리를 더욱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했다. 부자가 동시에 입사한다거나, 세 아들이 동시에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향리가 향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자기 아들을 향리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향리는 단순한 행정 사역자가 아니었다. 부임지의 사정에 밝지 못한 수령은 한 마을에 세거하며 실무를 처리했던 향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향리는 수령을 도와 관아의 대소사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며 일읍의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향리는 자신의 직임을 자기 자식에게 먼저 계승했다. 이 과정에서 향리 직임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향리들이 향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만큼 큰 위기였다.

2장 2절에는 향리 가계의 분화를 살펴보았다. 명문 향리 가계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모두 향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구 관아에서 요직을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의 경우 27%만이 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읍치에 남아 관에 의지해 살아가기도 하고 외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 대구 감영의 영인리청

향리를 배출한 달성 서씨 학유공파의 경우 73%가 향리가 될 수 있었다. 향직에서 배제되는 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읍치를 떠난 자들도 거의 없었다.

3장 1절에서는 향직에서 배제되어 외촌에 정착한 두 가계를 추적해 보았다. 상층 향리를 다수 배출한 달성 서씨 판서공파의 구성원이었지만 창수와 귀갑은 향직에서 배제된 후 읍치를 떠나 각각 조암면 일리, 동중면 복현암리에 정착한다. 그곳은 읍치에서 그리 멀지 않고 명문 양반가의 동성촌락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는 마을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을에 정착한 뒤 100년 가까이 그 마을에 세거하며 가세를 키워나갔다. 그리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그들은 각 마을에서 가장 비중 있는 성관 중 하나로 성장해 나간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자들보다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을은 여전히 여러 성씨가 섞여 사는 잡성촌에 가까웠다. 비슷한 시기 양반의 동성촌락과는 물론이고 평민 동성촌락에도 미치지 못했다.

3장 2절에서는 이들의 혼반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혼인은 읍치에 거주했던 관속과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혼처가 읍치가 아닐 경우 면내혼이거나 본인들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결혼 형태는 향리나 평민들과 유사했다. 이들은 향직에서 배제되어 읍치를 떠나 한 마을에 정착했음에도 여전히 양반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그나마 특정 마을에 정착한 자들이었다. 그렇지 못한 나머지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향리들이 왜 향리가 되는 것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다.

4장 1절에서는 안동의 사례를 토대로 향직에서 배제되어 읍치를 떠난 향리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안동의 명문 향리가문에서 태어난 자들도 주요 향직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읍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풍산면 막곡동으로 이거해 대를 이어 거주한다. 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을 현창하는 봉강영당을 건립했다. 또 향리의

전기를 엮은 『안동사적통록』을 편찬했다. 이들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두드러지는 활동을 펼쳤다.

2절에서는 이들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안동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들은 과거에 합격하고 조상 선양사업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 후손은 자신을 여전히 향리 후손으로 여겼다. 그들이 편찬한 『安東鄕孫事蹟通錄』에는 자신을 鄕孫이라 불렀으며 책의 내용 역시 향리의 전기를 모은 것이었다. 이들의 이런 활동은 양반을 지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16세기 이후 사족과 이족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지방 양반의 명단인 향안에는 이족과 혼인 맺은 자들을 모두 배제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애초에 양반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안동의 양반 역시 이들을 여전히 향리로 인식했다. 이들이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양반과의 혼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막곡동에 정착한 향리의 평가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반을 기준에 둔다면 이들은 실패한 자들이다. 안동의 명문가와 전혀 혼망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기준을 맞춘다면 이들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조상 선양사업을 통해 이들의 후손은 이 마을에서 100년 넘게 강한 위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향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길은 바로 향리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중앙 집권 국가인 조선의 공권력은 지방에도 강하게 침투했다. 지방 군현에서 행정실무를 수행하던 향리는 자연스레 공권력에 기대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향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직계 자손에게 자신의 직임을 물려주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승리한 소수의 가계가 상층 직임을 독식했다.

향리 가계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모두 향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향리 가계에서 태어났지만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이 존재했다. 향리는 직임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세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향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관이라는 매개체가 자동으로 권력을 보장해주었지만,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만들어가야만 했다. 향직에서 배제된 자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읍치에 그대로 머무르며 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향리는 아니었지만 하급 관속이 되어 관에 의탁해 살아갈 수 있었다. 향직을 수행할 때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지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공권력이 아닌 새로운 권력의 근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후자를 선택한 향리들은 읍치를 떠나 새로운 마을에 세거하며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을 현창하는 사업을 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향리 후손을 자처했고 주변 역시 이들을 향리 후손으로 이해했다. 이같이 읍치를 떠나 외촌에 정착해 과거에 응시하고, 조상을 현창하는 사업을 한결같이 '양반 지향'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참고문헌

1.사료

-연대기류
『高麗史』
『經國大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호적 및 양안
『慶尙道大邱府戶籍大帳』
『慶尙道丹城戶籍』
『蔚山府 戶籍大帳』
『龍宮縣庚子改量田案』, (奎 14953), (奎 13955)
『義城縣庚子改量田案』 (奎 14951)

-읍지 및 선생안
경주시, 2002, 『國譯 慶州先生案』, 경주문화원
『大邱府邑誌』, (奎 10810)
『陞付吏案』(奎, 古 920.051-Se81a)
『衙前官案』 (奎, 가람古351.2-Aj35)
『安逸班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營吏官案』, 『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1 『考古歷史學志』 3,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7
『營屬人吏貢生官案』, (奎, 古4652-120)
『嶺營事例』,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2B-0003)
『嶺營掾房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營人吏官案』,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475)
『營人吏貢生官案』 (연세대 고서 115 0)
『蔚山府先生案』
『全州府人吏貢生日守官奴妓生官婢官案』, (奎 21849)
『湖南營事例』, (奎 貴12201)

-족보
『慶州崔氏大同譜』
『達城徐氏世譜』
『安東 權氏 大同譜』

-기타
『景玉先生遺集』
『牧民心書』
『默齋日記』
『安東鄉孫事蹟通錄』, 장서각 청구번호 (K2-436)
『與猶堂全書』
『掾曹龜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安逸房考往錄」, 『朝鮮後期鄉吏關係資料集成』, 영남대학교.
『壬戌錄』
『安東郡 土地調査簿』

2. 단행본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김건태, 2008,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김용섭, 1995,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硏究』, 일조각
미야지마 히로시, 2014,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너머북스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손병규, 2007,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宋俊浩, 1987,『朝鮮社會史硏究』, 일조각
이수건, 1979,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究』, 일조각
_____, 1990,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훈상, 1990, 『朝鮮後期의 鄕吏』, 일조각
이훈상, 유훈, 2009, 『조선후기 곤양의 경주 최씨 향리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손병규 외, 2020,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허흥식, 2005 ,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한국국학진흥원, 2007,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성심
아메노모리 호슈 김시덕 역, 2012, 『한 경계인의 고독과 중얼거림』, 태학사

3. 논문

권기중,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신분변화의 장기추세와 그 의미 -『달성서씨족보』와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7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 47
_____,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 -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52
_____,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동아문화』 14, 동아문화연구소
김건태, 2021,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경란, 2018, 「조선후기 동성(同姓)마을의 분화에 대한 연구 —경상도 대구부 경주(慶州) 최씨(崔氏) 동성(同姓)마을의 사례—」, 『사림』 65권
_____, 2017,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大丘府 解北村 廣里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김덕진, 2001,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雇馬庫 설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112
김용섭, 1963,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 『史學硏究』 15
_____, 1993, 「조선후기 신분구성의 변동과 농지소유 -대구 조암방지역 양안과 호적의 분석」, 『東方學志』
김인걸, 1987,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問題(下)』, 近代社會社 편, 한울
김인호, 2014, 「18~19세기 안동 향리 權喜學家의 賜牌訴訟」,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김준형, 1987, 「조선 후기 울산 지역의 향리층 변동」, 『한국사연구』 56
_____, 1990, 「조선후기 향리층의 변동- 언양 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 『경상사학』 6

김필동, 1982,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上) -社會史的 接近」, 『韓國學報』 제28집
_____, 1982, 「조선후기 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하)」, 『한국학보』 28, 29
김현영, 1999, 「조선후기 친족의 결속과 갈등의 한 양상 -大丘 月村 丹陽禹氏 宗契關聯文書의 분석-」, 『고문서연구』 16
_____, 2002, 「조선후기의 재지사족의 정치적 성장과 '전통의 창출' - 大邱月村丹陽禹氏의 養浩堂顯揚事業을 중심으로」, 『史學硏究』 68
_____, 2006, 「조선후기 한 營吏의 일생 -李德龜(1701~1774)의 "石泉遺稿"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82호
나선하, 2006, 「조선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광균, 2019, 「18세기 중엽 전라도 臨陂縣의 부세운영과 縣令 趙祗命의 시책」, 『한국사 연구』 184
미야지마 히로시, 「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 -조선후기 대구 조암방의 사례」, 『국학연구』 14
_____, 2003,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배기헌, 2000, 「朝鮮後期 將廳의 成立과 性格」, 『한국사연구』 9집
손병규, 2003,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25
_____, 2003, 「조선후기 국가적인 신분 규정과 그 적용」,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03,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都以上)'의 통계」,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송양섭, 2005,「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조선시대사학보』34, 조선시대사학회
_____, 2005,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17,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호적색 윤일찬의 '捧賂減戶'에 대한 마을민의 등소 사례」, 『조선시대사학보』 82
양흥숙, 2016, 「조선후기 항왜(降倭)의 존재 양상과 정착-대구시 우록리 김충선의 후손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22
여중철, 1980,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명두, 2005, 「朝鮮後期에 있어서 兩班層의 鄕吏職 수행의 事例硏究 : 곤양면 慶州崔氏 古文書에 기초해서」,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이동규, 2013, 「조선후기 한량직역자 연구 -조선후기 직역연구의 일환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_____, 2017, 「朝鮮後期 軍官職役者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이성임, 2010,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법물야면의 혼인 양상」, 『남도문화연구』 19
이수환, 2010,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 시민강좌』 46
_____, 2012, 「조선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구사학』 106
이유진, 2011, 「18세기 大丘 戶籍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大丘府 西上面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7
이종서, 2014, 「조선후기 울산지역 상급 향리직의 구성과 향리 가계의 변동 -'향리'의 의미 변화 및 위상 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67
_____, 2010, 「"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의 체제와 성격」, 『한국고문서연구』 36
이준구, 1981, 「朝鮮後期의 身分構造와 그 變動」, 『東方學志』 26
_____, 1994, 「朝鮮後期 都市地域에서의 身分職役 構成과 商人의 存在 : 大邱를 中心으로」, 『九谷黃鍾東敎授停年紀念 史學論叢』, 九谷黃鍾東敎授停年記念史學論叢 刊行委員會

_____, 1996. 「19세기 유학층 확대와 신분제 변동」, 『國史館論叢』 68
이훈상, 1986, 「'朝鮮後期 尙州의 戶長·吏房 명단과 蕭何의 圖像' 解題」, 『역사와 경계』
_____, 1987, 「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 Ⅰ-『安東鄕孫事蹟通錄』의 刊行者 權永翕 家門과 그들의 文書-」, 『考古歷史學志』 3
_____, 1990,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 運營과 그 特性 - 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한국학논집』 17
_____, 2006, 「조선후기 경상도 監營의 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안동 향리사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 『大東文化硏究』 55
_____, 2019, 「19세기 향리 지식인 이명구의 지적 여정과 지방 吏胥들에 대한 미완의 역사 프로젝트 "연조귀감속편"」, 『진단학보』 132.
임민혁, 1991, 「朝鮮後期의 幼學」, 『淸溪史學』 8
장동표, 1985, 「18·19세기 吏額增加의 현상에 관한 硏究」, 『부대사학』 9
전우철, 1985, 「朝鮮後期 鄕村社會에 있어서의 吏胥階層硏究」, 『震檀學報』 60
정석종, 1974,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울산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정성학, 2014, 「조선후기 안동 상층 향리의 향직계승과 존재양상」, 『한국사론』 60
_____, 2019, 「조선후기 공생(貢生)의 의미와 공생층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111
정만조, 1982, 「영조 14년의 안동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한국학연구』 1
정진영, 2000, 「18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族譜>·<同案>類와의 비교」,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_____, 2001,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2) -안동 향안의 입록인물 검토-」, 『대동문화연구』 38
_____, 2015,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_____, 2015,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韓國史硏究』 171
조계영, 2010,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정족산사고 「선원록형지안(璿源錄形止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55집
최승희, 1985, 「朝鮮後期 鄕吏身分移動與否考」, 『金哲埈博士花甲記念史學論叢』 4
_____, 1985, 「朝鮮後期 鄕吏身分移動與否考2」, 『韓國文化』 4, 1983
_____, 1989, 「조선후기 幼學·學生의 신분사적 의미」, 『國史館論叢』 1
한영국, 1976, 「十八十九世紀大邱地域の社會變化に關する一試考-大邱府戶籍の'新戶'を中心に」, 『朝鮮學報』 80
四方博, 1938,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硏究』 3

【Abstract】

The Succession of Duty and Social Orientation for Hyangri in Gyeongsang-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Jung Sungha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oseon was a country with very active status movement. Japanese Amenomori Hoshu(雨森芳洲 1668~1755) who was interested in *Joseon* described that 'all the people are immersed in competing in *Joseon.* It is easy for the lower person to go up to the top, so there is no day to be quiet because people use bribes and become prosperous in the morning and ruin in the evening'. *Hyangri*(鄕吏)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known to be a class that sought to raise its status as *Yangban*(兩班) in various ways, such as taking the state examination(科擧 *gwageo*) and worshiping the ancestors. Considering that *Hyangri*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ercised considerable influence by taking charge of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offices, their challenge to abandon their positions and become a *Yangban* with

a high probability of failure seems somewhat reckless. In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find out whether *Hyangri* did this activity to become a *Yangb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what *Hyangri*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aintain their social position. For the this study, the households of *Hyangri* in *Daegu* and Andong were examined. Daegu household register(*hojeok*, 戶籍) remained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nd Andong was advantageous for research as it had a number of list of *Hyangri*(*seonsaengan* 先生案) and old documents(*gomunseo* 古文書).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Hyangri* increased rapidly. As the work of local government offices has become enlarged the number of *Hyangri*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Hyangri* is also found to increase in the *Daegu* household register(*hojeok*, 戶籍). Since the number of local *Hyangri* has increased, it is probably too natural for the number of *Hyangri* to increase in the household register. Howev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number of *Yuhak* increased rapidly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Yuhak* meant a bureaucratic reserve force preparing for the state examination(*gwageo* 科擧) and was originally only *Yangban* could use that. However, *Hyangri* continues to appear as a occupation(*jikyeok* 職役) of *Hyangri*. *Hyangri*, which used to appear in various occupations such as *Inri*(人吏), *Buri*(府吏), *Hyangri*(鄕吏), and *Gongsaeng*(貢生), has a growing proportion of *Gongseng* in 19th century. *Gongseng* refers to a person selected through the *Hyanggong* system(鄕貢制度) of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Goryeo* Dynasty, local government officials selected people and held a *Gyesugwan* examination(界首官試), and those who passed this test were called *Hyanggong*(鄕貢). In this way, tracking the etymology of *Gongseng* prepared state examination, and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bureaucratic reserve, which was very similar to *Yuhak*. For this reason, *Hyangri* appeared in the household register as *Gongseng*

instead of *Yuhak*. As the number of *Hyangri* increased, there were also various surname to serve as *Hyangri*. In the case of Daegu, *Dalseong Seo*(達城 徐) lineage performed the most in the upper-class *Hyangri* positions. However, the number of *Dalseong Seo* lineage who performed the *Hyangri* was not very large. This phenomenon is also seen in other regions. Instead of monopolizing a top positions, such as *Hojang*(戶長) and *Yibang*(吏房), other lower positions were divided into other surnames. It means that not all of members of the of *Dalseong Seo Hyangri* clan could not be *Hyangri*. If so, we reached the question of whether member of *Hyangri* wanted to perform the position of *Hyangri* or not. Competition intensifi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the value of the *Hyangri* position increased. *Hyangri* made a rule that the father and son would not join together or three sons would not joi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f *Hyangri* judged that it was more advantageous not to perform *Hyangri*, they could not have made their son *Hyangri*. However, *Hyangri* succeeded his position to his descendants. *Hyangri* thought that carrying out the position of *Hyangri* for generations was the most stable path. On the other hand, those excluded from the *Hyangri* position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big crisis. Naturally, fierce competition took place for the position of *Hyangri*.

Let's find out how the *Hyangri* family member responded to the limited position through differentiation of *Dalseong Seo Panseogongpa*(判書公派), which performed the local government of Daegu, and *Dalseong Seo Hakyugongpa*(學諭公派), which performed G*yeongSang GamYoung*(慶尙監營) officer. In the case of *Dalseong Seo Panseogongpa*, which produced a large number of key positions in Daegu office, only 27% of them were able to perform *Hyangri* duties. Those who could not carry out their *Hyangri* duties remained in downtown(邑治), relying on government officials at lower levels, or some of them moved their residences to villages(外村). In the case of

Dalseong Seo Hakyugongpa, which produced G*yeongSang GamYoung Hyangri*, 73% of them could be *Hyangri*. The proportion of those excluded from local government posts was relatively low, and few left to villages.

Some of those who were born to prestigious *Hyangri* households in Daegu but were excluded from their local duties left downtown and settled in a new place. The place they moved to was not far from downtown, and it was a village with no strong surname. *Hyangri*, who settled in a village in this way, gradually grew up. However, their social status was not very high. Compared to other surnames in their village, they were able to lead a stable life, but they were not comparable to single-lineage village(同姓村落) of *Yangban*. Marriage was still the most common with the a low-level officer in downtown, and the rest of them married with family who lived in close village. These were those who succeeded in settling in a village. Otherwise, the rest wandered around several villages and had no choice but to live a soci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life. From these results, we can see why the *Hyangri* preferred to become *Hyangri*.

The descendants of *Hyangri*, who left downtown and settled in a new village, had to create a new source of power through various activities because their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 office was cut off. After leaving downtown and settling in a new village, they took a the state examination and carried out honor their ancestors. They left downtown and no longer served as *Hyangri*, but regarded themselves as *Hyangri*. Their activities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 aim for *Yangban*. After the 16th century, *Sajok*(士族) and *Ijok*(吏族) became groups with completely different identities. In *Hyangan*(鄕案), a list of local Yangban, all those who married with *ijok* were excluded. Andong *Yangban* also still recognized them as *Hyangri*. Even though they passed the *Siknyonsi*(式年試) and *Jinsasi* (進士試), they could not marry with *Yangban* family at all. The

evaluation of *Hyangri* who left downtown depends on the criteria. Based on the standards of *Yangban*, these are those who have failed. However, if they are based on maintaining high social status, they seem to be successful settlements. Because their descendants had a strong status in this village for more than 100 years.

Through the above review, it can be seen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yangri* to maintain their position is to perform *Hyangri* duty. *Hyangri* knew this so well that they handed over their position to descendant. Of course fierce competition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and a small number of winning households dominated the positions of the upper class.

On the other hand, the descendants of *Hyangri*, who were excluded from the *Hyangri*, were in considerable crisis. For *Hyangri* who perform *Hyangri* duty, the government office automatically guaranteed power. But those excluded from the *Hyangri* duty had to create a new source of power. Some of the descendants of *Hyangri*, who were excluded from the *Hyangri* duty, left downtown and settled in a new place, and tried to maintain their social status through various activities.

Keywords : Hyangri, Yangban, Household Register, Hyangri Duty, Status System
Student Number : 2014-30020